

월간

재정포럼 1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2년 11월호 제197호

현안분석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소고/ 김재진
• 노벨 경제학상을 통해 본 시장 설계의 이론과 응용
/ 홍성훈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 EU 외

정책흐름 • • 韓 · 아프리카 경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외

CONTENTS

권두칼럼

주거복지, 갈 길을 묻는다 · 이상한 02

현안분석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소고 · 김재진 08

2012 노벨 경제학상을 통해 본 시장 설계의 이론과 응용

· 홍성훈 27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EU 외 40

정책흐름

韓 · 아프리카 경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74

최근 일본 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88

12년 3/4분기 가계소득 6.3% 증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 91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관세감면 품목 조정 94

공정과세 구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96

이슈&포커스

한국은 외국자본 현금인출기 금융위기 때마다 충격 반복 외

..... 98



주거복지, 갈 길을 묻는다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한성대학교 교수

국민의 주거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100가구 중 15가구 정도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빈곤층이다. 여기에 전월세가격의 급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힘들어진 가구가 늘고 있으며, 내집 마련은 했으나 대출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10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층의 주거복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삶의 질 수준 향상에 있어 주거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중산층도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주거복지 요구가 빈곤층을 넘어서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주거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많은 가구가 아직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기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확대되는 주거복지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치권은 비용과 책임 그리고 실제 혜택 여부 등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주거복지 혜택 제공 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거복지제도의 주요 사안들을 제시해 본다.

주택정책,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제도로 전환 필요

주택정책이 광의의 주거복지제도로 확대·개편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의 대상은 ‘사람’ 또는 ‘가구’이다.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책목표는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이다. 주거지원만으로는 주거안정의 지속적 유지와 주거수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경제자립과 더불어 소득향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한정된 정책으로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주택정책이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이 연계된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표가 ‘저소득층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협의 개념의 주거복지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광의 개념의 주거복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가 광의의 주거복지제도를 추진할 여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재정상황을 살펴보자. 현행의 주택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재정, 국민주택기금 그리고 공기업을 활용한 교차지원(분양주택 판매수익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이다. 일반재정의 규모는 상당히 작으며, 주로 국민주택기금과 공기업의 교차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규모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지원 확대에 따라 자금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공기업의 재정악화로 교차지원의 폭이 축소되고 있다. 현행 재원으로는 광의의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정부재정의 확대가 요구되지만 그 규모는 한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급 중심정책에서 수요 중심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시급

첫째,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공공부문의 담당영역 재조정이 필요하다. 최우선 순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두어야 하며, ‘주택구입 지원’ 보다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지원’ 사업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책정되어야 한다. 공공의 직접개입(재정투자 또는 공기업을 활용한 주택공급)은 저소득층의 임대료보조금지원과 임대주택공급에 한정해야 한다. 주택구입과 중산층 임대주택 등의 지원은 세제와 금융지원 등의 간접개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분양주택과 중산층용 임대주택공급은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방식에서 다양한 간접지원을 통한 민간부문 공급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급 중심정책에서 수요 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거안정의 주된 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며, 전세금지원 같은 수요자 지원은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지원효과는 한정적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재고 부족으로 입주가구만 혜택을 받고 입주하지 못한 가구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주거비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가 제시되고 있다. 주택바우처는 공공임대주

.....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공공부문의 담당영역 재조정이 필요하다.
 ‘주택구입 지원’ 보다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지원’ 사업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책정되어야 한다.

-
- 시장친화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규제적 제도의 도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다.
-


택 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즉시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임대료 지원이 확대되면, 시장임대료의 상승으로 지원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과 주택바우처와 전세금지원 등 수요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내집 마련의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주택모기지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모기지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은행예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자금조달 방식을 모기지유동화(MBS)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모기지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인하는 시장친화적 제도 필요

셋째,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물량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적정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세제감면과 임대료보조 등과 같은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시장의 주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을 장기임대사업자로 유인할 수 있는 대출 및 세제지원, 전문임대관리회사 육성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시장친화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규제적 제도의 도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저렴한 분양주택공급은 민간 분양시장을 축소시켰으며, 주택거래를 유보시켜 재고시장이 침체하는 데 원인이 되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축소되고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이득을 보는 계층은 기존 임차인에 한정되며, 신규로 임대주택을 찾거나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이 야기되면, 채택된 주거복지제도의 지속적 시행은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범사회적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창출·취업교육·자녀양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이 연계·시행되어야만 주거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복지·고용정책의 결정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거지원·복지제공·일자리마련 정책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거

복지 요구를 수렴하고 많은 주거복지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지역시민사회와의 연계도 부족하다.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과 정책수단 및 시행방안 등이 정책결정기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과 시행기관(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간 협의와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결정되고, 부처간 사업조정 및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채택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주거복지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거복지전달 시스템의 구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범사회적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주거복지요구에 부응한 바람직한 주거복지정책이 채택되고, 채택된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일자리창출·취업교육·
 자녀양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이
 연계·시행되어야만
 주거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소고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2 노벨 경제학상을 통해 본 시장 설계의 이론과 응용
홍성훈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소고

I. 서론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jaeji@kipf.re.kr)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거래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소득과약 수단으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고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도입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현금거래 시 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¹⁾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²⁾ 등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비례한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비례한 보조비를 지원받고 있다.³⁾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도입된 2005년 4억 5천만건에서 2010년에는 49억 5천만건으로 11배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61.6%에 이르고 있다. 반면, 발급금액도 2005년 18.6조원에서 연평균 32.6%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76조원으로 4.1배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발급건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발급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금액이 증가하면서 현행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약 37개⁴⁾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원(온라인거래의 경우 15.4원⁵⁾)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전송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원 금액은 2005년 90억 원에서 2011년에는 약 1,09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후 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4) VAN사 13개, POS 사업자 11개, 온라인 13개
5) 종이비용 제외

년이 경과하는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현행 현금영수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및 현황

1. 개요

가. 도입배경⁶⁾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도입 등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당시 신용카드 사용자가 약 1,200만명에 불과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신용카드를 보유·사용할 수 없었으며 현금거래금액이 민간최종소비지출금액에 비해 여전히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금액을 파악하지 않고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IMF 사태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의 남발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으며, 그 후 신용카드사용률이 둔화되는 등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거래의 투명성 확립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나. 결제구조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⁷⁾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이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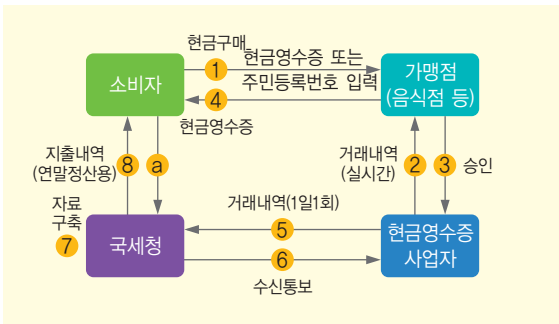
현금영수증결제 흐름도는 [그림 II-1]과 같다.

6) 국세청(2006), 「국세청 40년사」, pp. 938~939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림 II-1] 현금영수증결제 흐름도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① 물품구매 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①-1. 사용자가 임의의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 및 사용자 정보 등록
- ②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등록하고 승인 받음(실시간)
-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사용 실적처리하고 결과를 통보
- ④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

- ⑥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수신되었음을 통보
- ⑦ 국세청에서 카드정보를 기초로 현금영수증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변환하여 자료 구축
- ⑧ 결제내역을 현금영수증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다. 관련 법령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비자 상대 업종)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⁸⁾ 가맹점 가입의무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기간의 총수입금액(소비자 상대 업종)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현금영수증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각각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⁹⁾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부가가치세액을 포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¹⁰⁾ 단,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이외에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¹¹⁾

8)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2

9)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10)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11)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표 II-1〉 현금영수증제도 주요 내용 변천과정

시행연도	내 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 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현금결제 수수료 면제),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1.5%(한도: 연간 500만원) ·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일정금액(설치건수당 1만 5천원, 결제건수당 22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 현금영수증발행대상: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가능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 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 500만원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10년 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2007년 3월 5일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자진해서 국제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등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년 7월 1일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2%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부가세 공제 한도 700만원 상향조정 •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부가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2.6% • 성실사업자(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신설(2010. 12. 31까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만원 • 현금영수증 미가입가맹점 가산세 1%(중전 0.5%) •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한도 500만원 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공제한도 700만원(2012년 말까지 일몰기간 연장)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2013년 말까지) • 성실사업자(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연장(12.12.31까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한도 500만원 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공제한도 700만원(2012년 말까지 일몰기간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기한 연장 •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제도 법제화

라. 세법상 혜택

1) 소비자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¹²⁾

〈표 II-2〉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상 혜택(소비자)

관련 조항	소비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총급여액×25%)×20%(체크카드:30%) 한도: MIN [연간 300만원,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거래 신고·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허위발급 또는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금액에 따라 1만원~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함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연간 한도: 200만원

2) 사업자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된다.¹³⁾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 II-3〉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상 혜택(사업자)

관련 조항	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 2 및 「법인세법」 제1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경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3) 현금영수증가맹점

영수증발급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

12)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를 유도할 목적으로 직불형카드(직불·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고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 비교(2012년)

구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는 사용금액의 20%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는 사용금액의 30%
한도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13)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금액의 1.3%를 연간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영수증발급의 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음식·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2.6%가 적용된다.¹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¹⁵⁾

〈표 II-4〉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상 혜택(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조항	현금영수증가맹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영수증발급의무자(법인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1%(2012.12.31: 1.3%)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2012.12.31: 2.6%) 한도: 연간 500만원(2012.12.31: 7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발급건수당 20원의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 가능함

4)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수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은 설치건수당 1만 5천원,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은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¹⁶⁾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기준금액은 종이비용과 전자처리비용, 이윤과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결제건당 기준금액은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오프라인 거래는 22원, 온라인 거래는 종이비용을 제외한 15.4원으로 결정하여 2005년 이후로 계속 적용되고 있다.

〈표 II-5〉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상 혜택 (현금영수증사업자)

관련 조항	현금영수증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당 1만 5천원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당 22원

1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10항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가 도입된 2007년에는 발급건수가 2006년 7억 3천만건에서 14억 8천만건으로 전년 대비 101.9% 증가하였으며, 발급금액은 2006년 30.6조원에서 2007년에는 50.3조원으로 64.1% 증가하였다.

2. 현금영수증제도 현황

가. 발급실적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발급건수는 2005년 4억 5천만건에서 2010년에는 49억 5천만건으로 11배나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이 61.6%에 이르고 있으며, 발급금액은 2005년 18.6조원에서 연평균 32.6%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76조원으로 4.1배 증가하였다.

현금영수증 발행실적의 연도별 특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건수가 2007년과 2008년에 크게 증가한 것은 2007년 3월에 도입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¹⁷⁾와 2008년 7월 이후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허용¹⁸⁾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가 도입된 2007년에는 발급건수가 2006년 7억 3천만건에서 14억 8천만건으로 전년 대비 101.9% 증가하였으며, 발급금액은 2006년 30.6조원에서 2007년에는 50.3조원으로 64.1% 증가하였다. 또한,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한 폐지가 2008년 7월 이후에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연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발급건수는 상반기 9억 6천만건에서 하반기 19억 2천만건으로 무려 99%가 증가하였으나, 발급금액은 그 증가율이 8.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 II-6〉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건수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2005	448,936	-	18,559,848	-
2006	737,748	64.3%	30,626,609	65.0%
2007	1,489,273	101.9%	50,256,147	64.1%
2008	2,889,925	94.0%	61,555,892	22.5%
2009	4,441,966	53.7%	68,698,365	11.6%
2010	4,951,522	11.5%	75,956,526	10.6%
연평균증가율 (2005~2010)	61.6%		32.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월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시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2.4%에서 2010년에는 75.6%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동 제도가 도입된 2005년 18.6조원에서 2010년에는 75.9조원으로 약 4.1배가 증가하여 현금영수증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0%에서 2010년 12.3%로 3배 이상 증가하여 2010년 기준 신용카드 등과 현금영수증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9%에 이르고 있다.

업체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발

17)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현금을 사용한 소비자 의사에 관계없이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임.

18) 5천원 미만 소액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발급제한 금액기준을 폐지함.

〈표 II-7〉 신용카드 등과 현금영수증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억원, %)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합계	민간소비지출	사용비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소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2001	813.5	1.0	-	-	814.5	-	815	3,642.50	22.4	-
2002	2616.9	0.8	-	-	2,617.7	-	2,618	4,087.20	64.0	-
2003	2419.3	0.6	-	-	2,419.9	-	2,420	4,201.00	57.6	-
2004	2259.3	0.7	26.4	2.6	2,289.0	-	2,289	4,350.60	52.6	-
2005	2554.8	1.7	77.7	5.3	2,639.5	186	2,658	4,654.30	56.7	4.0
2006	2790.1	1.1	123.3	7.3	2,921.8	306	2,952	4,949.20	59.0	6.2
2007	3176.5	0.8	188.3	9.2	3,374.8	503	3,425	5,302.60	63.6	9.5
2008	3674.4	0.6	268.0	10.2	3,953.2	616	4,015	5,616.30	70.4	11.0
2009	3845.5	0.4	364.6	12.9	4,223.4	688	4,292	5,759.70	73.3	11.9
2010	4120.9	0.4	517.8	23.6	4,662.7	759	4,739	6,169.80	75.6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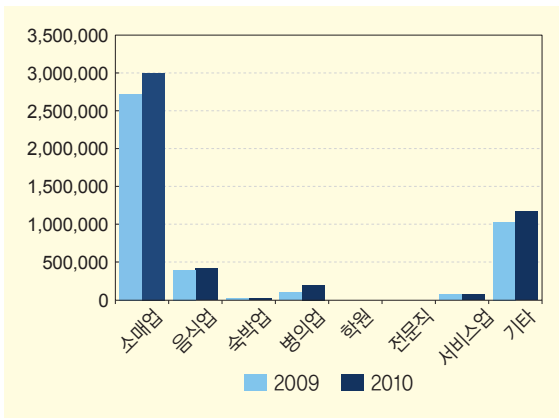
주: 신용카드는 개인의 물품 및 용역구매와 법인을 향한 금액임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지급수단별 통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급건수는 2010년 기준으로 소매업이 6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기타업종과 음식업이 각각 23.8%, 9.9%로 나타났다. 발급금액의 경우에는 소매업이 39.6%로 가장 높으나 발급건수에서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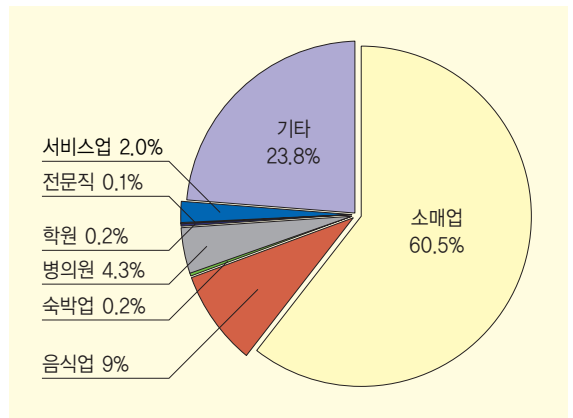
하는 비중보다는 적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타 업종과 음식업이 각각 32.9%, 9.9%였다.

[그림 II-2]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건수기준, 2010년)

(단위: 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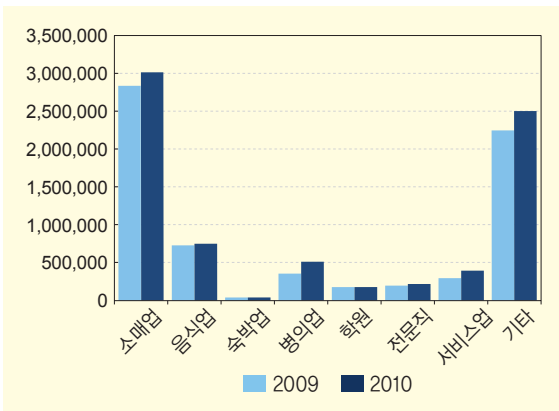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소매업의 경우 발급건수는 2008년 기준 2005년 대비 676.7%나 증가하였으나, 발급금액의 증가율은 2005년 대비 208.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3]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 (금액기준,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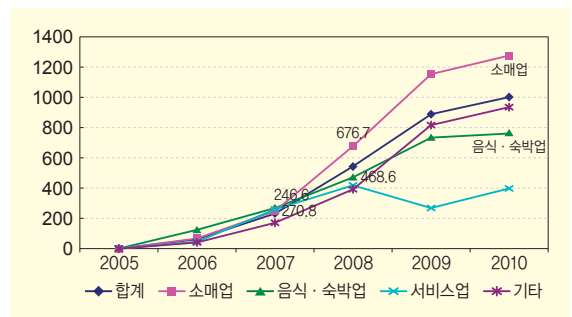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발급건수 증가율은 소매업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의 경우 발급건수는 2008년 기준 2005년 대비 676.7%나 증가하였으나, 발급금액의 증가율은 2005년 대비 208.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진발급에 의한 소액결제에 의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증가율이 주요 현금수입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발급건수 증가율은 타 업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4] 2005년 대비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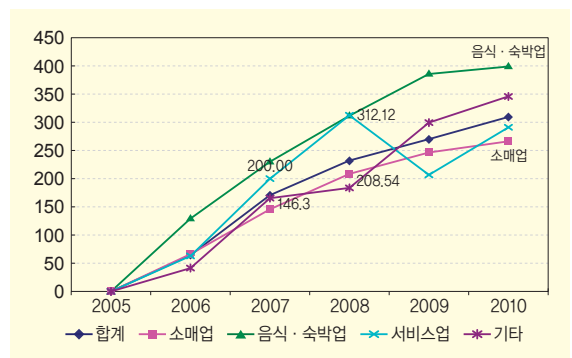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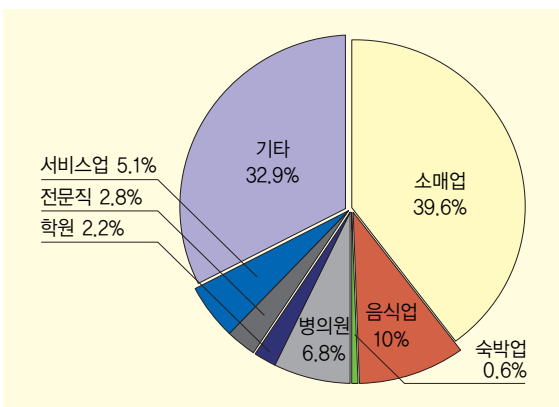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5] 2005년 대비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증가율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 대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증가율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과세표준 규모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¹⁹⁾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확정신고인원 중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78명으로 전체 3,774명 중 8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5억 6천만원으로 1인당 약 18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표 II-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규모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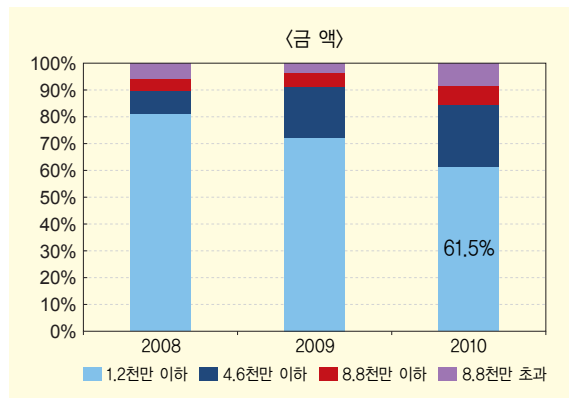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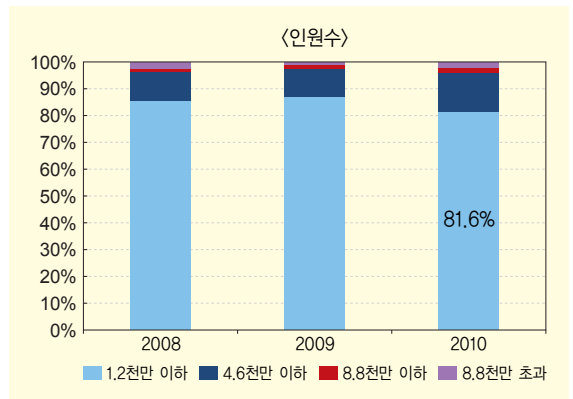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2008	2009	2010
1.2천만 이하	인원수	1,610	7,662	3,078
	금액	586	1,503	563
	1인당 금액(원)	363,975	196,163	182,911
4.6천만 이하	인원수	198	959	551
	금액	64	389	211
	1인당 금액(원)	323,232	405,631	382,940
8.8천만 이하	인원수	33	150	76
	금액	32	120	66
	1인당 금액(원)	969,697	800,000	868,421
8.8천만 초과	인원수	45	84	69
	금액	43	67	75
	1인당 금액(원)	955,556	797,619	1,086,957
합계	인원수	1,886	8,855	3,774
	금액	725	2,079	915
	1인당 금액(원)	384,411	234,783	242,448

주: 해당연도 중 결정·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과세표준 규모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확정신고인원 중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규모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비중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9)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20)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를 인원수로 살펴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2010년
기준 30.3%로 비중이 가장 높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를 인원수로 살펴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
계신고가 2010년 기준 30.3%로 비중이 가장 높고, 장
부·증빙에 의한 신고 48% 중 간편장부 대상자의 비
중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신고자의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과 비중도 3,774명 중 611
명으로 16.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
이라 할 수 있다.

〈표 II-9〉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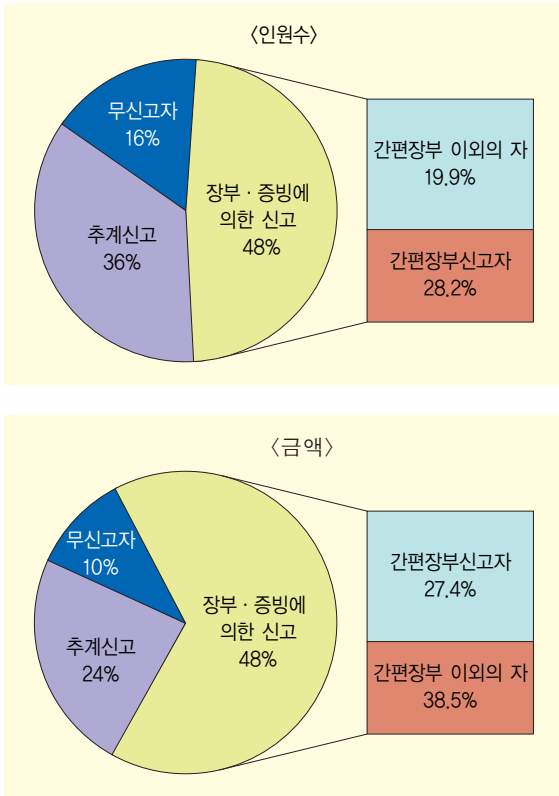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

신고유형별		2008		2009		2010		
인원	합계	1,886	(100.0)	8,855	(100.0)	3,774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외부조정	292	(15.5)	1,333	(15.1)	631	(16.7)
		자기조정	39	(2.1)	235	(2.7)	120	(3.2)
		간편장부	367	(19.5)	2,183	(24.7)	1,066	(28.2)
		성실납세	0	(0.0)	0	(0.0)	0	(0.0)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407	(21.6)	2,431	(27.5)	1,142	(30.3)
		단순경비율	363	(19.2)	1,601	(18.1)	204	(5.4)
	비사업자	1	(0.1)	5	(0.1)	0	(0.0)	
	무신고자	417	(22.1)	1,067	(12.0)	611	(16.2)	
	금액	합계	725	(100.0)	2,079	(100.0)	915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외부조정	137	(18.9)	587	(28.2)	301	(32.9)
		자기조정	16	(2.2)	80	(3.8)	51	(5.6)
		간편장부	71	(9.8)	513	(24.7)	251	(27.4)
		성실납세	0	(0.0)	0	(0.0)	0	(0.0)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84	(11.6)	523	(25.2)	189	(20.7)
		단순경비율	48	(6.6)	203	(9.8)	28	(3.1)
비사업자		0	(0.0)	1	(0.0)	0	(0.0)	
무신고자		369	(50.9)	172	(8.3)	95	(10.4)	

- 주: 1.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란 현금영수증기맹점 미기입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가산세를 말함
- 2. 간편장부란 장부기록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제청에서 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3. 외부조정이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로부터 세무조정 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임
- 4.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함
- 5. 비사업자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말함
- 6. 해당연도 중 결정·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함
- 7. ()안은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7] 신고유형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비중(2010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14만개에서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229만개로 2배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다. 가입 지정자의 가입비율은 2005년 76.4%에서 2010년에는 98.7%로 22.3%p 높아졌다. 가입지정자는 소매업, 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14만개에서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229만개로 2배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다.

식·숙박업, 서비스업종과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이며, 2005년에는 신용카드가맹점 전체를 가입지정자로 포함하였다.

〈표 II-1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현황

(단위: 명, %)

	전체 가입자수 (1=3+5)	가입지정자			가입의무외 가입자 (5)
		가입지정자 (2)	가입자 (3)	가입비를 (4=3/2)	
2005	1,144,193	1,219,345	931,942	76.4	212,251
2006	1,401,111	651,115	548,541	84.2	855,570
2007	1,725,485	821,492	810,983	98.7	914,502
2008	1,918,681	880,298	860,906	97.8	1,057,775
2009	2,118,586	966,983	948,091	98.0	1,170,495
2010	2,290,230	1,010,172	996,589	98.7	1,293,641

주: 1. 전체 가입자수는 해당연도 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전체 사업자 수임(계속사업자 기준).

2. 가입지정자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종과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전체 가입자 수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기준이며, 가입지정자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외 부업종코드를 포함하여 지정함

3. 가입의무 외 가입자는 가입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현재 약 37개의 현금영수증사업자를 발급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VAN사업자²¹⁾를 통한 현금영수증

21) VAN(Value Added Network)사업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가맹점과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거래승인, 취소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현재 약 37개의 현금영수증사업자를 발급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VAN사업자를 통한 현금영수증 승인이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POS시스템 운영사업자가 34%를 차지하였다.

승인이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POS시스템 운영사업자²²⁾가 34%를 차지하였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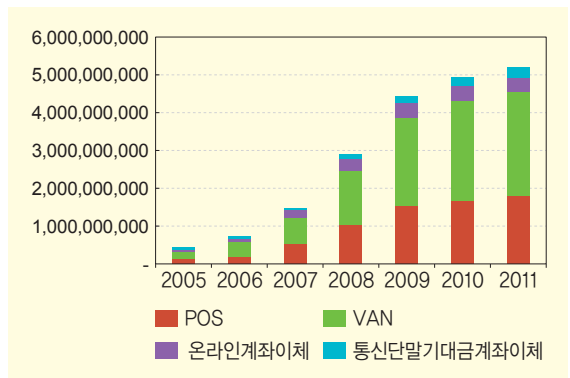
〈표 II-11〉 현금영수증 발급유형별 현금영수증사업자 현황

발급유형	VAN	POS	온라인
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주), (주)스마트로, (주)케이에스넷, 한국정보통신(주), 퍼스트데이타코리아, 한국신용카드결제(주), KIS정보통신(주), (주)제이티넷, (주)코벤, (사)금융결제원, (주)스타뱅크코리아, (주)한국사이버결제, (주)뱅크이십오	(주)KT,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신세계아이앤씨, 삼성테크스코(주), 홈플러스테크스코(주), (주)코벤, (주)이랜드시스템스, (주)바로그사경인지점, (주)앤디에스, (주)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주)	나이스정보통신(주), (주)이베이코리아, (주)한국사이버결제, (주)엘지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주), (주)케이에스넷, 한국사이버페이먼트(주), (주)이니시스, 지비카드(주), 갤러시아커뮤니케이션스, (주)SK텔레콤, (주)네투스, (주)한국스마트
사업자수	13개	11개	13개
발급건수 점유비	52%	34%	14%
비고	신용카드 VAN사	통신사, 대형유통법인인인 있는 계열법인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청(내부행정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유형별 거래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POS 및 VAN 발급유형의 발행건수가 급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VAN 발급유형은 2011년 기준 전체 현금영수증 발행건수 약 52.8억건 중 27.4억건으로 52.7%를 차지하고 있다. POS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유형은 2011년 기준 전체 현금영수증 발행건수 약 52.8억건 중 17.8억건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 발급유형별 현금영수증 발행건수 추이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청(내부행정자료)

III.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1. 소액결제 발급건수 비중 과다

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로 소액결제 비중 증가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허용된 2008년도를 기준으로 도입 전후를 살펴보면, 발급건수는 상반기 9억 6천만건에서 하반기에는

22) 대형유통업체, 프랜차이즈사업체 등과 같이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는 가맹점과 소형가맹점은 매출관리 등을 위해 POS시스템이 장착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POS(Point of Sale,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이란 백화점, 할인점, 프랜차이즈음식점 등의 매장에 단말장치를 설치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에 사용될 데이터 판매시점에서 실시간(real-time)으로 수집, 기록, 분석하는 시스템임

19억원 2천만건으로 99%가 증가하였으나 발급금액은 29.4조원에서 32.0조원으로 8.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이 폐지되면서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Ⅲ-1〉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건수	448,936	737,748	1,489,273	2,889,925	4,441,966	4,951,522
	금액	18,559,848	30,626,609	50,256,147	61,555,892	68,698,365	75,956,526
상반기	건수	172,955	353,786	548,994	966,651	2,092,824	2,384,575
	금액	6,645,730	14,647,255	20,757,645	29,490,796	33,122,708	36,546,178
하반기	건수	275,981	383,962	940,279	1,923,274	2,349,142	2,566,947
	금액	11,914,118	15,979,354	29,498,502	32,065,096	35,575,657	39,410,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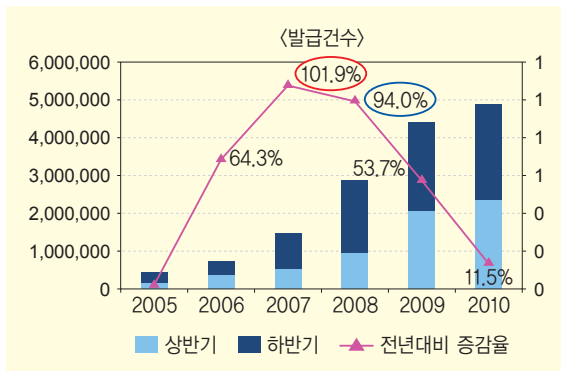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발급금액 규모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5천원 미만의 발급금액은 전체 승인금액 중 7.5%에 불과하나 발급건수는 그 비중이 53.1%에 달하고 있어 소액결제 비중이 매우 큼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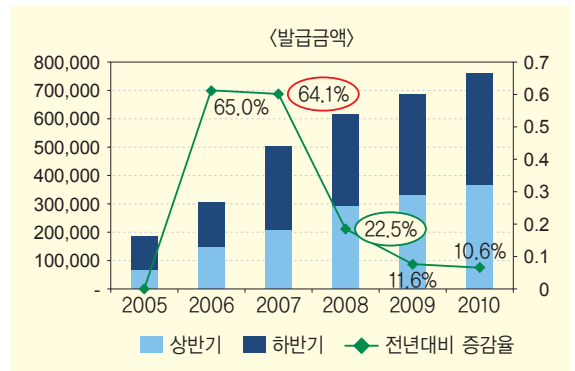
발급금액 규모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5천원 미만의 발급금액은 전체 승인금액 중 7.5%에 불과하나 발급건수는 그 비중이 53.1%에 달하고 있어 소액결제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경우에는 30만원 이상의 구간이 2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구간이 발급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그림 Ⅲ-1〕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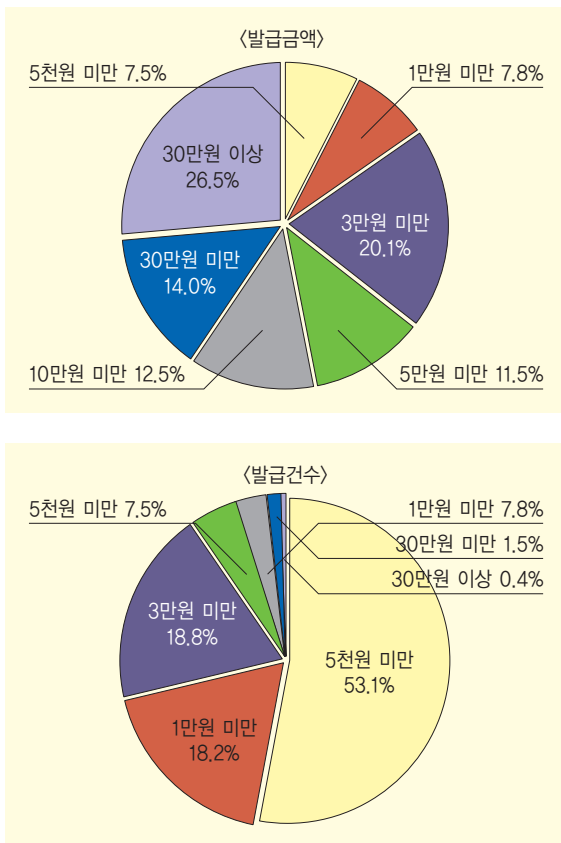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007년 3월에 도입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자진발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발급금액규모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발급건수 비중(2010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나. 자진발급제도로 인한 소액결제 발급건수 급증

자진발급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3월에 도입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²³⁾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자진발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발급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승인건수의 63.6%가 자진발급분이며, 이 중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승인건수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의 5천원 미만 자진발급건수가 2011년 기준 16.5억건²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 기준 현금영수증 승인금액 중 자진발급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이며, 이 중 5천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행금액의 6.1%에 불과하다.

〈표 Ⅲ-2〉 자진발급실적

(단위: 백만건, 억원)

	전체		자진발급		5천원 미만 자진발급	
	승인건수	발행금액	승인건수	발행금액	승인건수	발행금액
2010	4,951	812,321	3,026	229,526	2,152	45,235
	(100.0)	(100.0)	(61.1)	(28.3)	(43.5)	(5.6)
2011	5,185	806,460	3,296	225,494	2,342	49,316
	(100.0)	(100.0)	(63.6)	(28.0)	(45.2)	(6.1)

주: 1.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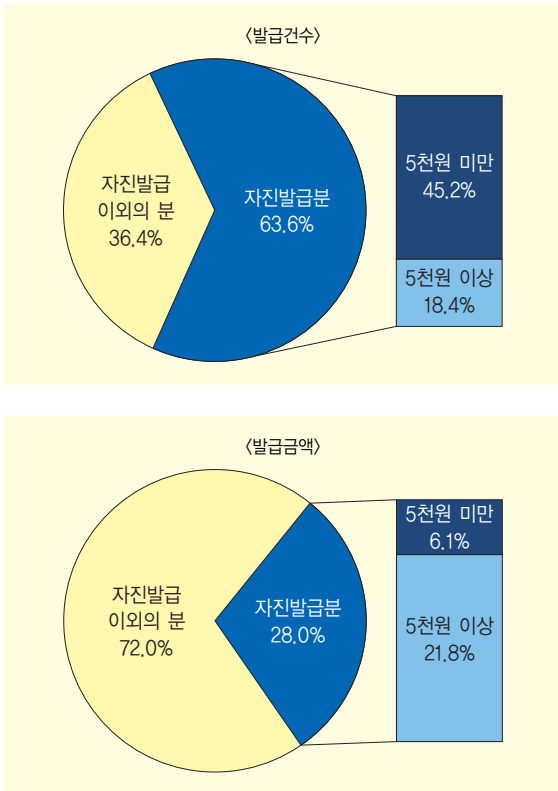
2. () 안은 비중

자료: 국세청(내부행정자료)

23) 2007년 3월 도입된 자진발급제도는 현금을 사용한 소비자 의사에 관계없이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임

24)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그림 Ⅲ-3] 자진발급 승인건수 및 발행금액 비중(2011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액 적정성 논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금액²⁵⁾은 2005년 90억원에서 2011년에는 1,094억원으로 1,111.4%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자진발급제도가 도입된 2007년과,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행이 허용된 2008년도에 발급건수가 급증하여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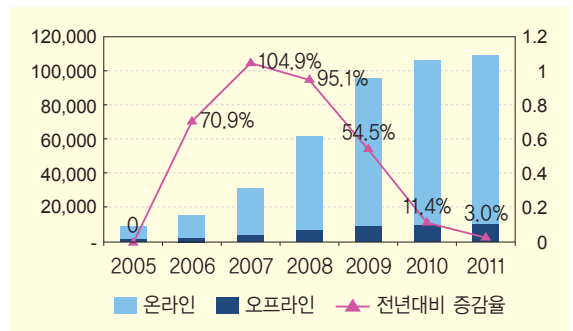
25)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금액은 2005년 90억원에서 2011년에는 1,094억원으로 1111.4%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지원금액도 2007년과 2008년에 전년 대비 각각 104.9%, 95.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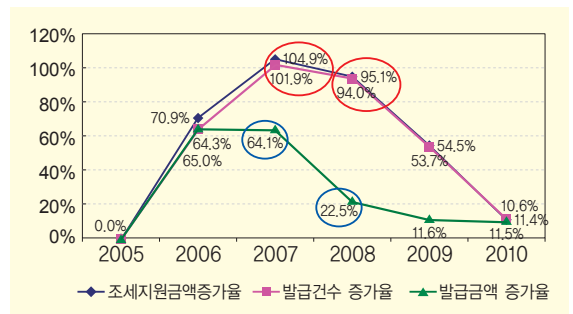
[그림 Ⅲ-4] 연도별 조세지원금액 현황 추이

(단위: 백만원, %)



자료: 국세청(내부행정자료)

[그림 Ⅲ-5] 현금영수증 관련 지표 증가율 비교



자료: 국세청(내부행정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액이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2007년 3월 도입된 자진발급제도와 2008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기존의 건당 5천원 이상 현금결제에서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로 확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액이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2007년 3월 도입된 자진발급제도와 2008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기존의 건당 5천원 이상 현금결제에서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로 확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거래건당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 현금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에 비하여 조세지원액이 과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결제건당 오프라인 거래는 22원, 온라인 거래는 15.4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는데, 현재의 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금액은 제도 도입 시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비와 낮은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는바, 제도 도입 후 7년이 경과하여 현 시점에서는 거래건당 세액공제액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IV.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소비성 업종 등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여 조세정의 구현 등 국가 재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비례한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비례한 보조비를 지원받고 있다.

동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수준과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즉시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축소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처리비용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원가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 수준을 축소하더라도 제도 정착에 저해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정원가 산정을 통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비용 절감 노력을 유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비용 보전으로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목적²⁶⁾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6)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해 현금거래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소득파악 수단으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고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됨

1. 적정원가 재산정

제도 도입 후 7년이 경과하여 초기 투자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현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적정원가를 재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을 유인하고, 적절한 비용보전으로 과도한 조세지원을 방지함으로써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건당 원가를 모두 지원하는 방안과 건당 변동원가만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원가추정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단위당 원가 및 추정 가능한 원가형태(변동원가, 고정원가)는 다르게 나타난다. 원가추정방법은 계정분류분석법²⁷⁾, 손익분기분석법²⁸⁾, 최소지승법²⁹⁾, 고저점법³⁰⁾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간 원가합수 및 거래건당 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처리 이외에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나 사업자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원가의 적정성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처리업무의 고유 성격이 기존 신용카드 처리업무와 유사하므로 신용카드 처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투자한 설비나 시스템 자원이 현금영수증 처리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원가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분회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고정원가가 변동원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거래건당 변동원가가 과도하게 산정되기도 한다. 즉, 고정원가 및 가동을 인정 정도에 따라 거래건당 원가는 큰 폭으로 등락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적정원가를 재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을 유인하고, 적절한 비용보전으로 과도한 조세지원을 방지함으로써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므로 원가추정 시 고정원가의 분석 및 비용 인정범위의 결정이 거래건당 표준원가 산정 및 이에 따른 조세지원 수준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2007년 3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가 시행되고 2008년 7월 발급금액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발급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발급금액 규모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5천원 미만의 발급금액은 전체금액 중 7.5%에 불과하나 신고건수는 그 비중이 53.1%에 달하고 있다. 특히, 5천원 미만 소액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발급제한 금액기준을 폐지한 2008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발급건수는 상반기 9억 6천만건에서 하반기에는 19억 2천만건으로 무려 99%가 증가하였으나 발급금액은 그 증가율이 8.7%로 소폭 증가한바, 이는 소액결제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소액결제에 대한 자진발급이 허용되면서 조세지원금액 증


27) 계정분류분석법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각 계정에 기록된 원가를 분석하여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구분하는 방법임.
 28) 계정분류분석법에 의한 총고정원가 금액을 활용하여 특정 건수, 특정 그룹에 속한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건당 변동원가를 추정하는 원가 추정 방법임.
 29) 최소지승법은 추정선과 실제 자료점의 수직거리로 나타나는 추정오차의 자승(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추정선을 찾는 원가추정방법임.
 30) 고저점법은 과거의 자료 중 활동수준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원가수치를 이용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임.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원가보상방식임을 감안할 때,
자진발급분에 대하여는 온·오프라인
거래와 관계없이 종이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율은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각각 104.9%, 95.1%에 달하였다.

특히, 2011년 기준 자진발급으로 인한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승인건수의 63.6%가 자진발급분이며 이 중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승인건수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승인금액 중 자진발급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이며, 이 중 5천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행금액의 6.1%에 불과하다. 특히, 백화점,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의 5천원 미만 자진발급건수가 2011년 기준 16.5억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편의점 등이 결제금액을 개별 물품가격으로 분리하여 자진발급 후 미교부하는 변칙발급의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진발급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진발급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자진발급분 중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정금액 미만의 자진발급분을 제외하는 경우 조세지원액은 현재보다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나 자진발급분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자진발급 유인이 감소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분 미전송 시 세원포착의 어려움이 있고, 처리원가에 대한 비용 보전이 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원가보상방식임을 감안할 때, 자진발급분에 대하여는 온·오프라인 거래와 관계없이 종이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조세절감액은 그리 크지 않으나 표준비용 산정을 통한 조세지원을 유지하되 자진발급분에 한하여 종이비용을 제외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비용 절감 노력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배종학,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5.
 김영심·박규현, 「세법상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한 문제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2009, pp. 205~222.
 백태영, 『원가관리회계』, 신영사, 2007.
 이성식,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이종오, 「신용카드 POS가맹점의 카드회원 신용정보 보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계간 신용카드』, 제45호, 여신금융협회, 2008. 9, pp. 32~4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http://www.archives.go.kr/nara/>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012 노벨 경제학상을 통해 본 시장 설계의 이론과 응용*

I. 들어가며



홍성훈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sunghoonhong@kipf.re.kr)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자원의 안정적 배분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현실의 다양한 시장 설계(market design)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한 로이드 샐플리(Lloyd Shapley, 89, UCLA) 교수와 앨빈 로스(Alvin Roth, 61,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선정되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애덤 스미스 이래로 경제학자들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 사이의 자원 배분 문제를 연구해 왔다. 그 중에서도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가장 중심적인 연구주제였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 논쟁해 오며, 시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척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이드 샐플리, 앨빈 로스 교수는 화폐와 같은 교환의 매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시장'이라는 교환 제도를 설계하여 자원을 안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를 위한 이론적, 실증적, 실험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공헌하였다.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심지어는 화폐 사용이 금지된 물물교환 시장은 어떠한 관점에서는 경제학적 연구의 극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교환의 매개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조차 교환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교환의 매개가 존재할 때는 더욱 수월하게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이드 샐플리, 앨빈 로스 교수의 경제학에 대한 공헌은 '시장 이론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홍범교 박사과 노영훈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일천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정리하다 보니 작업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만약 이 글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두 저자의 불찰일 것이다.

교환의 매개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조차 교환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교환의 매개가 존재할 때는 더욱 수월하게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II. 로이드 샤플리, 안정 배분 이론을 주창하다

1. 양방향 매칭과 잠정 수락 알고리즘

1962년 데이비드 게일 교수와 함께 로이드 샤플리 교수는 양방향 매칭(two-sided matching) 문제를 창안하고, 이러한 문제에서 안정적인 배분 결과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Gale and Shapley, 1962). 양방향 매칭 문제란, 서로 다른 두 집합의 경제주체들이 상대방 집합의 주체들에 대해 개별적인 선호를 갖고 있을 때, 두 집합의 주체들을 하나씩 쌍으로 맺어주는 매칭을 찾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매칭이 안정적이라 함은, 그 매칭이 주어졌을 때 각 집합의 주체들이 더 선호하는 새로운 쌍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데이비드 게일 교수와 로이드 샤플리 교수는 양방향 매칭 문제에서 안정적 매칭을 찾기 위해, 잠정 수락(deferred acceptance)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게일-샤플리 잠정 수락 알고리즘에 따르면, 두 집합 중에서 어느 한 집합의 주체들이 다른 집합의 주체들에게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은 주체들은 여러 제안들을 서로 비교하여 각각 하나의 제안만을 잠정적으로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절한다. 이 앞 단계에서 거절을 당한 제안자들은 각각의 다음 선호 대상에게 다시 제

안을 하고, 제안을 받은 주체들은 이 추가적인 제안과 앞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수락한 제안을 비교하여 더 나은 제안 하나를 다시 잠정적으로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절한다. 이렇게 앞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수락한 제안과 각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받은 제안을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서 더 이상 새로운 제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락했던 제안을 매칭의 결과로 확정한다.

양방향 매칭 문제에서 게일-샤플리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항상 안정적인 매칭을 찾아낼 수 있으며,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짝을 맺고 싶어하는 n 명의 남성과 n 명의 여성이 있고, 각 남성과 여성은 이성에 대해 강선호를 갖고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생각해보자.

1 단계

- 각 남성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에게 프로포즈한다.
- 1명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여성은 그 남성과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고, 2명 이상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여성은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골라 역시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 이제 잠정적으로 매칭된 커플, 그리고 매칭이 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남는다.

t 단계

- $t-1$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매칭되지 않은 남성은 자신이 지금까지 프로포즈하지 않았던 여성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한다.

1)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을 현실 사례로 생각해볼 수 있다.

- 각 여성은 잠정적으로 매칭되었던 남성과 새롭게 프로포즈한 남성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골라 다시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면, 그것이 매칭 결과가 되며 알고리즘이 끝난다.

사례 1. 모두 4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이 있다. 각 남성과 여성은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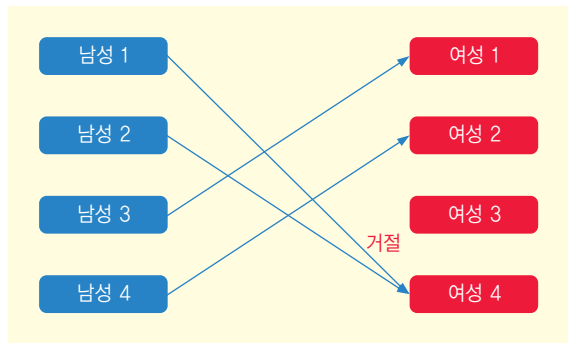
남성 1: 여성 4 > 여성 3 > 여성 2 > 여성 1
 남성 2: 여성 4 > 여성 1 > 여성 3 > 여성 2
 남성 3: 여성 1 > 여성 2 > 여성 4 > 여성 3
 남성 4: 여성 2 > 여성 1 > 여성 4 > 여성 3

여성 1: 남성 1 > 남성 2 > 남성 3 > 남성 4
 여성 2: 남성 1 > 남성 3 > 남성 2 > 남성 4
 여성 3: 남성 1 > 남성 2 > 남성 4 > 남성 3
 여성 4: 남성 3 > 남성 4 > 남성 2 > 남성 1

여기서 부등호 >는 강선호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성 1은 여성 4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여성 3, 여성 2, 여성 1을 차례로 선호한다. 이제 남성 프로포즈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적용해보자. 1단계를 시작하면서, 각 남성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에게 프로포즈한다. 남성 1과 남성 2는 여성 4에게 프로포즈하고, 남성 3은 여성 1에게, 남성 4는 여성 2에게 프로포즈한다. 두 남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여성 4는 자신이 더 좋아하는 남성 2를 고르고, 남성 1은 거절한다. 1단계에서 남성 2와 여성 4, 남성 3과 여성 1, 남성 4와 여성 2가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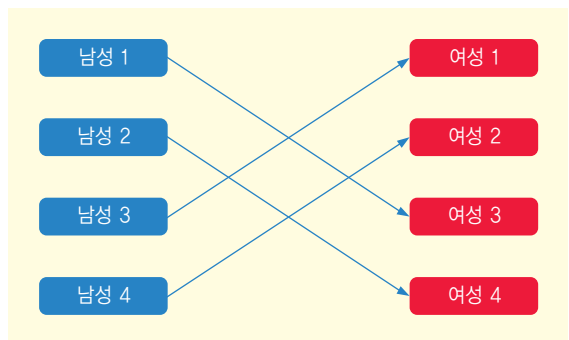
양방향 매칭 문제에서 게일-샤플리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항상 안정적인 매칭을 찾아낼 수 있으며,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1] 남성 프로포즈 잠정 수락 알고리즘 1단계



2단계에서 남성 1이 여성 3에게 프로포즈하고, 둘은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이제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었으므로, 잠정적인 매칭이 매칭 결과로 확정되고, 알고리즘이 끝난다.

[그림 2] 남성 프로포즈 잠정 수락 알고리즘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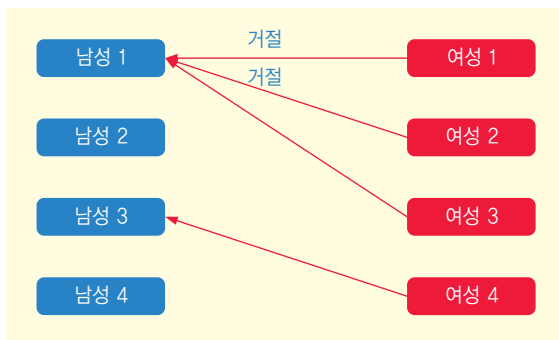


**남성 프로포즈 잠정 수락 알고리즘은
모든 안정적인 매칭 중에서
남성에게 가장 유리한 안정적인 매칭에
이르도록 한다.**

한편, 사례 1의 매칭 결과가 안정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남녀 커플도 이 매칭 결과를 거부하고 새롭게 짝을 찾아서 더 좋아질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매칭 외에도 다른 안정적인 매칭이 존재할 수 있는데, 남성이 프로포즈하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은 모든 안정적인 매칭 중에서 남성에게 가장 유리한 안정적인 매칭에 이르도록 한다. 만약 여성이 프로포즈하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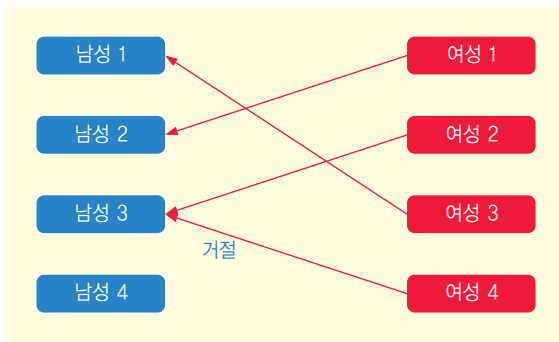
사례 2. 남성과 여성의 선호가 사례 1에서와 같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프로포즈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단계를 시작하면서, 각 여성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에게 프로포즈한다. 여성 1, 여성 2, 여성 3이 남성 1에게 프로포즈하고, 여성 4는 남성 3에게 프로포즈한다. 세 여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남성 1은 셋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 3을 고르고, 여성 1과 여성 2는 거절한다. 1단계에서 여성 3과 남성 1, 여성 4와 남성 3이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그림 3] 여성 프로포즈 잠정 수락 알고리즘 1단계



2단계를 시작하면서, 여성 1이 남성 2에게, 여성 2가 남성 3에게 프로포즈한다. 남성 3은 1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었던 여성 4와 2단계에서 새롭게 프로포즈한 여성 2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좋아하는 여성 2를 고르고, 여성 4는 거절한다. 비록 앞 단계에서 여성 4와 남성 3이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었더라도, 남성 3은 이러한 '잠정적인 매칭'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여성 2를 고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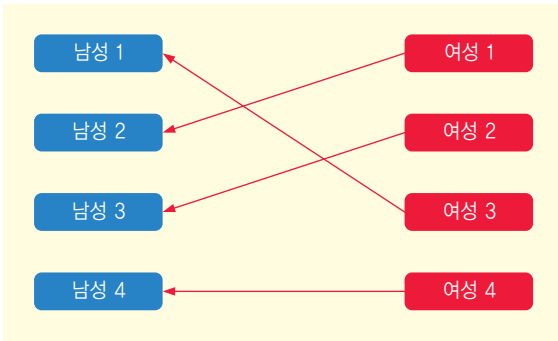
[그림 4] 여성 프로포즈 잠정 수락 알고리즘 2단계



3단계에서 여성 4가 남성 4에게 프로포즈하고, 둘은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었으므로, 잠정적인 매칭이 매칭

결과로 확정되고, 알고리즘이 끝난다.

[그림 5] 여성 프로포즈 잠정 수락 알고리즘 3단계



사례 1의 매칭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례 2의 매칭 결과가 안정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례 2의 안정적인 매칭은 모든 안정적인 매칭 중에서 여성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그 과정을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순차적으로 매칭을 찾아가는 것으로 묘사했지만, 현실의 양방향 매칭 문제에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는 중앙집중적이고 동시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중앙의 배분 제도 운영자가 경제주체들로부터 선호를 보고받고, 컴퓨터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주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경제주체들이 거짓으로 선호를 보고하여 매칭 결과를 전략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행히도 잠정 수락 알고리즘은 제안을 하는 주체들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이 프로포즈하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면, 모든 남성에게는 자신의 선호를 솔직히 보고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아야만 하는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여성들은 거짓으로 선호를 보고하여 여성에게 더 좋은 매칭 결과를

남성 프로포즈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자신의 선호를 솔직히 보고하는 것이 모든 남성에게 우월전략이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선호를 거짓으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얻을 수 있다. 만약 사례 1에서 여성 4가 자신의 선호를 남성 3 > 남성 4 > 남성 1 > 남성 2라고 보고하면, 남성에게 유리한 사례 1의 매칭 결과와 달리, 여성에게 유리한 사례 2의 매칭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양방향 매칭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을 우월전략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매칭 결과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2. 단방향 매칭과 선순위 거래 사이클 알고리즘

1974년 허버트 스카프 교수와 함께 로이드 샤플리 교수는 단방향 매칭(one-sided matching) 문제를 창안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선순위 거래 사이클(top-trading cycle)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Shapley and Scarf, 1974). 단방향 매칭 문제란, 경제주체들이 한 단위씩 나눌 수 없는 재화를 갖고 있고, 모든 재화들에 대해 선호를 갖고 있을 때, 경제주체들에게 재화를 하나씩 다시 배분해주는 문제이다. 선순위 거래 사이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처음에 갖고 있는 재화를 고려하여, 더 선호하는 재화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능한 거래 사이클을 찾아 재화를 재배분한다.

단방향 매칭 문제에 선순위 거래 사이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은 배분 결과는 상당히 강한 의미의 안정성 조건을 만족한다. 더 자세하게는, 경제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그 연합 내에서 주택을 재배분하더라

**선순위 교환 사이클 알고리즘하에서는
배분 결과가 항상 안정적이며,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선호를
보고할 유인이 없다.**

도, 알고리즘이 주는 배분보다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더 좋은 배분을 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순위 거래 사이클 알고리즘은 전략무용성이라는 바람직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각각의 경제주체에게 자신의 진실한 선호를 보고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한 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n명의 사람이 있다. 각 사람은 n채의 주택들에 대해 강선호를 갖고 있고, 교환은 주택을 맞바꿈으로써만 이루어진다.²⁾ 다시 말해, 교환의 매개가 주택 그 자체이며,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선순위 거래 사이클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자.

1 단계

- 각 사람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각 주택은 그 소유자를 가리킨다.
- 사람과 주택들이 가리키는 화살표로 방향성 그래프(directed graph)가 만들어진다.
- 이 방향성 그래프에는 적어도 하나의 사이클이 존재한다. 여기서 사이클이란, 사람 1이 주택 2를 가리키고, 주택 2가 사람 2를 가리키고, 사람 2가 주택 3을 가리키면서 화살표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사람 k가 주택 1을 가리키고, 주택 1이

사람 1을 가리켜서 만들어지는 방향성 부분 그래프(directed subgraph)를 의미한다.

- 각 사이클에서 각 사람은 자신이 가리킨 주택을 받는다.
- 이 단계에서 교환을 끝낸 사람과 주택은 시장을 떠난다.

t 단계

- t-1 단계에서 남은 사람과 주택이 있으면, 각각의 남은 사람은 남은 주택 중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가리키고, 각각의 남은 주택은 그 소유자를 가리킨다.
- 적어도 하나의 사이클이 존재한다.
- 각 사이클을 따라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환을 마친 사람과 주택은 시장을 떠난다.
- t-1 단계에서 남은 사람과 주택이 없으면, 지금까지 각 사람이 받은 주택이 배분 결과가 되고, 알고리즘이 끝난다.

사례 3. 모두 4명의 사람과 4채의 주택이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번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다. 예를 들어, 사람 1이 주택 1을 갖고 있다. 사람들의 주택들에 대한 선호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 사람 1: 주택 4 > 주택 3 > 주택 2 > 주택 1
- 사람 2: 주택 3 > 주택 4 > 주택 1 > 주택 2
- 사람 3: 주택 4 > 주택 3 > 주택 1 > 주택 2
- 사람 4: 주택 1 > 주택 2 > 주택 4 > 주택 3

여기서 부등호 >는 강선호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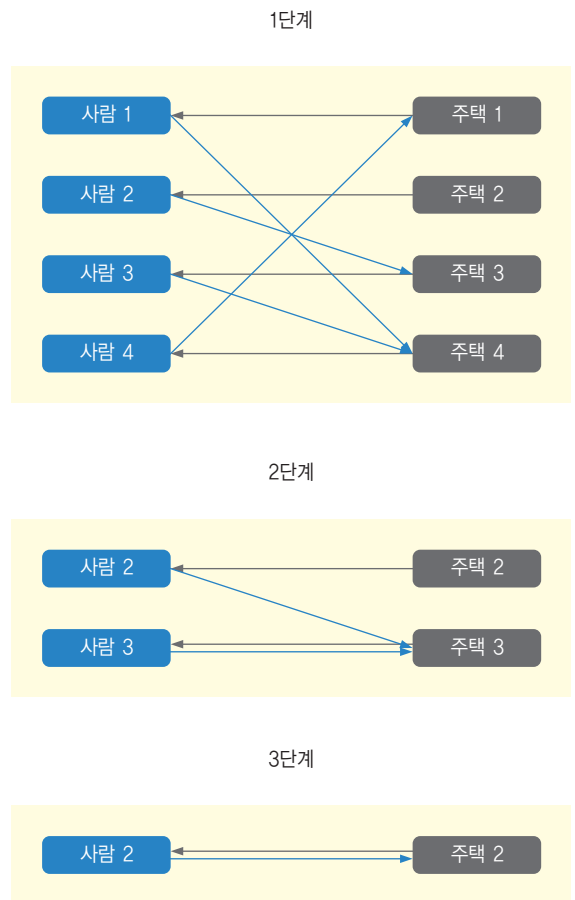
²⁾ 여기서 초기의 주택 소유권을 "우선 배분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주택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 청약 제도하에서는 각 주택 단지를 개별적으로 분양한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 분양이 이루어지는 단지들을 모아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책적 기준을 따라 우선 배분권(예를 들어, 1순위 청약권)을 나누어주고 그 우선 배분권을 교환하도록 하는 청약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들어, 사람 1은 주택 4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주택 3, 주택 2, 주택 1을 차례로 선호한다. 이제 선순위 거래 사이클 알고리즘을 적용해보자.

먼저 각 주택은 그 소유자를 가리킨다. 1단계에서 각 사람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그러면 사람 1, 주택 4, 사람 4, 주택 1, 사람 1로 사이클이 형성된다. 이 사이클을 따라 사람 1과 사람 4가 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교환하고 시장을 떠난다. 2단계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남은 주택 중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사람 3이 주택 3을 가리킨다. 사람 3, 주택 3, 사람 3으로 사이클이 형성된다. 사람 3은 자신이 원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그대로 갖고 시장을 떠난다. 3단계에서 남아있는 사람 2와 주택 2로 사이클이 형성되고, 사람 2도 주택 2를 그대로 갖고 시장을 떠난다. 남아있는 사람과 주택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받은 주택이 배분 결과가 되고 알고리즘이 끝난다.

선순위 교환 사이클 알고리즘에 의해 주택을 재배분한 결과는 처음에 주택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림 6] 선순위 거래 사이클 알고리즘



사례 3의 배분 결과가 안정적이며, 선순위 교환 사이클 알고리즘하에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선호를 보고할 유인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알고리즘에 의해 주택을 재배분한

**앨빈 로스 교수는 NRMP의 매칭 규칙이
게일-샤플리 잠정 수락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과가 처음에 주택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처음에 사람 1이 주택 4를, 사람 2가 주택 3을, 사람 3이 주택 2를, 사람 4가 주택 1을 소유하고 있다면, 선순위 교환 사이클 알고리즘하에서는 어떤 주택도 교환되지 않고 초기 배분이 곧 최종 배분이 된다.

III. 앨빈 로스, 현실에서의 시장 설계를 고민하다

1. 병원 레지던트 매칭

앞에서 양방향 매칭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한 쌍의 남성과 여성을 매치하는 사례를 언급하였다. 사실,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방향 매칭 문제는 한 남성과 여러 여성 또는 여러 남성과 한 여성을 매치하는 다대일(many-to-one) 매칭을 찾는 문제로 일반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대일 매칭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은 현실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의과 대학원 졸업생을 병원에 레지던트로 배분하는 병원 레지던트 매칭 문제이다.³⁾

중앙집중적이고 동시적인 매칭 알고리즘을 도입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의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레지던트로 근무할 병원을 찾아야 했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들은 미리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다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전 응모 과정이 대학

원을 졸업하기 수 년 전부터 시작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학생과 병원 모두에게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기 전부터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고, 병원 입장에서는 아직 대학원에 재학 중이므로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미리 레지던트 자리를 제안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병원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사전 응모 과정이 진행되면서, 응모 시기가 더욱 일러지고, 레지던트로 오기로 미리 약속했던 학생이 약속을 취소했을 때, 병원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없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장 붕괴 (market unravel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50년대 초에 전국 레지던트 매칭 프로그램(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 NRMP)이 도입되었다. 학생과 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음에도 NRMP는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그리고 곧 미국 전역의 거의 모든 레지던트 자리가 이 제도를 통해 배분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논문에서 앨빈 로스 교수는 NRMP의 매칭 규칙이 게일-샤플리 잠정 수락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병원이 프로포즈하는 방식의 잠정 수락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보였다(Roth, 1984).

하지만 사회적 변화는 한 때 혁신적이었던 제도를 구시대적 유물로 만들기 마련이고, NRMP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사회적 변화로 많은 여성들이 의과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그 결과로 상당한 숫자의 의과 대학원 졸업생들이 커플로 레지던트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졸업생 커플이 없던 시절에 병원 입장에서는 개별 졸업생이 마치 대체재와 같았다. 즉, 레지던트 정원이 모두 차고 나면, 하나의 졸업생이 다른 졸업생을 대체해야만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졸업생 커플은 마치 보완재

3) 흔히 레지던트 1년차를 인턴이라 부르기 때문에 병원 인턴 매칭 문제라고도 부른다.

와 같다. 커플을 함께 한 병원에 받아주지 않는 한, 아니면 적어도 한 지역에 있는 두 병원이 각각 받아주지 않는 한, 커플을 배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 프로포즈하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쓰는 NRMP하에서는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솔직하게 보고할 인센티브가 없다. 이는 마치 남성이 프로포즈하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에서 여성들이 솔직하게 선호를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전략적으로 선호를 조작하여 더 유리한 매칭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NRMP의 매칭 규칙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7년 앨빈 로스, 엘리엇 페렌슨 교수는 졸업생이 프로포즈하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여, 졸업생 커플이 동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NRMP 매칭 규칙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졸업생들의 선호가 전략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Roth and Peranson, 1999). 새로운 NRMP 매칭 규칙을 따라, 1997년부터 해마다 약 2만명 이상의 의과 대학원 졸업생들이 미국 전역의 병원들에 배정되고 있다.

2. 고등학교 매칭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는 문제도 양방향 다대일 매칭 문제의 현실 사례 중 하나이다.⁴⁾ 2002년까지 뉴욕시에서는 공립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선호하는 다섯 개의 학교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각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선호 및 기타 근거(성적, 출석 기록, 문화적 배경,

앨빈 로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학생 프로포즈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형제·자매의 재학 여부 등)를 바탕으로 입학생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그 배정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해마다 3만명 정도의 학생이 자신이 선호를 표시하지 않았던 학교에 배정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앨빈 로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학생이 프로포즈하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활용하자고 제안하였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배정 알고리즘이 도입되었다(Abdulkadiroglu et al., 2005). 공립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선호는 법률이나 조례 등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규칙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각 공립 고등학교가 전략적으로 선호를 조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솔직하게 선호를 제출하도록 하며, 동시에 학생들에게 유리한 배정 결과를 주는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다.

3. 신장 교환이식

말기 신장병 환자에게 신장 이식은 최선의 치료법이다. 우리 인체에는 두 개의 신장이 있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를 기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신장병 환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

4) 매칭 이론을 현실 사례에 응용할 때, 단방향, 양방향 매칭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들이 학생들에 대해 어떠한 선호도 갖지 않은 경우, 고등학교 배정 문제를 단방향 매칭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들이 모든 학생들에 대해 선호를 갖고 있다면(예를 들어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배정 문제를 양방향 매칭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체로, 각종 정책이 부여한 다양한 우선 입학권에 의해 고등학교들이 학생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선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등학교 배정 문제를 단방향, 양방향 매칭 문제 중에서 어느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교환이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 환자-기증자의 쌍들을 찾아야 하고,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환이식에 참여하는 환자-기증자 쌍의 풀을 가능한 크게 만들어야 한다.

인이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기증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 3분의 1 정도의 비율로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 신장 이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곤 한다. 혈액형이나 조직 적합성 항원형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장을 (일반적으로 간, 췌장, 골수와 같은 이식 가능한 장기들) 매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후 장기 기증 대기자로 등록하여 수 년 이상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 서로 이식이 부적합한 환자와 기증자들에게 가능한 방법은, 서로 이식이 가능한 다른 이식부적합 환자-기증자의 쌍을 찾아 직접 교환하여 이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이식’의 가능성은 의료계에서 국제적으로 1980년대부터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교환이식이 처음 진행된 것은 1991년 한국에서이다. 그리고 교환이식은 높은 이식 성공률, 높은 10년 생존율 등 여러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환이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 환자-기증자의 쌍들을 찾아야 하고,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환이식에 참여하는 환자-기증자 쌍의 풀을 가능한 크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풀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교환이식이 중계되도록 하

는 교환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교환이식 문제를 보면, 화폐와 같은 교환의 매개를 사용할 수 없는 물물 교환 시장에서조차, 교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고, 교환 알고리즘이 적절히 설계되었다면,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빈 로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2004년 연구에서, 교환이식 문제를 단방향 매칭 문제로 보고 선순위 거래 사이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환자-기증자 매칭을 찾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Roth et al., 2004).

교환이식의 풀을 확대하고, 교환이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 등에서 교환이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교환이식제도를 국가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⁵⁾

IV. 맺으며

로이드 샤플리, 엘빈 로스 교수의 연구가 다른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 참여자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략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1994년 노벨상을 수상한 존 하사니, 존 내쉬, 라인하드 젤텐 교수와 2005년 수상한 로버트 아우만, 토마스 쉘링 교수가 선도적으로 연구한 비협조 게임이론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주체들이 협력하여 경제적 성과물을 생산할 때, 그 협력의 성과물을 분배하는 규칙에 대한 연구는 협조 게임이론의 기본적인

5) 안타깝게도 한 때 교환이식 분야를 선도했던 한국에서는 현재 교환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병원들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매칭이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교환이식이 진행되는 경우는 연간 십여 건 이하이다. 한편 교환이식은 다른 치료법에 비해 사회적으로 비용이 더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율적인 교환이식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주제인데, 이 분야에서는 로이드 샤플리, 로버트 아우만 교수가 선구자이다. 그리고 협조 게임이론의 ‘샤플리 밸류’라는 분배 규칙은, 경제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내는 성과물의 한계적 가치를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경제주체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갖도록 한다. 그 이름에서 보듯이, 로이드 샤플리 교수가 처음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수학적인 아름다움으로 많은 연구자들을 매료시켜 왔다.


그리고 2007년 노벨상을 수상한 레오니드 허비츠, 에릭 매스킨, 로저 마이어슨 교수는 제도 설계 이론의 발전을 이끌었다. 제도 설계 이론에서는, 비협조 게임 이론과 협조 게임이론을 아울러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면 개인의 전략적인 행동을 방지하며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실증적이고 실험적인 분석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험 경제학의 기초는 2002년 노벨상을 수상한 버논 스미스, 다니엘 카네만 교수에 의해 세워졌으며, 앨빈 로스 교수도 실험 경제학을 선도한 연구자 중 하나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이드 샤플리, 앨빈 로스 교수는 이론적, 실증적, 실험적 방법론을 종합하여 경제학에서 ‘시장 설계’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시장 설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교환의 매개가 없는 제한된 시장 환경에서조차, 적절한 교환 제도를 설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환에 참여하도록 하면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물론 이론적 연구를 응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두 분의 선구적인 통찰력과 두 분에 의해 영감을 받은 연구자들의 노력은, 시장이라는 자원 배분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장과 같은 장기의 교환이식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교환이식제도, 고교배정제도, 주택청약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로이드 샤플리, 앨빈 로스 교수의 시장 설계 이론을 응용해 볼 수 있다.

고교선택제를 포함한 고교배정제도, 사회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주택청약제도 등을 연구하여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로이드 샤플리, 앨빈 로스 교수의 연구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Abdulkadiroglu, A., P.A. Pathak and A.E. Roth, “The New York City High School Matc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5, 2005, pp. 364~367
- Gale, D. and L.S. Shapley, “College Admissions and the Stability of Marriage,”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Vol. 69, 1962, pp. 9~15
- Roth, A.E., “The Evolution of the Labor Market for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A Case Study in Game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2, 1984, pp. 991~1016
- Roth, A.E. and E. Peranson, “The Redesign of the Matching Market for American Physicians: Some Engineering Aspects of Economic Desig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1999, pp. 748~779

Roth, A.E., T. Sonmez and M.U. Unver, "Kidney Exchan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9, 2004, pp. 457~488

Shapley, L.S. and H. Scarf, "On Cores and Indivisibility," *Journal of Mathematical Economics*, Vol. 1974, pp. 23~37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EU
- IMF
- OECD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포르투갈
- 스페인
- 영국
- 미국
- 네덜란드

*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과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EU

- 단일 은행 감독체계인 ‘은행동맹’, 2013년 이행에 합의 (2012.10.18~19)¹⁾
 - EU정상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을 직접 감독하는 단일 감독 체계인 은행동맹을 2013년 중에 마련, 대략적인 구축 일정에 합의
 - ECB에 은행 감독권 전반을 부여하는 법적 틀을 2013년 1월 1일까지 갖추고 ECB를 통한 단일 감독 체계를 내년 중 도입 예정
 - 그러나, 주요 외신에서는 은행동맹에 대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것만 있을 뿐 완료될 구체적인 시한은 정해진 바가 없어 여전히 모호하다고 보도²⁾
 - EU 집행위는 ‘Commission Work Programme 2013’에서 EU 차원의 강력한 단일 규제·감독기구 설립 및 재정·금융 연합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 (2012.10.23.)³⁾
- EU와 ECB, 스페인 배드뱅크 가동 예정 발표 (2012.10.26.)⁴⁾
 - EU와 ECB는 스페인 제1차 은행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올해 12월 1일부터 배드뱅크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
 - 스페인 은행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적이고, 당국이 투명성 개선 및 비은행대출 개발을 포함하여 은행들이 프로그램 참여 여건 등을 잘 만들어내고 있

다국 평가함

- EU 집행위, 2012~2014년 EU 및 유로지역 경제전망 발표(2012.11.7.)⁵⁾
 - 단기적으로 EU 경제가 취약한 상태이지만, 2013년부터 점차적인 성장세를 보여 2014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EU 및 유로지역 모두 2012년 마이너스 성장 후 2013년 EU(0.4%), 유로지역(0.1%), 2014년 1.6%,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 지속적인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를 반영하여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
 - 이는 재정건전화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와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지난 전망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기인
 - (고용)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지난 전망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에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정부부채) 재정긴축으로 재정적자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물가) 2012년 물가는 에너지가격 상승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지난 전망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주요 측면의 인상 압력이 크지 않아 2013~2014년에는 2% 이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1) 유럽연합,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133004.pdf

2) 세부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9월 제2호 참고

3) 유럽연합,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2-756_en.htm?locale=en

4) 유럽연합,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2-811_en.htm?locale=en

5)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2/pdf/ee-2012-7_en.pdf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1178_en.htm

〈표 1〉 가을 경제전망 주요 내용(EU 전체)

(단위: 실질 연간 증가율, %)

	실적치			2012 가을 전망치			2012 봄 전망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2	2013
GDP	-4.3	2.1	1.5	-0.3	0.4	1.6	0.0	1.3
민간소비	-1.5	1.1	0.1	-0.6	0.0	1.2	-0.3	0.7
정부지출	2.2	0.7	-0.1	0.0	-0.4	0.4	-0.5	-0.1
총투자	-13.0	0.2	1.4	-2.2	0.1	2.8	-0.9	2.2
고용률	-1.9	-0.5	0.2	-0.4	-0.2	0.6	-0.2	0.2
실업률 ¹⁾	9.0	9.7	9.7	10.5	10.9	10.7	10.3	10.3
물가상승률 ²⁾	1.0	2.1	3.1	2.7	2.0	1.8	2.6	1.9
재정수지 ³⁾	-6.9	-6.5	-4.4	-3.6	-3.2	-2.9	-3.6	-3.3
정부부채 ³⁾	74.6	80.2	83.0	86.8	88.5	88.6	86.2	87.2
조정된 경상수지 ³⁾	-0.7	-0.6	-0.5	-0.2	0.4	0.6	-0.4	0.0

주: 1) 고용가능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

2)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연간 증가율(%)

3) GDP 대비 비율(%)

〈표 2〉 가을 경제전망 주요 내용(유로지역)

(단위: 실질 연간 증가율, %)

	실적치			2012 가을 전망치			2012 봄 전망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2	2013
GDP	-4.4	2.0	1.4	-0.4	0.1	1.4	-0.3	1.0
민간소비	-1.0	0.9	0.1	-1.0	-0.4	1.0	-0.6	0.5
정부지출	2.6	0.7	-0.1	-0.2	-0.4	0.6	-0.8	0.0
총투자	-12.7	-0.1	1.5	-3.5	-0.6	2.5	-1.5	1.9
고용률	-2.1	-0.6	0.2	-0.8	-0.5	0.4	-0.5	0.0
실업률 ¹⁾	9.6	10.1	10.1	11.3	11.8	11.7	11.0	11.0
물가상승률 ²⁾	0.3	1.6	2.7	2.5	1.8	1.6	2.4	1.8
재정수지 ³⁾	-6.3	-6.2	-4.1	-3.3	-2.6	-2.5	-3.2	-2.9
정부부채 ³⁾	80.0	85.6	88.1	92.9	94.5	94.3	91.8	92.6
조정된 경상수지 ³⁾	-0.2	-0.1	0.0	0.9	1.2	1.3	0.1	0.6

주: 1) 고용가능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

2)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연간 증가율(%)

3) GDP 대비 비율(%)

■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 합의(2012.11.12.)⁶⁾

-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상당한 노력을 인정하고 재정 및 구조 개혁 의지에 대해 확신하여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것에 합의
 - 단, 그리스의 긴축프로그램 이행 검토 및 추가 재정지원 필요 여부 등 추가 구제금융 승인은 오는 20일에 있을 특별회의에서 결정될 예정
- 또한, 주요 외신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2016년까지 2년 연장될 경우 326억유로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



■ 2012년 10월 9일~1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공동성명(Communiqué) 발표(2012.10.13)

- (동향) 글로벌 경제성장은 감속하였으며 상당한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남아 있음
- (정책적 대응) 신뢰성을 재건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적시의 정책실행이 중요, 부정적인 경제성장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선진국) 많은 선진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medium-term fiscal consolidation plans)의 실행이 중요하며 재정정책은 가능한 성장친화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유로지역) 통화동맹(monetary union)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동맹과 재정통합을 적시에

6) 유럽연합, "Eurogroup statement on Greece", 2012.11.12.



실행해야 하며 성장과 고용을 향상시킬 구조적 개혁이 필요

- (미국) 미국에서 재정절벽의 방지와 부채한도의 상향조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일본) 일본에서는 올해의 예산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며 중기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더 진전하는 것이 필요
- (신흥개발도상국) 신흥개발도상국은 불리한 충격에 대응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의 유연성을 활용해야 함을 권고
- (글로벌 정책의제) 고용 및 성장을 위한 정책, 부채의 지속가능성, 금융시스템의 회복,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의 감소가 최우선 순위의 의제

■ IMF, 2012년 11월 4~5일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Global Prospects and Policy Challenges’ 보고서 발표(2012.11.4~5)

- (동향) 최근의 정책적 조치는 금융스트레스의 완화와 경제상황의 안정화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취약한 상태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2년 3.3%, 2013년 3.6%로 전망
 - 유로지역과 미국에서 경기부양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위험요인) 글로벌 경제의 하방위험이 상당히 남아 있음
 - 유로지역에서 정치적 요인 때문에 유로안정화기구(ESM)와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에 의해 적시에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통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은행연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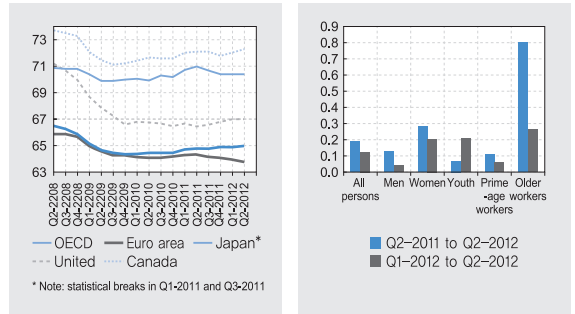
- 유로지역 주변국에서 구조적인 재정개혁을 완성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축 프로그램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음
-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되고 부채 한도(debt ceiling)의 상향 조정에 실패한다면 세계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음
- 일본의 재정 상황은 금융부문의 공공부채 과다보유로 소비세율의 단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음
- 잠재 성장률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하락할 수 있음
- (정책적 대응) 정책 입안자들은 하방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성 있는 중기 재정 조정(medium-term fiscal adjustment), 구조적 개혁 등과 같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유로지역에서 유로안정화기구(ESM)와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을 기반으로 하여 은행의 재무상태를 강화하고 유럽연합의 경제통화동맹(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을 완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신흥국에서 점진적으로 재정적 완충장치를 재구축해야 하며, 하방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하고, 금융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macro-prudential) 조치에 의존해야 함



- 2012년 2사분기 고용률⁷⁾ 발표(2012.10.16)
 - OECD 지역의 2012년 2사분기 고용률은 65.0%로 전분기 대비 0.1%p 증가, 전년동기 대비 0.2%p 증가 하였으나 이는 금융위기 전보다 1.5%p 낮은 수치임
 - 미국은 67.0%로 3분기 연속 증가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캐나다 또한 2분기 연속 증가하여 72.3%를 기록
 - 반면 유로지역 국가들의 고용률은 63.8%로 4분기 연속 하락
 - 스위스는 전년동기 대비 4.7%p 하락한 51.4%, 스페인은 2.7%p 하락한 55.6%, 포르투갈은 2.4%p 하락한 62.3% 기록
 - 분류별로 전년동기 및 전기 대비 고용률 변화에 큰 차이를 보임
 - 고령층 고용률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55.4%를 기록. 이는 금융위기 전보다 1.3%p 높은 수치로 정년연장 구조개혁 실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반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금융위기 전보다 3.5%p 하락한 39.3%를 기록

[그림 1] 분기별 고용률(좌)과 분류별 고용률 변화(우)

(단위: %, %p)



데이터 자료: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TLABOUR>
 그래프 자료: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News Release: 2nd Quarter 2012

- 연간보고서 *Revenue Statistics*⁸⁾ 발표-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GDP 대비 세입비율이 '08~'09년의 금융위기 이후 다소 증가(2012.10.24)
 - OECD 국가들의 2011년 GDP 대비 세입비율은 약 34.0% 기록. 이는 '10년 33.8%에 비해 0.2%p 증가한 수치이나 '07년 최고치인 35.1%에는 못 미치는 수준
 - 칠레, 프랑스, 체코, 독일은 2011년 크게 증가한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스웨덴은 크게 감소
 - 2010~2011년 GDP 대비 세입비율 증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해석
 - 금융위기 이후 누진세(progressive tax)제도와 함께 경제회복이 GDP보다 빠르게 세입을 증가시켰고 동시에 여러 국가들이 기본세와 세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평가
 - 이에 OECD 사무총장 Angel Gurría는 2011년 세입비율 증가는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7)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

8) *Revenue Statistics*는 OECD의 연간보고서로 회원국들의 세입에 대한 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금번 보고서에는 1965~2010년의 세입 데이터와 2011년의 잠정치료를 포함



고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회복, 경제활동 활성화, 고용창출에 대한 노력 또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

〈표 3〉 GDP 대비 세입비율

(단위: %)

국가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OECD 전체	35.2	35.1	34.5	33.7	33.8	34.0
스웨덴	51.4	47.4	46.4	46.6	45.5	44.5
프랑스	44.4	43.7	43.5	42.5	42.9	44.2
이탈리아	42.0	43.2	43.0	43.0	42.9	42.9
독일	37.5	36.1	36.5	37.3	36.1	37.1
헝가리	39.3	40.3	40.1	39.9	37.9	35.7
영국	36.4	35.8	35.8	34.2	34.9	35.5
체코	34.0	35.9	35.0	33.9	34.2	35.3
에스토니아	31.0	31.4	31.7	35.7	34.2	32.8
스페인	34.3	37.3	33.1	30.9	32.3	31.6
그리스	34.3	32.5	32.1	30.4	30.9	31.2
캐나다	35.6	33.1	32.3	32.1	31.0	31.0
아일랜드	31.0	30.9	29.1	27.7	27.6	28.2
한국	22.6	26.5	26.5	25.5	25.1	25.9
미국	29.5	27.9	26.3	24.2	24.8	25.1
포르투갈	30.9	32.4	32.5	30.7	31.3	n.a.
일본	26.6	28.5	28.5	27.0	27.6	n.a.
호주	30.4	29.7	27.1	25.8	25.6	n.a.

자료: OECD Annual Report Revenue Statistics Edition 2012
<http://www.oecd.org/ctp/taxpolicyanalysis/revenuestatistics2012edition.htm>

※ 한국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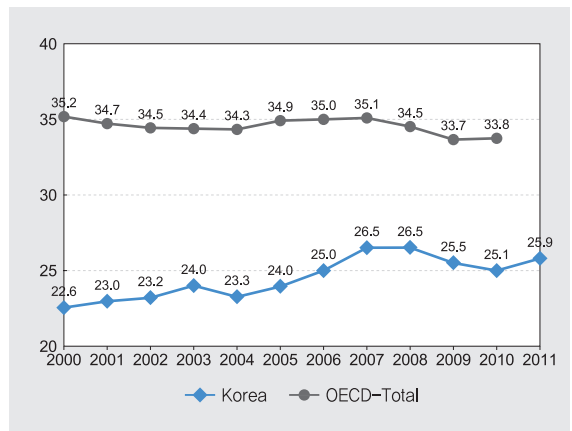
- (GDP 대비 세입비율) 2007년 26.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감소, 2011년 다소 증가하여 25.9% 기록하였으나 이는 OECD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임
- (세금 구조)
 - 개인 및 법인 소득세(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의 비율이 OECD평균보다 모두 낮게 나타남

-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과 급여세(payroll taxes)에 대한 비율은 2000년 이래 증가하였으나 OECD평균에는 못 미침
- 재산세(property taxes) 비율은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 기록
- 부가가치세(Taxes on goods and services)의 비율은 8%대를 유지하며 연도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나 OECD평균 11%대 보다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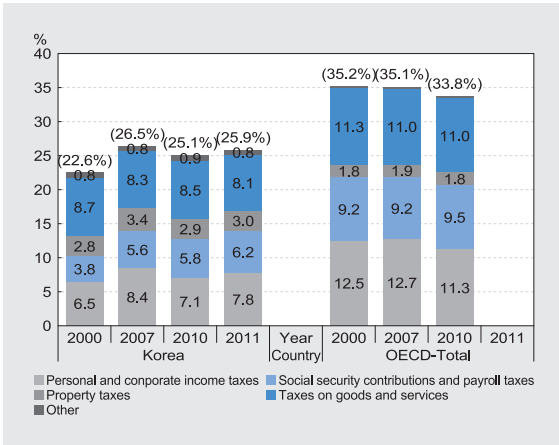
[그림 2] 한국과 OECD전체의 GDP 대비 세입비율 연도별 비교

(단위: %)



자료: OECD Annual Report Revenue Statistics Edition 2012
<http://www.oecd.org/ctp/taxpolicyanalysis/revenuestatisticscountrynoteforkorea.htm>

[그림 3] 한국과 OECD전체의 주요항목별 GDP 대비 세입비율 연도별 비교



자료: OECD Annual Report Revenue Statistics Edition 2012
http://www.oecd.org/ctp/taxpolicyanalysis/revenuestatisticscountrynotefor_korea.htm

■ Better Policies series *Addressing the Competitiveness Challenges in Germany and the Euro Area*⁹⁾ 발표(2012.10.30~31)

-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와 악화되고 있는 경제성장 전망은 경쟁력 제고 개혁의제를 유럽경제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만들고 있음
- 유로지역은 회원국간 경쟁력 격차를 해결해야 하는 것과 나머지 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double challenge)에 직면하고 있음
 - 과거 10년간 생산성은 비교적 약하게 향상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오히려 침체
 - 독일의 노동보상은 생산성에 비해 더 적게 오른 반면 아일랜드, 남유럽에서는 더 크게 올라 경

- 수지 불균형과 경쟁력에 있어서의 격차를 야기
- 유로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임금 간 강화된 관계를 위해 정책적 조치 필요
 - 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개혁(labour market reform), 혁신(innovation), 서비스 자유화(service liberalisation), 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skills and education) 분야에서 폭넓은 전략을 펼쳐야 함
- 국가들에 대한 권고는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채택되어야 함
 - 예를 들면 독일을 포함한 흑자국은 국내 수요에 더 크게 의존적인 것을 조정하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 및 소비기회를 늘릴 수 있는 개혁이 필요
- 이러한 전략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더욱 더 균형잡힌 경제에 기여할 것임

■ OECD Global Forum on VAT 개최(2012.11.7~8)

-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는 금번 포럼의 핵심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
 - 부가가치세 정책은 경제회복 노력에 있어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더 많이 활용될 수도 있음
 - ☞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화 전략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함
 - ☞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과세기반(tax base)을 넓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 과세기반을 넓히는 방법으로는 면세 또는 경감세율¹⁰⁾이 적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점차

9) 베를린에서 열린 연간회의에서 독일연방 총리와 국제기구 IMF, WBG, WTO, ILO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OECD 사무총장에 의해 발표됨

10) 경감세율(reduced tax rate):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한 경우 낮추어 적용하는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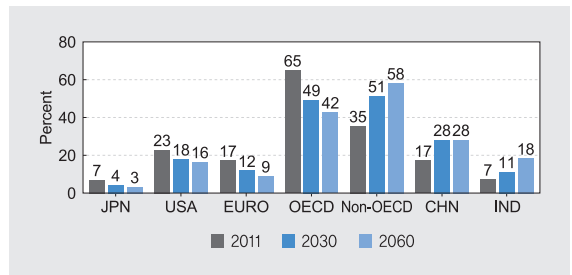
- 적으로 표준세율(standard rate)을 적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black holes' 을 막아야 함
 - ☞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탈세(VAT fraud)를 없앨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리 시스템이 필요
 - ☞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는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 그리고 불이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 발생
- 잘 설계되고 조정된 부가가치세 시스템은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임
 - ☞ 잘못 설계되고 조정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시스템은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통해 무역을 왜곡시키고 과소과세(under-taxation), 정부수입의 손실, 높은 수익위험(revenue risk)과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야기

■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3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발표 (2012.11.9)

-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 중 주요국가에 대해 2060년까지의 경제성장 전망을 새로운 모형으로 부터 도출
-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점진적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가정한 기준시나리오와 심도 있는 정책개혁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
 - OECD 비회원국 중 G20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OECD 회원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좁을 것으로 예상

- 향후 50년간 세계경제 구성이 급격히 변할 것으로 예측(그림 4) 참조
-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없으면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국가간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심도 있는 재정건전화 노력과 구조개혁은 국가간 불균형을 완화시켜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

[그림 4] World GDP 구성에 대한 주요 변화



주: World GDP는 OECD 회원국 34개 국가와 OECD 비회원국 중 G20 8개 국가의 GDP 합계를 의미
 자료: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3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2012년 예산안 관련 세법개정 발의안(Notice of Ways and Means motion) 하원 상정(2012.10.15.)
 - 캐나다 재무부는 2012년 예산안에서 계획한 세법 개정 내용¹¹⁾을 담은 발의안을 하원에 상정
 - (개인소득세) 장애인 연금투자제도(RDSP) 개선,

11)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자료 참조.
http://clla.kiptl.re.kr/foreign/overseas_view.aspx?sn=204489&code=A&country=america

집단 질병 및 사고 보험(Group Sickness or Accident Insurance Plans)에 대한 고용주 부담 의무 명확화 등
 - (법인소득세) 청정에너지 발생 및 보존설비에 대한 자본비용공제 혜택 확대, 특정 광물자원에 대한 채광비용 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등

- 캐나다 재무부, 「2012년 일자리 창출 및 성장법안(Jobs and Growth Act, 2012)」 발표(2012.10.18.)
 - 캐나다 재무부는 2012년 예산안의 핵심 정책을 법률로 제정한 두 번째¹²⁾ 법안인 「2012년 일자리 창출 및 성장법안」을 발표
 -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강화) 소기업 대상 임시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 1년 연장, 상업항공권 부문 지원 강화 등
 -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캐나다 국민연금(CPP) 운영 효율화 등
 - (청정에너지 촉진 및 조세체계 중립성 향상)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 대상 세금 경감혜택 확대 등

2. 기타

- 캐나다 통계청, 2012년 2분기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accounts) 발표(2012.10.15.)
 - 2012년 1분기 대비 연방정부 채무는 감소하였으나 그 외 정부 채무는 지속상승
 - (정부부문 채무) 연방정부 채무는 2012년 1분기 대비 약 0.3%p 하락한 반면, 일반정부 및 기타정

부부문 채무는 2011년 4분기 이래로 지속 상승
 - (가계부문 채무) 가계 채무는 GDP 대비 93% 수준으로 2011년부터 지속 상승

〈표 4〉 2012년 2분기 국민대차대조표 내역 발표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구 분	2011	1분기	2011	2분기	2011	3분기	2011		
GDP대비 채무비율 (%)	정부 부문	일반정부	107.96	108.27	108.54	107.56	108.98	109.87	0.8%
		연방정부	49.69	49.01	48.68	48.44	49.23	48.89	△0.7%
		기타	58.05	58.85	59.40	58.79	58.92	60.32	2.4%
	가계부문	91.87	92.25	92.34	92.50	92.45	93.24	0.9%	
국민순자산	6,237	6,336	6,456	6,529	6,691	6,768	1.2%		

자료: 캐나다 통계청, National balance sheet accounts, second quarter 2012 표 재구성

- 「캐나다 인구고령화의 경제 및 재정적 영향(Economic and Fiscal Implications of Canada's Aging Population)」 발간 (2012.10.23.)
 - 캐나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건전화와 장기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
 - 제1장 인구고령화 현황 (The Demographic Challenge)
 - 캐나다는 기대수명 증가, 출산율 저조,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도달에 따라 2030년 노인인구 대비 근로인구 비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할 전망
 - 제2장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Economic Implications)
 - 향후 노인인구 비중 증가로 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공급 성장률 둔화가 예상

12) 첫 번째는 「일자리창출, 경기부양 및 장기적 번영법(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 Act)」으로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내 『주요국 재정동향』 2012년 5월 제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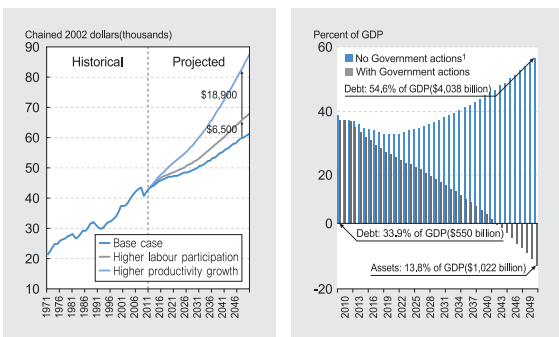


되어 실질소득 성장이 악화될 전망

-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율과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질 경우 기존 실질소득 전망치가 개선되므로(그림 5 좌),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제3장 인구고령화의 재정적 영향 (Public Finance Implications)
 - 인구고령화는 정부 수입 증가율을 낮추고 지출 증가율을 높여 재정압박을 가중
 - 이에 대비하여 캐나다는 최근 예산안에서 경기부양책 종료, 부처별 지출 절감 등으로 균형재정 달성 노력 중
 -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최근 정부 조치들을 지속 수행한다고 가정¹³⁾했을 때, 연방정부 채무비율은 2040년 이후 0 이하로 떨어질 전망(그림 5 우)

- 캐나다 재무부, 민간부문¹⁴⁾ 경제전망치 서베이 결과 발표(2012.10.29.)
 - 2012년 10월에 수행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 2013년 실질GDP성장률 전망치가 동년 3월과 6월 전망치 대비 하락했음을 강조
 - (실질GDP성장률) 10월 조사결과, 2013년에는 3월과 6월 전망 대비 하락 전망하였으나 2014년 이후는 3월과 6월 전망치 대비 소폭 상승 전망
 - (실업률) 2012년 실업률은 6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나 2013년 전망치는 0.1%p 상승한 7.2% 전망
 - (물가상승률) 캐나다 수출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2012년 전망치가 3월과 6월 전망치 대비 하락하였으나, 2013년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 전망

[그림 5] 1인당 실질소득 전망(좌)
GDP대비 채무비율 전망(우)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재무부 계산

<표 5> 민간 경제전문가 대상 경제전망치 서베이 결과 비교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16
실질GDP성장률 (Real GDP Growth)	2012년 3월	2.1	2.4	2.4	2.4	2.2		2.3
	2012년 6월	2.1	2.2	2.4	2.4	2.2		2.3
	2012년 10월	2.1	2.0	2.5	2.5	2.3	2.2	2.3
실업률 (Unemp. Rate)	2012년 3월	7.5	7.2	6.9	6.7	6.6		7.0
	2012년 6월	7.3	7.1	6.8	6.6	6.5		6.9
	2012년 10월	7.3	7.2	6.8	6.6	6.5	6.4	6.9
물가상승률 (CPI Inflation)	2012년 3월	2.1	2.0	2.0	2.0	2.0		2.0
	2012년 6월	2.0	2.1	2.0	2.0	2.0	2.0	2.0
	2012년 10월	1.7	2.0	2.0	2.0	2.0	2.0	1.9

자료: 캐나다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 Survey of Private Sector Economic Forecasters

13) 2012년 예산안에서 계획한 공공부문 지출삭감, 노령연금 및 소득보장지원금 수혜 기준연령 상향 조정 등의 조치들 외에 신규 조치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향후 경제가 커다란 충격 없이 지속 성장한다고 가정.

14) 조사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음.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Laurentian Bank Securities, IHS Global Insight, National Bank Financial,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UBS Securities Canada,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 의회예산처(PBO), 경제 및 재정전망 업데이트 (Economic and Fiscal Outlook Update) 보고서 발간(2012.10.29.)
 - (경제전망) 향후 세계 경기 약화와 정부지출 감축이 캐나다 경제에 대한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반적으로 4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
 - (실질GDP성장률) 2012년 성장률은 4월 전망치와 동일하나 2013년 0.1%p, 2014년 0.2%p 등 4월 대비 하향 조정하여 2012~17 평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
 - (실업률) 4월 전망치 대비 매년 0.1~0.3%p 하향 조정 전망

〈표 6〉 의회예산처 경제전망 업데이트 결과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17
실질GDP성장률 (Real GDP Growth)	2012년 4월	1.9	1.6	2.2	2.9	3.2	2.6	2.4
	2012년 10월	1.9	1.5	2.0	2.9	3.0	2.3	2.3
실업률 (Unemp. Rate)	2012년 4월	7.7	7.9	7.9	7.5	7.0	6.6	7.4
	2012년 10월	7.4	7.6	7.6	7.3	6.8	6.5	7.2
물가상승률 (CPI inflation)	2012년 4월	2.0	1.7	1.8	1.9	2.0	2.0	1.9
	2012년 10월	1.6	1.6	1.8	1.9	2.0	2.0	1.8

자료: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Outlook Update

- (재정전망) 총재정수입은 늘어나고 재정지출은 꾸준히 감소하여 향후 4년 내에 재정수지 균형 회복 전망
 - (총재정수입) 캐나다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고용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FY2012-13 이 후로 총수입이 꾸준히 증가
 - (총지출) 2012년 예산안에서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억제하는 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FY2013-14부터

프로그램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표 7〉 의회예산처 재정전망 업데이트 결과

(단위: GDP대비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총재정수입		14.5	14.7	14.7	14.9	15.0	14.9
총지출	프로그램지출	13.8	13.7	13.4	13.2	12.8	12.6
	공공채무비용	1.8	1.7	1.6	1.6	1.6	1.7
재정수지		△1.0	△0.7	△0.2	0.2	0.5	0.6
연방채무		33.9	33.6	32.6	31.0	28.9	27.1

자료: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Outlook Update

- 재무부,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발간 (2012.11.13.)
 - 캐나다 재무부는 민간부문 경제전망치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예산안의 경제 및 재정전망치를 조정한 보고서를 발간
 - [경제전망]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과 국제 수요 축소를 감안하여 2012년 예산안 대비 GDP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을 하향 조정¹⁵⁾
 - (물가) 국제 수요 감소로 인해 2012년 물가가 예산안 전망치보다 대폭 낮게 실현됨에 따라 향후 전망치도 하향 조정
 - [재정전망] 2012년 예산안 예상과 달리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총수입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균형재정 회복 시기를 FY2015-16에서 FY2016-17로 조정
 - (재정수지) 총수입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FY2016-17까지 매년 2012년 예산안 전망치보다 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정
 - (위험조정 후 재정수지¹⁶⁾) 경기 위험요인을 조정

15) 실질GDP성장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는 2012년 11월 제호 『주요국 재정동향』 참고



한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목표인 FY2015-16보다 늦은 FY2016-17에 균형재정 달성

- (총수입) FY2012-13부터 FY2016-17까지 총수입이 2012년 예산안 전망치 대비 약 60억~70억캐나다달러 감소 조정 전망

〈표 8〉 2012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2011 ~12	2012 ~13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2012년 예산안 재정수지	△24.9	△21.1	△10.2	△1.3	3.4	7.8
2012년 예산안 위험조정 후 재정수지	△24.9	△18.1	△7.2	1.7	6.4	10.8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0.9	△5.8	△6.3	△7.3	△5.3	△6.2
Add(+): 총수입	△2.8	△6.3	△7.1	△7.8	△7.7	△7.3
Less(-): 프로그램지출	△2.0	0.8	0.6	1.5	0.5	0.5
Less(-): 공공채무비용	0.1	△1.3	△1.3	△2.0	△2.9	△1.6
2012년 예산안 편성 후 결정된 정책에 의한 조정	0.5	1.1	0.0	0.0	△0.1	△0.1
Update된 재정수지	△26.2	△25.0	△13.5	△5.6	1.2	4.7
Update된 위험조정 후 재정수지	△26.2	△26.0	△16.5	△8.6	△1.8	1.7

자료: 캐나다 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2.11)

- 부처별 성과 보고서(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 DPR) 하원 상정(2012.11.8.)
 - 재무위원회(TB) 위원장은 FY2011-12 부처별 성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하원에 상정
 - 동 보고서는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보고서(RPPs)」에서 수립했던 목표 대비 실제 성과를 기술한 보고서로 예산안(The Estimates) 문서의 Ⅲ장을 구성
 - 이 중 재무부는 성과지표인 실질GDP성장률, 실업

률, GDP 대비 순채무 비율 등을 통해 FY2011-12 전략결과를 보고

〈표 9〉 FY2011-12 재무부 성과 보고서 내용 요약

성과지표	목표	FY2011-12 성과
실질GDP성장률	구체적인 목표치(target) 미설정.	G7 중 2번째로 높은 2.1% 달성
실업률	목표(goal)는 G7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임	FY2011-12 내에 0.4%p 하락 현재는 G7 국가 중 세 번째로 실업률이 낮음
GDP 대비 재정수지 및 부채비율		2011년 순채무비율이 G7 국가 중 최하치인 33.3% 달성

자료: 캐나다 재무부,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 2011-12(2012.11)

- FY2012-13 추경안(B) 하원 상정(2012.11.8.)
 - 추경안(B)은 의결지출을 본세출예산안의 약 2.7% 수준인 25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캐나다 원주민 수자원 및 폐수 관리 계획(First Nations Water and Wastewater Action Plan) 지원에 162백만캐나다달러 편성
 -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을 위한 산업조사지원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에 91백만캐나다달러 편성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FY2012-2017 프로그램예산법안(LPFP: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2012-2017) 발표 (2012.9.28)
 - 2013년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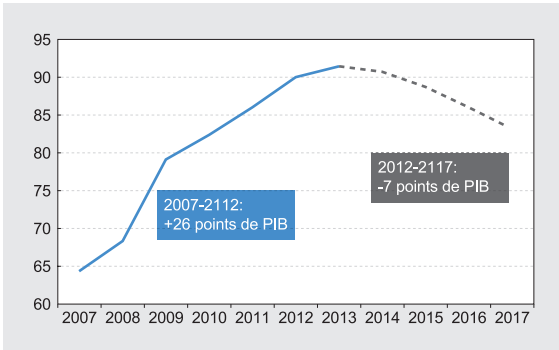
16) 정부는 민간부문보다 향후 경기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정부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전망한 후 이를 감당한 재정수지를 산출

지만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2%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

- 2012년 GDP 대비 89.9%인 국가 채무 비율을 2017년 82.9%로, 7%p 감소시킬 계획¹⁷⁾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5년간(2007-2012) 26%p 증가

[그림 6]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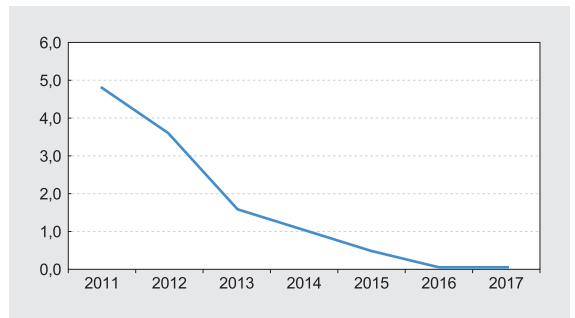


자료: LPFP 2012-2017

- FY2012-2017 프로그램예산법안은 2016년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채무와 연금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안정화
 -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3년 동결시킨 후, 2014년 및 2015년에는 매년 7.5억유로씩 축소할 계획

[그림 7]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단위: GDP대비 %)



자료: LPFP 2012-2017

- 연평균 0.7%의 재정지출증가를 전망
 - 2017년 GDP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2012년 대비 약 3%p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조세부담률은 2015년까지 증가한 후,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

<표 10> 2012~2017 재정 전망

(단위: GDP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조적 재정수지	-4.6	-3.6	-1.6	-1.1	-0.5	0.0	0.0
재정수지	-5.2	-4.5	-3.0	-2.2	-1.3	-0.6	-0.3
국가채무 ¹⁾	85.3	87.4	88.4	87.3	85.4	82.9	80.1
재정지출 비중	56.0	56.3	56.3	55.6	54.9	54.2	53.6
조세부담률	43.8	45.0	46.5	46.5	46.7	46.6	46.3

주: 1)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제외
자료: LPFP 2012-2017

- 사회보장 지출 목표의 경우, 연간 평균 2.7억유로의 지출절감 계획 포함
 - 의료지출의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보험지출 목표 (ONDAM: The objective of national health

17)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포함



insurance expenditure) 제한

- 의료보험비 지출 증가율은 2013년 2.7%, 2014년 2.6%, 2015~2017년 2.5%로 전망
- 의료 물품 가격 절감, 지역 의료시설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등

〈표 11〉 사회보장 지출 목표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출 목표	454.7	469.6	484.2	499.2	514.4	530.5

주: 1) 자료: LPPF 2012-2017

2. 조세동향

금융소득 누진소득세율 적용 계획 재검토

- 프랑스 재무부장관 Perre Moscovici는 10월 4일에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소득세율 적용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소득세율 적용은 프랑스 정부가 2012년 9월 28일에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포함됨
 - 2013년 예산안은 정부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의회에서 검토 중임
-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은 19~24%까지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 현행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21%와 24%임
 - 현행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임

-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음
 - 현행 누진소득세율은 아래 〈표 12〉와 같이 0~41%임
 - 이 조치로 20억유로의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재검토 이유: 이 조치는 고도기술 사업자의 창업과 주식양도의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표 12〉 현행 프랑스 누진소득세율(2012년)

(단위: 유로, %)

과세 구간	세율
5,963 이하	0
5,963 초과 ~ 11,896 이하	5.5
11,896 초과 ~ 26,420 이하	14
26,420 초과 ~ 70,830 이하	30
70,830 초과	41

3. 재정동향

-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규모 기업 감세정책 발표¹⁸⁾ (2012.11.6)
 - 감세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3년 동안 450억 유로(약 62조 5천억원)에 이를 전망
 - 2013년 100억유로, 2014년 150억유로, 2015년부터 매년 200억유로의 법인세 세액공제 계획(2015년 이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프랑스 GDP의 1% 수준)
 - 다만 기업들이 공제받는 세금을 투자와 고용 확대에 써야 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자금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명시

18) 프랑스 정부 포탈, 〈<http://www.gouvernement.fr/>〉; 에로 총리 발표문(Seminaire gouvernemental sur la competitivite), 2012.11.6

- 재정 부족분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으로 충당
 - 부가가치세율은 2014년 1월부터 기존 19.6%에서 20.0%로 0.4%p 인상, 음식점에 부과되는 특수부가가치세율은 7%에서 10%로 3%p 인상
 - 5억유로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기금 신설
 - 2016년부터는 환경세가 신설돼 매년 30억유로의 재원 확보
- 투자와 고용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 회복 기대
 - “이번 조치로 기업의 노동비용이 6%까지 하락할 것”(에로 총리)
 - “법인세 감면으로 앞으로 5년간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GDP 증가율은 0.5%포인트 높아질 것”(피에르 재무장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30억유로 규모의 금액이 투입될 전망

- 2013년 보험료율은 총 0.2%p 인상(근로자 0.1%p, 고용주 0.1%p)되며, 2017년에는 0.5%p 인상될 예정

〈표 13〉 퇴직연령 단축 효과

	2013	2017
수혜자수(만명)	11	10
추가 재정부담(억유로)	11	30
사회보장보험료율 인상(%p)	0.2	0.5

자료: 프랑스 정부 포털, 사회보장부 보도자료 인용, 2012.11.2

독일

1. 예산·결산 등

- 독일 재무부, FY2012 3분기 예산 집행결과 발표 (2012.10.22)²¹⁾
 - 2011년 동기간 대비 2012년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은 감소, 재정수입은 증가함
 - 이에 따라 2012년 1~9월 재정적자는 2011년 동기간 대비 82.9억유로 감소한 262억유로로 나타남
 - 신규차입 또한 2011년 동기간 대비 105.5억유로 (40%) 감소한 157억유로로 나타남

- 퇴직연령 60세 단축 법령(Decret relatif au depart a la retraite a 60 ans) 발효¹⁹⁾ (2012.11.1)
 -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²⁰⁾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연금법 개정 (2010.11.10)
 - 올랑드 대통령은 연금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2012.6.6), 법령통과 (2012.7.2)
 - 법령 발효로 인한 소요 비용은 사회보장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될 계획
 - 2013년 11억유로가 추가로 집행되고, 필요 재원이

19) 프랑스 정부 포털, <<http://www.gouvernement.fr/>>

20) 연금가입기간 부족에 따른 감액 없이 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

21) 독일 재무부 홈페이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Service/Publications/2012-10-federal-budget.html>



〈표 14〉 2012년 3분기 집행결과

(단위: 백만유로)

	2012(추정) ¹⁾	2012(1~9월)	2011(1~9월)
재정지출	312,500	225,415	227,425
재정수입	280,037	199,188	192,906
조세수입	252,223	182,671	174,895
재정수지	△32,463	△26,173	△34,465
신규차입	32,100	15,697	26,244

주: 1) 2012 추경예산 포함
 자료: 독일재무부, Federal budget and fiscal policy key figures, September 2012.

2. 기타

- 제6차 안정화위원회 개최(2012.10.24)²²⁾
 - 독일은 연방재무장관 쇼이블레(Sch?uble)의 주도하에 베를린에서 제6차 안정화위원회를 개최²³⁾
 - 부채제한법 준수를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재차 언급하였으며, 이를 통한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강조
 - 또한, 안정화 위원회는 재건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me)을 이행중인 4개 주정부²⁴⁾에 대한 보고서(Sanierungsberichte)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정부들도 신규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기초 유지가 가능하다고 평가

 그리스

1. 예산·결산 등

- 그리스 재무부는 1월~9월 재정집행 결과를 발표(2012.10.23)
 - 2012년도 1/4분기~3/4분기의 재정적자는 127억 2천만유로이며, 동 기간 기초재정수지적자는 20억 7천만유로
 - 이는 목표치인 재정적자 135억 3천만유로와 기초 재정수지적자 28억 8천만유로보다는 낮은 수준
 - 재정수지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6.7% 감소한 수치
 - 순세입은 367억유로(목표치 380억 4천만유로)로 목표치보다 13억 4천만유로 못 미치며, 세출은 494억 2천만유로(515억 7천만유로)로 목표치보다 약 21억 5천만유로가 감소
 - 세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75억 4천만유로(13.2%) 감소
- 그리스 통계청(ELSTAT)은 2011년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9.4% 수준이며, 공공부채는 170.6% 규모임을 발표(2012.10.22)
 - 이는 종전의 GDP 성장률을 -6.9%에서 -7.1%로 하향조정된 데에 기인
 - 지난 4월 발표된 재정적자는 9.1%, 공공부채 비율은 165.3%로 2011년도 재정적자는 예상치에 비해 악화된 수준

22) 2012 독일 안정화위원회 홈페이지(www.stabilitaetsrat.de/DE/), Pressemitteilung zur 6. Sitzung des Stabilitaetsrates am 24. Oktober

23) 제5차 안정화위원회는 『재정동향』 6월 제1호 참고

24) the states of Berlin, Bremen, Saarland and Schleswig-Holstein

- 2013년도 예산안 승인(2012.11.12)
 - 2013년도 그리스 예산안의 주요 목표
 - 2013-2016 중기재정계획의 달성
 - 주요 부문의 구조적 개혁 및 제도적 변화 이행
 - 공평하고 안정적인 조세 체계
 - 민영화(privatization) 프로그램의 가속화
 - 추가적 공공기관의 합병 및 구조조정
 - 그리스 정부는 긴축안으로 인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3년 예산안 초안²⁵⁾의 전망치를 수정하여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15> 참고)
 - 내년도 실업률은 22.8%로 예산안 초안에서 제시한 전망치(24.7%)보다 감소한 수치

<표 16> FY2013 일반정부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2012	2013
I. 재정수입	81,986	79,823
주정부 예산(state budget)	52,393	51,458
조세 수입	47,050	44,307
세외 수입	4,266	4,794
EU 이전(transfers)	4,734	5,172
라이센스 및 권리 청구	32	86
세금 환급액 제외	-3,689	-2,901
일반 정부 예산 (general government entitles budgets)	29,593	28,365
보험료(insurance contribution)	21,206	21,265
Transfer of revenue from EZ Central Banks	699	771
이자 및 배당 수입	268	191
기타 수입	7,420	6,138
II. 재정 지출	96,935	86,162
공공임금(payroll)	17,756	16,038
연금(pensions)	31,141	28,310
이전 지출	13,908	11,192
EU 지출	2,040	1,976
농업 보조금	714	561
기타 지출	12,139	10,214
Guarantees to entities outside the General Government	178	469
군비 프로그램	700	759
투자 비용	11,820	8,989
이자	11,820	8,989
준비금(reserve)	303	1,100
III. 일반정부 재정수지(ESA-95 기준)	-12,882	-9,442
%GDP	-6.6%	-5.2%
IV.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ESA-95 기준)	-2,396	748
%GDP	-1.2%	0.4%

자료: 그리스 재무부, ΚΡΑΤΙΚΟΣ ΠΡΟΪΟΛΟΓΙΣΜΟΣ 2013, Table 3.2&3.4

<표 15> 그리스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연간 증감율, %)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7.1	-6.5	-4.5
투자	-19.6	-15.0	-3.7
수출	0.3	0.0	2.6
수입	-7.3	-10.1	-5.2
CPI	3.1	1.1	-0.8
GDP디플레이터	1.1	-0.5	-1.2
실업률	16.5	22.4	22.8

자료: 그리스 재무부, ΚΡΑΤΙΚΟΣ ΠΡΟΪΟΛΟΓΙΣΜΟΣ 2013, Table 1.3

- FY2013 재정적자(ESA-95기준)는 GDP 대비 5.2%, 기초재정수지(ESA-95기준)는 GDP 대비 0.4%로 설정 (<표 16> 참고)

25) KIPF 격주 『재정동향』 2012년 10월 제2호의 예산안 초안 내용 참조



- (세입) FY2013 세입은 GDP 대비 24.2%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도 세입(23.5%) 비중보다 높은 편
 - 내년도 경상세입은 GDP 대비 26.9% 수준으로 전망되며, 2011년도 경상세입 비중은 26.6%였음
- (세출) FY2013 총 세출은 558억 200만유로로, 2012년(전망치)보다 약 60억 5,300만유로(9.8%) 감소될 전망
 - 내년도 경상 세출은 446억 5천만유로 규모로 2012년(전망치)보다 29억 3,600만유로(6.2%) 감소될 전망
- FY2013 일반정부 GDP 대비 부채비율은 189.1% 수준일 것으로 전망
 - FY2013 예산안 초안에서 제시한 내년도 부채비율(179.3%)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

〈표 17〉 일반 정부 부채(ESA-95 기준)

(단위: 백만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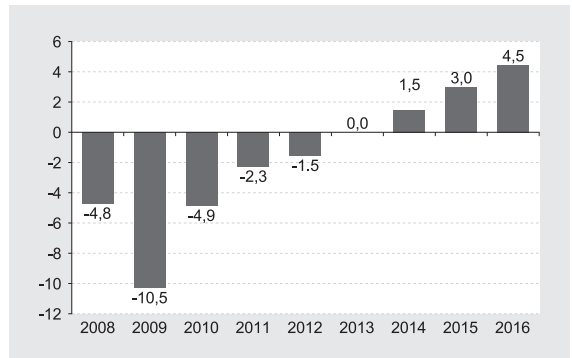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망치	2013 전망치
일반정부부채	263,284	299,682	329,513	355,658	340,600	346,200
GDP 대비 %	112.9	129.7	148.3	170.6	175.6	189.1

자료: 그리스 재무부, ΚΡΑΤΙΚΟΣ ΠΡΟΪΟΓΙΣΜΟΣ 2013, Table 3.1

- 그리스 재무부, 2013-2016년 중기재정계획 발표 (2012.10.31)
 - 중기 재정 전략(MTFS)은 2016년까지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4.5%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13-2014년에 135억유로를 절감(2013년에 93.7억유로)하여 기초재정수지를 매년 1.5%씩 개선시킬 계획

〈그림 8〉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2008-2016)

(단위: GDP 대비 %)



자료: 그리스 재무부, ΜΕΣΟΠΡΟΘΕΣΜΟ ΠΛΑΙΣΙΟ ΔΗΜΟΣΙΟΝΟΜΙΚΗΣ ΣΤΡΑΤΗΓΙΚΗΣ 2013-2016, Figure 3.2

- 중기재정전략의 2013-2014년 절감 계획(135억유로)은 71.9%가 지출부문, 29.1%가 수입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표 18〉 중기재정계획(MTFS) 2013-2016

(단위: 백만유로)

	2013	2014	2015	2016	2013-2016
1. 공공부문 구조조정	385	284	50	0	719
2. 지방정부	50	160	0	0	210
3. 공공임금	1,174	204	75	44	1,497
4. 연금	4,680	563	140	92	5,475
5. 복지 후생	210	71	12	12	307
6. 보건	455	620	38	0	1,113
7. 국방	303	100	4	0	406
8. 교육	86	37	10	0	133
9. 공공시설(utilities)	249	123	97	26	495
10. 조세제도 개편	1,782	2,024	103	-19	3,890
합계	9,374	4,186	529	155	14,244

자료: 그리스 재무부, ΜΕΣΟΠΡΟΘΕΣΜΟ ΠΛΑΙΣΙΟ ΔΗΜΟΣΙΟΝΟΜΙΚΗΣ ΣΤΡΑΤΗΓΙΚΗΣ 2013-2016, Table 3.2

-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도에 191.6%까지 증가되었다가, 2016년에 184.9% 부채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부채비율 감소에 민영화 프로그램과 공공 자산의 이용이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표 19〉 일반 정부 부채 중기 전망

(단위: 백만유로)

	2010	2011	2012	2013 전망치	2014 전망치	2015 전망치	2016 전망치
일반정부 부채	329,513	355,658	340,600	346,200	350,100	357,700	363,400
GDP 대비 %	148.3	170.6	175.6	189.1	191.6	190.5	184.9

자료: 그리스 재무부, ΜΕΣΟΠΡΟΘΕΣΜΟ ΠΛΑΙΣΙΟ ΔΗΜΟΣΙΟΝΟΜΙΚΗΣ ΣΤΡΑΤΗΓΙΚΗΣ 2013-2016, Table 3.7

- 그리스 중기 전략은 크게 네 가지 목표에 중점: (1)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2) 높은 성장률 (3) 지속가능한(sustainable) 재정 안정성 (4) 지속가능한(sustainable) 금융시스템
- (구조적 개혁) 비임금 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s) 절감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의 재조정과 가계소득 보호
- (재정 조정기간 연장)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조정의 기간을 연장하여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
 - ☞ 재정 수입 향상과 지출 감축을 위한 메커니즘 포함(보건, 교육 등 일반정부 영역에서 효율적 세법과 행정 구축)
- (수요 진작) 수요를 즉각적으로 소생시키기 위한 정책의 도입 및 인센티브 창출
 - ☞ EU 기금의 흡수(absorption)
 - ☞ 공공의무(public obligation)를 높이고, 민간영

역에 세금환급(tax refunds)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유럽 투자 은행의 금융 상품(financial instrument)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제공과 은행의 자본 확충(recapitalization)

- (비즈니스 환경) 수출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적 장벽 제거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복구

- (보안 · 사회안전망) 실업자 수당 등 보안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민영화 프로그램)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될 내년도 기대수입은 약 26억유로이며, 민영화 프로그램과 공공 자산의 이용을 통해 국가 차입(borrowing)의 필요성을 줄일 계획

☞ 2016년까지 총 95억유로 규모의 재정 수입을 창출

〈표 20〉 민영화(privatization) 프로그램 2013-2016

(단위: 백만유로)

	2013	2014	2015	2016
재정 수입 예상액	2,586	2,347	1,141	3,441

자료: 그리스 재무부, ΜΕΣΟΠΡΟΘΕΣΜΟ ΠΛΑΙΣΙΟ ΔΗΜΟΣΙΟΝΟΜΙΚΗΣ ΣΤΡΑΤΗΓΙΚΗΣ 2013-2016, Table 3.1

- 그리스 의회, 긴급안 표결 처리(2012.11.7)
 - 135억유로 규모의 긴급안이 승인되었으며, 연금 생활자들의 수령액은 5~15% 감소될 전망
 - 긴급안 주요 정책(중기재정계획 <표 18> 참고)
 - 공공부문 임금 추가 삭감(5~25%)
 - 연금 수령 연령을 64세에서 67세로 연장
 - 연금 수령자에 대한 성탄절 및 휴일 수당 폐지
 - 공무원 해고 요건 완화
 - 연료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 지역 의료보험료 인상 등



아일랜드

1. 재정동향

- 재무부, 마스트리히트 보고서(Maastricht Returns) 발표(2012.10.22)
 - 2011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General government balance)²⁶⁾는 GDP 대비 13.4%
 - 이 적자의 상당 금액은 2011년 7월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²⁷⁾함으로써 발생
 - 2011년 재정적자(Underlying deficit)는 GDP 대비 9.1%로 EU-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기준값인 10.6 %보다 아래에 있음
 - 재정수지(Underlying balance)는 2009-2011년 금융기관에의 자본투입 결과는 반영하지 않으며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더 잘 보여줌
 - 2012년말 일반정부부채(General government debt)에 대한 전망치가 2012년 3월 초과적자시정조치(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평가 때에 비해 3억유로 증가
 - 이것은 2012년 3분기에 국채관리기구(NTMA)가 국채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음을 반영

26) 정부에서 관리하는 특수기금 및 지방정부와 기타 국영기관의 재정수지를 포함
 27) 2011년 7월 아일랜드 금융기관에 65억유로를 투입

〈표 21〉 2008-2012 main results

(단위: 백만유로,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Status	Final	Final	Final	Half-finalised	Planned
일반정부 재정적자 (General government balance)	-13,160	-22,484	-48,297	-21,256	-13,634
일반정부부채 (General government debt)	79,608	104,631	144,227	169,232	191,717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	7.36	13.94	30.86	13.37	8.39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GDP 대비 %)	44.5	64.9	92.2	106.4	118.0

자료: 재무부, Maastricht Returns Information Note(2012.10.22)

〈표 22〉 Ireland' underlying deficit 2008-2012

(단위: 백만유로,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Status	Final	Final	Final	Half-finalised	Planned
재정수지 (Underlying balance)	-13,160	-18,484	-16,722	-14,433	-13,634
GDP 대비 재정적자 (Underlying deficit as % of GDP)	7.36	11.46	10.69	9.08	8.39

자료: 재무부, Maastricht Returns Information Note(2012.10.22)

- 트로이카(IMF, EC, ECB), 아일랜드 제 8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결과 발표(2012.10.25)
 - (재정전망) 정부는 2013년 프로그램의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 대비 7.5% 아래를 충족하기 위해 잘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의 재정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
 - 세입은 2012년 3분까지의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되었으며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복지부문과 건강부문의 과다 지출을 상쇄함

- (경제전망) 2012년 실질 GDP성장률은 0.5%, 2013년 실질 GDP성장률은 1% 이상으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번 평가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양자간 대출로 5억유로, IMF로부터 9억유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sation Mechanism, EFSM)/유럽재정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으로부터 8억 유로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짐
- 공공지출개혁부, 교육부와 협력하여 민관공동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써 4번째 학교 설립 프로그램 시작(2012.11.12)
- 이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전지역에 걸쳐 8개의 새로운 학교를 설립할 것이며 건설 부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 교육부, 유럽투자은행, 아일랜드은행(Bank of Ireland), 국가 개발 금융기구(NDFA), 아일랜드 밤 컨소시엄(PPP Consortium Bam Ireland)이 협력하여 진행
- 학교설립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받기 위해 네덜란드 연기금(Dutch Pension Fund)과 제휴하였으며, 이렇게 유럽 민관공동사업 시장에 연기금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최초이며 혁신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평가받음

이탈리아

1. 재정동향

- 이탈리아 CIPE²⁸⁾, 대규모 프로젝트(libera grandi progetti) 투자계획 발표(2012.10.26.)²⁹⁾
 - 공공의 요구에 따라 인프라의 현대화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함
 - 라벤나 허브 항구(Hub portuale di Ravenna) 60백만 유로 투자, 브레시아 메트로버스(la Metropolitana leggera automatica Metrobus di Brescia) 22.7백만유로 용자, 각 대도시의 철도 서비스와 볼로냐(Bologna) 지역의 트롤리(trolley) 관련 프로젝트에 236.7백만유로를 투자하는 등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함
 - 지진 피해를 입은 롬바르디(Lombardia)와 베네토(Veneto) 지역에 37.4백만유로 투자를 승인함
- 2013년 예산안의 미션 및 프로그램 목록을 발표함(2012.10.31.)³⁰⁾
 - 공공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3년 공공지출은 34개 미션, 프로그램은 174개로 구성함
 - 미션목록은 전년과 동일한 34개로 구성하였으나, 프로그램 단위에서 수정 및 신설된 항목이 있음
 - 지방 관리직의 인사·복리후생 프로그램, 지역 및 주정부의 세금 관할권 및 세금정책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 재무부의 관리·감독 지원 프로그램을

28) 이탈리아 CIPE(Intermisterial Committee for Economic Planning)는 1967년 각 부처 간 경제계획에 대한 조정을 위해 설립되었음.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부 가이드 라인과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재정 자원을 할당하고 국가 주요 공공투자 계획을 승인함.

29) 참고 : 이탈리아 총리실, <http://www.palazzochigi.it/Governo/Informa/Comunicati/dettaglio.asp?d=69581>

30) 이탈리아 재무부



신설함

- EU,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주(Emilia Romagna)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융(6억 7천만달러 규모) 지원(2012.11.11.)³¹⁾
 - 2013년 EU의 예산안 협상의 실패로 이탈리아 로마냐 지역의 구제금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탈리아 총리 몬티와 유럽의회 의장 마르틴 슈츠(Martin Schulz) 등과의 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함

● 일본

1. 예산·결산 등

-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등의 활용’ 각의 결정(2012.10.26)
 - 내각 총리대신 지시³²⁾를 바탕으로 현재 경제 정세에 입각하여 중요성이 높은 시책에 대해 예비비 사용을 각의에서 결정
 - 이번 사용 결정된 예비비는 총액 국비 4,000억엔 초과, 사업비 7,500억엔을 초과하는 규모로 ‘일본재생전략’의 중점 3분야의 긴급 시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재해지로부터 복구·부흥에 필요한 사업 및 대규모 재해지에서 필요한 방재·감재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짐

31) 이탈리아 총리실

32) 2012년 10월 17일 경제대책 책정에 대한 내각 총리대신 지시로, ① ‘일본재생전략’에서의 중점 3분야(그린, 라이프, 농·어업)을 시작으로 하는 시책 실현을 앞당김, ②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조기 복구·부흥 및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방재·감재 대책, ③ 규제개혁 및 민간 금융·출자 촉진책 등 재정조치로 할 수 없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중점으로 함

<표 23>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등의 활용

1. 일본재생전략에서의 중점 3분야(그린, 라이프, 농·어업)을 시작으로 하는 시책 실현의 앞당김	1,051억엔	2.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조기 복구·부흥 및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방재·감재 대책	2,643억엔
(1) 세계를 주도하는 그린·에너지 사회의 창조	411억엔	(1) 재해지의 산업·고용 재건(부흥예비비)	1,203억엔
(2) 농·어업의 6차산업화 추진, 의욕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	520억엔	(2) 학교 안전 대책	200억엔
(3) iPS 세포에 의한 재생 의료를 시작으로 세계 톱 레벨의 연구개발 추진	38억엔	(3) 게릴라성 호우 등의 대응 및 지역 종합적 방재력 향상	1,240억엔
(4) 기타	82억엔		
		합계	3,694억엔(사업비 약 7,200억엔)

주: 1. 1.과 2. (2), (3)은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를 활용
2. 계수는 반올림하므로 끝수에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일본 재무성,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등의 활용’

2. 조세동향

- 일본은 「조세특별조치법」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 를 신설하여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일본 정부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함
 - 이를 위해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과세특례를 통해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CO₂의 배출을 억제하고, 그 세수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화석연료 청정화·효율화 등의 CO₂ 배출 억제 대책에 활용하도록 함

-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는 <표 24>와 같이 석유석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석유석탄세 세율은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됨
 - 또한 과세물건별 석유석탄세는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과 추가된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성됨
 -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는 추가된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의 의미함

<표 24> 지구온난화 대책세 단계적 시행에 따른 석유석탄세 세율

과세물건	현행	2012.10.1~	2014.4.1~	2016.4.1~
원유 · 석유제품	2,040엔/kℓ	2,290엔/kℓ (+250엔/kℓ)	2,540엔/kℓ (+500엔/kℓ)	2,800엔/kℓ (+760엔/kℓ)
LPG · LNG	1,080엔/t	1,340엔/t (+260엔/t)	1,600엔/t (+520엔/t)	1,860엔/t (+780엔/t)
석탄	700엔/t	920엔/t (+220엔/t)	1,140엔/t (+440엔/t)	1,370엔/t (+670엔/t)

주: () 안은 현행 석유석탄세 세율에 추가되는 부분임

- 또한, 특정 분야나 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해 필요한 면세 · 환급 조치를 마련함
 - 현재 석유석탄세 면세 · 환급 대상인 다음 제품은 현행 석유석탄세 부분과 지구온난화 대책세 부문 모두에 대해 면세 · 환급조치가 적용됨
 - 수입 · 국산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
 - 수입특정석탄
 - 오키나와 발전용 특정석탄 등
 - 수입 · 국산 농림어업용 A중유
 - 국산 석유 아스팔트 등
 - 한편, 다음 제품은 현재 석유석탄세 면세 · 환급대상

- 이 아니지만, 지구온난화 대책세 부분에 대해서만 2014년 3월 31일까지 면세 · 환급대상으로 함
 - 가성소다 제조업과 관련하여 가성소다 제조용 전력을 자가 발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입석탄
 - 내항 운송용 선박, 일정한 정기 여객항로용 선박에 사용되는 중유와 경유
 - 철도 사업에 사용되는 경유
 - 국내 정기 운송 사업용 항공기에 적재되는 항공기 연료
 - 「이온교환막법」에 의한 소금 제조와 관련하여 소금 생산용 전력을 자가 발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입석탄
 - 농림어업에 사용되는 경유

3. 재정동향

- 2012년 7~9월기 분기별 GDP 속보(1차 속보치) 발표 (2012.11.12)
 - 이번 공표한 2012년 7~9월기 GDP 속보에서는 실질성장률이 전기 대비 10.9%(연율 기준 13.5%)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 그 요인으로는 세계경기 감속 등에 의한 수출의 큰 폭 감소, 민간소비 약화, 설비투자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표 25〉 분기별 실질성장률(계절조정계열)

(단위: %)

항 목	2011		2012			2012 (연율환산)
	7~9	10~12	1~3	4~6	7~9	7~9
국내총생산(GDP)	2.3	-0.3	1.3	0.1	-0.9	-3.5
국내수요	1.5	0.5	1.1	0.2	-0.2	-0.7
민간수요	2.1	0.7	1.0	-0.1	-0.6	-2.3
공적수요	-0.1	0.1	1.6	0.9	1.1	4.3
재화 · 서비스 순수출 (실질성장률 대비 기여도)	0.8	-0.8	0.1	-0.1	-0.7	

자료: 일본 내각부, 2012년 7~9월기 분기별 GDP 속보(1차 속보치)

포르투갈

1. 예산 · 결산 등

- 포르투갈 정부, 2013년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2012.10.15)³³⁾
 - (총평) 포르투갈 정부의 2013년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적자(총 53억유로 규모) 감축 노력의 80% 이상이 세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
 - (세입) 세입은 총 43억 1,500만유로 규모로 세계개편을 통한 개인소득세(IRS) 약 28억유로, 법인세 2억 1,500만유로 등을 포함함
 - (개인소득세(IRS)) 과세표준구간 단축으로 (8등급 → 5등급) 최고소득세율 48%, 연대세(solidarity tax) 2.5%, 가산세 4% 적용함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25%에서 28%로 인상
 - (승용차통행세) 승용차 통행세 1.3%~ 10% 인상

(배기량 기준)

- (부동산세) 부동산세 인상액을 최고 75유로로 제한한 규정 제거
- (담배세) 담배세를 종전의 50%에서 80%로 인상
- (세출) 세출 감소규모는 총 26억 9,900만유로이며, 이 중 휴가 및 성탄절 상여금 환불액 16억 7,400만 유로가 포함됨
 - (세출 감소규모) 공공행정 분야 9억 2,700만유로, 국영기업 분야 2억 8,900만유로, 사회보장 분야 10억 4,200만유로, 보건 · 의료분야 1억 8,100만 유로, 교육 · 과학분야의 1억 6,200만유로 등을 포함
 - (연금) 월 수령액 1,350~1,800유로는 3.5%, 3,750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10%가 삭감됨
 - (실업보조금) 실업보조금 6% 삭감됨
 - (공무원직 관련 긴축조치) 비정규직 공무원 50% 감원, 병가지급액 10% 삭감, 퇴직연령 연장(65세),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 출근 교통비 지원 거리 기준 변경, 정부 각료의 주택지원비 거주지 기준 변경함

2. 기타

- IMF, 포르투갈 제 5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른 양해각서 개정안 발표 (2012.10.24)³⁴⁾
 - IMF가 발표한 트로이카(IMF, EC, ECB) 제 5차 포르투갈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른 양해각서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수당 지급기간 단축과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삭감 등이 포함됨

33) 참고: O essencial do OE 2013,(State Budget 2013: The Essential)

34) 참고: IMF Completes Fifth Review Under an EFF Arrangement with Portugal, Approves 1.5 Billion Disbursement, Press Release-24 October 2012

- (총평) 지난 18개월간 포르투갈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은 줄었고, 실업률은 기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함
- (고용촉진) 고용촉진을 위한 새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포르투갈이 장기침체에 빠질 위험을 경고함
- (정부지출 부문) 정부지출 부문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인소득세(IRS)에 대한 가산세 4% 부과 조치가 201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힘

- 트로이카(IMF, EC, ECB), 포르투갈 6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시작(2012.11.12.)³⁵⁾
 -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 평가단은 포르투갈의 제 6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시작
 - 트로이카 평가단은 2014년~2015년 포르투갈 정부 지출 구조부문 40억유로의 전반적인 삭감안을 평가할 예정이며, 부문별 세부 삭감안은 2013년 2월에 있을 제7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시 실시할 예정

- 8.9%에서 8.96%로 수정하여 Eurostat에 제출
-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경우 0.48%p 증가하여 GDP의 9.4% 규모로 집계됨
- 지역정부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에서 2011년 재정적자는 GDP의 8.5%에서 8.9%로 조정된 바 있음 (2012 상반기 『재정동향』 참고)
- 2012년 재정적자 규모는 기존 예측치인 GDP의 6.3%를 유지
 -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경우 GDP의 7.3%로 전망
-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 특별공급제도 적용에 따라 2010년 재정적자 규모도 기존에 보고된 GDP 대비 9.3%보다 0.4%p 증가한 9.7%로 조정

2. 기타

- 스페인 농림부, 농업지원을 위해 농업 직불금(direct payment) 조기집행(advance payment) 결정 (2012.10.18)³⁷⁾
 - EU의 농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직불금 조기집행 결정에 따른 조치이며, 스페인 농업보장기금에서 자치 지역에 이전되는 재원은 약 21억유로로 예측됨
- 카탈루냐 제약관련 채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가지원 결정(10.23)에 따라 재무부는 9,900만유로를 조기 지

스페인

1. 예산 · 결산 등

- 일반정부 재정적자 규모 조정 발표 (2012.10.23)³⁶⁾
 - 재무부는 2011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5) 포르투갈 정부 보도자료

36) Press Release—24 October 2012

스페인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Notas%20Prensa/2012/ESTADISTICAS/23-10-12%20Nota%20Eurostat.pdf>

37) 스페인 정부 보도자료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inisterioAgriculturaAlimentacionMedioAmbiente/2012/181012TransferenciasComunidades.htm>



급하기로 결정 (2012.10.25)³⁸⁾

- 25일 제약업계의 파업 결의와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짐
- 카탈루냐 지역정부에 대한 지역유동성기금(Fondo de Liquidez Autonómica; FLA) 공급규모는 약 54.3억유로이며, 이미 약 10.3억유로를 기지급함
 - 10월 말까지 5억유로가 지급될 예정

- 지역유동성기금(FLA)에서 안달루시아와 발렌시아에 각각 21.3억유로, 25.4억유로 공급 승인 (2012.10.25)³⁹⁾
 - 안달루시아와 발렌시아에 2012년 상환분 6.3억유로, 14.8억유로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잔여 채무조달에 사용

- 2012년 9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2분기와 3분기에 집중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GDP의 3.93%까지 감소 (2012.10.30)⁴⁰⁾
 - 위 표준(standardised terms) 재정적자는 행정서비스 이전재원 조기집행과 조세환급분을 고려한 규모
 - 현금주의 기준의 비금융 수입(ingresos)과 비금융 지출(pagos)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7%, 9.1% 증가
 - 1~9월 비금융 수입은 약 1,564억유로, 비금융 지출은 약 1,147억유로로 집계
 - 비금융 수입의 경우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국민계정 기준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 8월(4.77%)보다 감소한 4.39%로 집계
 - 스페인 재무부는 2012년 재정적자 목표(GDP의 6.3%)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

〈표 26〉 2012년 9월 재정현황(National Account, Base 2008)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1	2012
비금융수입(Recursos no financieros)	7.04	7.14
비금융지출(Empleos no financieros, PDE)	10.57	11.53
재정수지(Necesidad (-) o Capacidad (+) de Financiación, PDE)	△3.53	△4.39
기초수지(Saldo Primario)	△2.01	△2.63

자료: 스페인 재무부, Principales indicadores de la actividad económica y financiera del Estado Septiembre 2012

- 탈세방지법(anti-fraud law) 제정 (2012.10.30)⁴¹⁾
 - 특정 거래에 현금사용을 제한하는 등 탈세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10.31자로 발효
 - 신용기관의 예금 등 지급거래를 제외하고, 사업주 또는 전문직이 포함된 거래에 대해 2,500유로 이상의 현금거래 제한
 - 현금거래 제한 위반 시 현금거래액의 25%의 벌금 부과
 - 현금거래 제한 이외에도 해외 계정 및 자본 정보 등록, 징수권 강화 등의 조치를 포함

38) 스페인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Notas%20Prensa/2012/SE%20ADMINTRACIONES%20PUBLICAS/25-10-12%20Generalitat%20pago%20a%20las%20farmacias.pdf>

39) 스페인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Notas%20Prensa/2012/SE%20ADMINTRACIONES%20PUBLICAS/25-10-12%20CDGAE%20_%20FLA.pdf

40) 스페인 재무부 보도자료

41) 스페인 정부 보도자료

 영국

1. 재정동향

- 구직 수당 수급자에 대한 규제 강화(2012.10.22.)⁴²⁾
 - (배경)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직 수당 규정(Jobseeker's Allowance Regulations 2012)을 10월 20일부터 시행함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최대 3개월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현행 제재 기간을 연장해 수급자의 구직 책임을 강화함
 - (내용) 3단계 제재를 통해 구직 노력에 따라 1개월 ~3년간 수당 지급을 중단함
 - (low level) 직업안내소 요청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초 위반시 1개월,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간 중단
 - (intermediate level)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최초 실패시 1개월, 2회 이상 계속될 경우 3개월의 수급 권리를 박탈함
 - (highest level) 일자리 제공을 거절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중요 구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초에 3개월, 두 번째에는 6개월, 그 이상은 3년에 걸쳐 제재를 받게 됨
-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분기 대비 1.0% 증가 (2012.10.25.)⁴³⁾

- 2012년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0% 증가하여 2007년 3분기 이래로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함

〈표 27〉 분기별 GDP 변화

(단위: 계절 조정, %)

	GDP Index (2009=100)	GDP	전분기 대비 변화율(%)		
			생산	건설	서비스
2011 Q1	102.5	0.5	-0.1	0.0	0.6
Q2	102.5	0.1	-1.1	1.6	0.3
Q3	103.1	0.5	-0.2	-0.5	0.8
Q4	102.7	-0.4	-1.4	0.2	-0.1
2012 Q1	102.4	-0.3	-0.2	-5.9	0.2
Q2	102.0	-0.4	-0.7	-3.0	-0.1
Q3	103.0	1.0	1.1	-2.5	1.3

자료: 영국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Preliminary Estimate, Q3 2012", 2012.10.25.

- 주로 2분기 대비 반등효과와 런던 올림픽 특수에 의한 상승으로 분석됨
 - (반등 효과) 여왕즉위 60주년 기념일(The Queen's Diamond Jubilee)로 근로일수가 줄어들면서 하락했던 2분기 GDP에 대한 반등 효과
 - (런던 올림픽 요인) 숙박, 고용, 약 5억 8천만파운드의 티켓 수입 등이 서비스 분야 성장에 영향을 미침
- 감사 완료된 FY2010-11 통합결산보고서⁴⁴⁾(Audited

42) 참고: 노동연금부 보도자료, 2012.10.22. (<http://www.dwp.gov.uk/newsroom/press-releases/2012/oct-2012/dwp108-12.shtml>)

43) 참고: 통계청, 2012.10.25. (<http://www.ons.gov.uk/ons/guide-method/method-quality/specific/economy/national-accounts/articles/2011-present/statistical-special-events-in-q3-2012---the-olympics---paralympics-/special-events-in-q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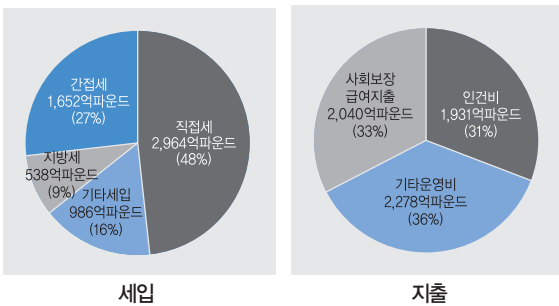
44) WGA는 정부의 통합결산보고서로 1,500여개의 중앙정부기관, 권한이양정부, 의료서비스, 지방정부, 공기업들을 포괄함. 7월에 감사 이전의 요약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음(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7월 제2호 참고)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0-2011) 발표 (2012.10.31.)⁴⁵⁾

- FY2010-11의 공공부문 총세입은 전년(5,834억파운드) 대비 증가한 6,140억파운드, 총지출은 전년(6,672억파운드) 대비 감소한 6,249억파운드임
 - 순적자(net deficit)는 GDP 대비 6.4%인 944억파운드로 전년(1,627억파운드) 대비 감소

[그림 9] FY2010-11 공공부문 세입 및 지출 구성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11, chart3.1

- 공공부문 순부채(net liabilities)는 1조 1,934억파운드로 GDP의 80.5%임
 - (자산) 7,100억파운드의 건물, 인프라 등을 비롯해 총 1조 2,277억파운드 규모
 - (부채) 공공서비스연금 순부채 9,595억파운드 등 총 2조 4,210억파운드

■ 인프라투자 법안(Infrastructure Bill)에 대한 여왕 재가(Royal Assent) 완료(2012.10.31.)⁴⁶⁾

- (배경)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18일에 정부 보증제도(UK Guarantees scheme)를 도입하여 인프라 투자를 강화함
- (내용)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최대 400억파운드, 신규주택에 최대 100억파운드의 투자를 보증함
 - 인프라투자법은 재무부에 보증 및 기타 대출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

■ 재무부와 영국중앙은행, 양적완화제도의 여유자금관리 운영방식 변경에 합의(2012.11.9.)⁴⁷⁾

- 정부는 영국중앙은행과 양적완화제도의 여유자금을 재무부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함
 - (기존 방식) 2009년 이후 양적완화를 시행해 온 영국중앙은행은 APF(Asset Purchase Facility: 자산매입제도)를 통한 국채 매입·보유에 수반되는 재무부로부터의 정기적인 이자지급으로 현금 잔고 누적액이 증가함
- (목적) APF의 대규모 자금 보유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 제거 및 투명성 제고
 - 미국, 일본의 경우 주요 중앙은행의 여유자금은 정부에 배분되고 있음
- (이전 규모) 자금관리운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유지를 위해 약 350억파운드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의 이전은⁴⁸⁾ '12-'13년과 '13-'14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 '12-'13년에 APF에 의해 벌어들인 약 110억파운드의 순이자수입은 '12-'13년 동안 재무부로 이전 될 것임

45) 영국 재무부, "Audited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0-11 published", 보도자료, 2012.10.31

46) 영국 재무부, "Infrastructure Bill gets Royal Assent", 보도자료, 2012.10.31.

47) 영국 재무부, "Changes to cash management operations", 보도자료, 2012.11.9.

48) APF의 국채 매입액이 3,750억파운드 수준에 머무를 경우, '12-'13년 말까지 약 350억파운드의 여유자금이 APF에 누적될 것으로 전망됨

- '11-'12년말까지 APF에 누적된 여유자금 238억 파운드는 '13-'14년 동안 감축함
- '13-14년부터 지속되는 여유자금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이전
- (영향) 자금 이전은 중앙정부 순 현금소요에 영향을 미치며 통계청(ONS)은 자금흐름의 분류와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것임
 - 그러나 통화정책위원회(MPC)의 통화정책 수립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미국

1. 조세동향

가. 미국과 영국 간의 FATCA 협약 체결

- 2012년 9월 12일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국가 간 세금 원천징수 의무와 세무정보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대한 상호협약에 서명함
- 본 협약은 승인을 위해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협의 후에 당해연도 말경에 법 초안이 공포될 예정임
- FATCA란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으로 하여금 미국 납세자 또는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해외회사(foreign entities)의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임
 - 본 법은 해외 계좌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3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번 협약으로 영국 금융기관은 조세회피방지라는 목

표의 달성에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FATCA 의무 준수에 있어서 관련된 법적 장애물(legal barriers)에 대해서도 제고하게 될 것임

- 또한 금융기관 이외에 정부산하기관(Governmental Organizations), 퇴직연금, 비영리법인 등의 영국 기관도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이번 영국과의 협약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5개국 이 2012년 2월부터 공동으로 논의하여 2012년 7월 26일에 확정되었던 정부간 협약 모델(Model Intergovernmental Agreement)에 근거함
- 협약 모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 금융기관의 특정 계좌정보를 상호 각국의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함
 - 미국은 국가 간 동등한 수준의 상호 자동정보교환 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행규칙(regulations)이나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이를 실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약속함
 - 해외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임
- 미국 재무성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FATCA의 실행과 관련하여 정부간 협약 모델 협상국 4개국 외에 OECD 회원국 및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과도 계속하여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나. 해외 자선단체에 대한 성실법인 지정 방법 변경

- 2012년 9월 21일 재무성과 국세청은 해외 자선단체(foreign charitable organization)에 대한 '성실법인 지정(making a good faith determination)' 방법에



대한 예고 시행규칙(Proposed Regulations, REG-134974-12)을 발표함

- 이는 해외 단체가 자선단체에 해당하여, 성실법인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 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해외 단체의 성실법인 지정 방식에 관하여 새로운 시행규칙에서는 성실법인 지정의 근거로, 다양한 계층의 세무 실무자(tax practitioners)의 서면 의견서(written advice)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

- 기존의 성실법인 지정은 주로 해외 단체의 자술서(qualifying affidavit), 기부자나 수증자 측의 법률 자문위원(counsel)의 의견 등에 근거하였음
- 참고로 해외 단체에 대한 성실법인 지정여부에 따라 이 단체에 기부금(grants)을 지출하는 사설 재단(private foundations)의 소비세(Excises Taxes) 부담 유무가 결정됨

■ 다양한 계층의 세무 실무자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록된 대리인(enrolled agent) 등이 있음

- 그러나 적절한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외국 법률 자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 근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실법인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적인 세무 의견을 보다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함

■ 또한 새로운 시행규칙은 성실법인 지정에 관하여 세무 실무자의 의견서를 신뢰한 사설 재단에 대하여, 면책 규정⁴⁹⁾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면책 규정에서는, 납세자가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cause)가 있음을 증명하고 세금 과소납부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면 세금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본 예고 시행규칙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설 재단의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됨

다. 신시장 세액공제 관련 세부규칙 제정

■ 2012년 9월 26일 재무성과 국세청은 저소득 지역사회(Low income communities)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非)부동산 투자(Investments in non-real estate)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신시장 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에 대한 최종 시행규칙(Final Regulations, T.D. 9600)을 발표함

- 이는 2011년 7월 발표했던 예고 시행규칙(Proposed Regulations)의 내용을 기초로 확정된 것임
- 본 시행규칙은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 CDE)⁵⁰⁾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시장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사회 사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재개발에 대한 세금감면법(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 of 2000)’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 중 한 부분으로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45D에 신시장 세액공제 조항을 규정하여 시행해

49) IRC Sec.6664

50)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가능함

오고 있음

- 관련 내국세법에 따르면, 적격한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 CDE)에 적격지분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 QEI)⁵¹⁾를 하는 개인에게 법인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지분투자는 지역개발회사(CDE)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체에의 자금융통, 지역사회 편의시설(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소득 지역⁵²⁾주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옴
- 지역개발회사(CDE)에 투자한 적격지분투자(QEI)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최초 투자일로부터 7년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
 - 공제율은 처음 3년간은 5%, 다음 4년간은 6%로서 총 대상기간에 걸쳐 39%를 공제받음
 - 만약 지역개발회사(CDE)가 청산하거나 자금이 적격한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에 쓰이지 않는 경우,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등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함

-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예고 시행규칙에서의 다음의 사항을 채택하였음
 - 비(非)부동산 사업분야의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를 수행하는 지역개발회사(CDE)의 투자 수익금을 특수관계 없는 인증된 지역개발금융기관(Certified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에 재투자하는 것을 허용함

- 이러한 인증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에의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기간(7년) 내내 적격한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로 인정됨
-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함
 - 재무성 장관이 적격 지역개발회사(Qualified CDE)를 국세청 게시판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게 함
 - 하나 이상의 지역개발회사(CDE)에 의해서도 적격한 능동적 저소득 지역사회 사업(Active Low-Income Community Businesses)으로서 비부동산 분야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 적격지분투자(QEI)로서의 자금을 공급받은 지역개발회사(CDE)는 그 투자금이 적격한 비부동산 사업분야에 쓰여졌음이 직접적으로 추적된다면 투자금을 또다른 지역개발회사(CDE)에 투자할 수 있음
- 이번에 확정된 최종 시행규칙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함

2. 재정동향

- CBO, 월별 예산보고서(Monthly Budget Review)에서 FY2012 결산발표⁵³⁾(2012.11.7) → 이에 앞서, 지난 10월 5일에 결산 추정치 발표
 - 미 연방정부의 FY2012 재정적자 총 1조 1,000억달

51) 투자자에 의해 현금 교환방식으로 최초 주식 발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현금의 거의 모든(85% 이상) 부분이 지역개발회사에 의해 적격한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에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개발회사는 적격지분투자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보관하여야 함

52) 빈곤율이 최소 20% 이상인 지역,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중간소득가게 기준으로 전국 평균 중간소득가게 수준의 80%에 미달하는 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이 여기에 속함

53) 『재정동향』, 2012년 10월 제2호



리로 집계, 이로써 4년 연속으로 1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기록

〈표 28〉 재정수지 추이(FY2007~FY2012)

(단위: 십억달러, %)

FY(회계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입	2,568	2,524	2,105	2,163	2,302	2,449
세출	2,729	2,983	3,518	3,456	3,599	3,538
재정수지	-161	-459	-1,413	-1,293	-1,297	-1,089
GDP 대비 비중	1.2	3.2	10.1	9.0	8.7	7.0

- (세입) 총 2.5조달러, 전년(FY) 대비 6% 증가 및 3년 연속으로 증가(표 17) 참고
- (세출) 총 3.5조달러, 전년(FY) 대비 1.7% 감소
 - 2008 금융위기 후인 FY2009와 비교할 시 200억 달러 정도 차이로 약간 높은 수치

〈표 29〉 FY2012 주요 세입 결산

(단위: 십억달러, %)

	(Actual)		(추정)	(Actual)	증가율
FY(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2	('11→'12)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899	1,091	1,129	1,132	3.7
사회보장보험 (Social Insurance)	191	819	850	845	3.2
법인세 (Corporate Income)	865	181	242	242	33.8
기타(Other)	208	211	229	229	8.6
합 계	2,163	2,302	2,450	2,449	6.4

〈표 30〉 FY2012 주요 세출 결산

(단위: 십억달러, %)

	(Actual)		(추정)	(Actual)	증가율
FY(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2	('11→'12)
국방 (Defense-Military)	667	678	651	651	-4.0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696	720	762	762	6.0
메디케어 (Medicare)	450	483	469	469	-2.9
메디케이드 (Medicaid)	273	275	250	251	-8.9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s)	162	126	96	96	-24.0
기타(Other Activities)	1,048	1,089	1,030	1,022	-5.7
소계(Subtotal)	3,295	3,371	3,258	3,251	-3.4
순 공공채무 (Net Interest on the Public Debt)	228	266	258	258	-3.0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TARP)	-108	-38	24	24	n.m ¹⁾
합 계	3,456	3,599	3,540	3,538	-1.7

주: 1) n.m=not meaningful

- CBO, 재정적자 감축 향후 전망을 다룬 「Choices for Deficit Reduction」 보고서 발표(2012.11.8)
 - 8월 기준선 전망 VS 재정절벽 회피 시나리오
 -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현재 비정부부문 소유의 국가채무는 GDP의 70%에 달하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단, 기준선 전망에서 FY2022에는 GDP 대비 5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현재 법이 지속될 경우, FY2012의 1.1조달러의 재정적자가 FY2022에는 2천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절벽 회피 시나리오⁵⁴) 성사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적자 평균증가율은 5%(현재 1.1%),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9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

수 있는 세금 및 지출의 정책적 여력의 제한
-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함께 투자자들의 회피현상으로 인해 적정이자율(affordable interest rates)에서의 국가대출이 어려워짐

〈표 31〉 FY2012~FY2022 재정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Actual	Estimat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BO 8월 기준선 전망											
수입	2,449	2,913	3,208	3,541	3,817	4,083	4,328	4,551	4,790	5,039	5,295
지출	3,538	3,554	3,595	3,754	4,003	4,206	4,407	4,681	4,932	5,183	5,509
적자(-)	1,089	641	387	213	186	123	79	130	142	144	213
공공채무	11,280	12,064	12,545	12,861	13,144	13,371	13,536	13,746	13,964	14,181	14,464
Alternative Fiscal Scenario (= 재정절벽 회피 시나리오)											
수입	2,449	2,583	2,825	3,111	3,361	3,596	3,808	3,996	4,196	4,399	4,608
지출	3,538	3,621	3,748	3,921	4,193	4,430	4,678	4,999	5,298	5,599	5,970
적자(-)	1,089	1,037	924	810	832	833	870	1,003	1,102	1,220	1,362
공공채무	11,280	12,460	13,478	14,391	15,321	16,258	17,215	18,298	19,477	20,479	22,181

- (재정절벽 발생할 경우⁵⁵) FY2013 기간의 실질경제성장률이 0.5% 하락하며, 마지막 분기의 실업률은 9.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도에는 5.5%로 감소 예상
- 국가채무 지속 상승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 (consequences)
 - 이자지출의 상승
 - 국가저축(national saving)의 감소
 - 경제 침체기, 자연재해 및 금융위기 발생 시 취약

네덜란드

- 네덜란드 정부는 2012년 9월 18일에 과소자본세제의 폐지 등이 포함된 2013년 세법개정안(2013 tax plan)을 하원에 제출함
 - 현재 의회 심의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법인세

-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제도를 폐지함
 - 현행 제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폐지 이유: 지분투자와 관련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제도가 됨
- 「회사법의 간소화를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결권 없는 지분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연결과세제도 적용요건을 개정함
 - 현행 요건: 지배회사는 피지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개정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개정됨
 - 첫째, 피지배회사 납입자본금의 9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54) ① 만료되는 세금감면의 무기한 연기, ② 대체 최저세액(ATM: Alternative Minimum Tax) 제도의 2011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적용, ③ Medicare 지급비율 현 수준으로 동결, ④ 예산통제법에 따른 자동지출삭감 시행(automatic spending reductions)이 보류될 것을 전제

55) CBO, "Economic Effects of Policies Contributing to Fiscal Tightening in 2013," 2012.11.8.



- 둘째, 피지배회사의 의결권(voting right)의 9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셋째, 피지배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의 95% 이상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여야 함
- 개정 이유: 「회사법의 간소화를 위한 법률」(Act for simplification and flexibilization of private company law)의 개정으로 인해 의결권 없는 지분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연결과세제도 적용요건인 지분율의 요건을 개정함

나. 소득세

- 모기지대출(mortgage loan)에 대한 이자비용의 공제 요건을 강화함
 - 현행: 모기지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기간 종료 시 전액상환 요건이 없어도 그 이자비용의 공제가 가능함
 - 개정 요건: 모기지대출 계약에 30년의 거주기간 후 전액상환 요건이 포함되어야만 그 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이 공제될 수 있음
 - 개정 이유: 상환되지 않는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기 위함

정책흐름



- 韓·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 최근 일본 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 12년 3/4분기 가계소득 6.3% 증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
-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관세감면 품목 조정
- 공정과세 구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韓 · 아프리카 경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 본 자료는 2012년 11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韓 · 아프리카 경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추진 배경

-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2000년대 들어 분쟁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 중

* 경제성장률(01~10평균, %): (미국)1.6 (EU)1.6 (중남미)3.4 (아프리카)5.4

** 2000년대 들어 5~6%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전 세계 10개국 중 6개국이 아프리카에 속해 있음

- 美 · EU 등 기존 시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마지막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강화가 절실

*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원 확보 및 인프라 투자를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美 · EU · 日 등도 오랜 유대관계 등을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 5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10.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을 마련하여

- 상호교류 및 ODA 확대, 에너지 · 자원 · 플랜트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 GCF 유치과정에서 아프리카국들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던바, 그간의 對 아프리카 협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판단

- 3개 부처 주관 '한 · 아프리카 주간' ('12. 10. 15~18) 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아프리카의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 총리실(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 중심으로 KOAFEC(재정부), 한 · 阿 포럼(외교부), 한 · 아 산업협력포럼(지경부) 등 3개 행사를 연계하여 서울에서 개최

-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참고 1 아프리카 경제의 특징과 과제

◇ 아프리카는 2000년대 들어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이질적인 경제구조, 낮은 농업생산성, 인프라 · 인적 자본 부족 등이 성장의 제약요인

- ① (이질적인 경제구조)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간 격차가 크며 인프라 부족, 분쟁 등으로 역내 경제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

* 1인당 GNI('10년, 국가 수): (6천불 이상) 6, (1천~6천불) 18, (1천불 이하) 30

- 5개국(남아공,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리비아)이 아프리카 GDP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력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 북아프리카 국가와 남아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최빈국(54개국 중 29개국, 53%)에 해당

•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에 원유 매장량의 약 84%가 집중되어 있는 등 자원의 양극화 현상도 심함

*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말라위 등 최빈국 중 상당수는 자원 빈국

• 이질적인 경제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등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였으나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

② (거버넌스) 일부 지역에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 AU)의 역할 증대 등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이 확산

* 말리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쿠데타, 폭동 등이 발생하며 정정불안이 지속

• 모잠비크, 앙골라 등은 내전종식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 수단-남수단 간 석유 분쟁도 양국간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안정화되는 추세

* 세계은행은 최빈국이었던 수단과 남수단을 중저소득국으로 재분류(12)

③ (산업 및 교역구조) 원유, 광물, 농산물 등 1차 산품 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

* '10년 아프리카의 1차 상품 수출비중 69%

• 지역적으로 근접한 유럽에 원자재 등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종속적 교역형태

* 아프리카의 對지역별 교역 비중(%), '11년: (유럽) 41.2, (아시아) 24.0, (북미) 9.1, (중남미) 3.2, (중동) 5.7

• 제조업 비중이 낮고, 일부 제조업도 농산물 가공 등 단순가공업 중심이며 농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농업비중(부가가치기준 % , '11년): (아프리카) 17, (중남미) 6

• 전체 인구 중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농업 생산성이 낮고 관개시설 등이 열악하여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식량난에 시달리는 상황('70 후반 이후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전환)

• 전력, 도로 등 열악한 인프라 수준이 외국인투자 도입, 자원개발, 산업 발전 등에 장애로 작용

③ (인적자원) 상대적으로 젊고 풍부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형성이 크게 미흡

• 아프리카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5년에는 중국(9.1억명), '40년에는 인도(11.1억명)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UN Population Prospects 2010)

* 아프리카 생산가능인구 전망: ('35) 9.3억명 → ('40) 11.6억명

• 다만, 높은 문맹률(사하라 이남의 경우 34%), 열악한 초등교육 이수율(사하라 이남의 경우 62%), 낮은 고등교육 진학률 등으로 인적자원 개발 수준이 저조

참고 2 한-아프리카 경험 현황

◇ 교역 · 투자 · 자원개발 · 플랜트 수주 등 경험이 최근 점차 확대 추세이기는 하나 절대규모는 미미

■ (교역)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阿 교역규모는 44%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체 교역증가율(48%)보다 낮은 수준

* 교역규모(억불) : ('07) 174 → ('09) 175 → ('11) 251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 ('07년) 2 → ('09) 4

• '11년 무역규모는 251억불로 총무역액(10,796억불)의 2.3% 수준이며 무역수지는 113억불의 흑자 시현

* 한-아주요국 무역수지('11년, 억불) : (라이베리아) 74 (남아공) △9 (이집트) 10 (알제리) 10 (리비아) △1 (나이지리아) 17 (적도기니) △5 (모로코) 2 (잠비아) △5

- 우리나라는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등을 많이 수출하고 원유, 금, 철광 등 자원을 주로 수입
- 전체 교역액의 80%가 5개국*에 편중되어 있고, 자원 부국인 중고소득국(52.5%)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저소득국(56.6%)에 선박,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보완적 교역관계

* 주요 수출국: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라이베리아
 주요 수입국: 남아공, 이집트, 적도기니, 나이지리아, 잠비아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교역량	116	157	174	199	175	219	251
수출(a)	81	100	113	133	130	156	182
수입(b)	35	57	61	66	45	63	69
무역수지(a-b)	46	42	53	67	85	93	113

- **(투자)** 對阿 해외직접투자는 에너지·광물 등을 중심(59%)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 해외투자에서 아프리카 비중은 1.4%(11)에 불과

* 對아프리카 투자규모(억불) : ('07) 1.7 → ('09) 5.8 → ('11) 3.6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관련 투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對아프리카 해외투자 중 79.6% 차지, 광물자원공사)

- **(자원개발)** 석유·가스 개발*은 대부분 단순 지분 참여 수준이며, 정치적 리스크, 높은 투자위험 등으로 개발잠재력에 비해 우리 기업 진출이 적은 상황

* 석유·가스 개발('12. 5월) : 7개국 11개 사업(생산 3, 탐사 8)

- 중국, 미국 등에 비교할 때 우리의 아프리카 자원 개발 참여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

* 중국의 아프리카 원유의존도가 빠르게 상승('95년: 11% → '09년: 30%) 미국은 '05년 이후 중동(16.6%)보다 아프리카

(19.2%)에서 더 많은 원유 수입

- 최근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Dana社* 인수('11. 1월, 지분 100%)로 아프리카 석유·가스 개발 분야 진출확대 기반 마련

* 북해(영국, 노르웨이 등)와 아프리카(이집트, 모로코 등)에 석유 탐사개발 자산을 보유한 석유회사

- **(건설·플랜트)** 자원부국, 북아프리카 등에 수주액이 집중되고 있으며 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사하라 이남 최빈국지역 비중은 낮은 수준

• '05~'11년간 對阿 플랜트 수주액은 전체 수주액의 9.9%에 해당하는 총 302억불이며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5개에 총 268억불, 80%)에 집중

- 아프리카 해외건설 수주규모*는 '06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6개국에 60% 수준 이상 집중

* 對阿 해외건설 수주 규모(억불): ('06) 19 → ('08) 48 → ('10) 60 → ('11) 29('11년은 북아프리카 정정 불안 등으로 일시 감소)

II. 그간의 한·아프리카 경협 추진 현황 및 평가

2010. 5월 한-아프리카 경협 활성화 방안의 주요골자

- ◇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①연구기능 강화, ②네트워크 구축, ③제도적 협력기반 강화, ④개발원조 확대, ⑤금융지원 확대
- ◇ **【5대 협력분야】** ①에너지/자원, ②IT협력, ③건설/인프라, ④농림수산업, ⑤녹색성장

1 그간의 주요 추진 현황

1. 경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연구기능 강화)** KIEP 내 '세계지역연구센터'를 '신흥지역 연구센터'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아프리카 관계기관과의 공동 연구 확대*
 - * 예경연은 DR콩고의 지질광물연구센터(CRGM),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에티오피아 경제개발연구소(EDRI)와 공동연구 등을 위한 MOU 체결
- **(네트워크 구축)** 정상급 외교 등 정부 차원의 고위급 채널과 민간 차원의 채널 구축을 확대
 - **(고위급 외교)** 최근 3년간 대통령('11. 7월) 및 총리('12. 7월) 아프리카 순방 등으로 정상급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
 - * 아프리카 정상급 방한도 15회('10-'12년)
 - **(민간 채널)** 전경련(이집트, 모로코, 에티오피아), 무역협회(남아공, 알제리) 등을 중심으로 협력채널 구축
- **(개발협력)** ODA 지원규모를 확대('08년 2.5억불 → '11년 4.5억불, 승인 기준)하고, 아프리카의 8개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 수립 중
 - * (지원료) 가나, 에티오피아, DR콩고('13상반기 완료 예정) 우간다, 모잠비크, 르완다, 나이지리아, 카메룬
- **(EDCF 및 KSP)** 10~12년 중 전력·상하수도·ICT·도로·보건·관개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10개국, 총 20건, 8.8억불)하고, 경제개발계획 수립, ICT 등 정책컨설팅 지원(10개국, 40여건)
- **(KOICA)** 교육 및 직업훈련, 공공행정(ICT), 농림수산, 보건 및 산업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10년~12년간 총 28백만불 지원
 - * 아프리카 연수생 4천명 초청 및 봉사단 1천5백명 파견
- **(AfDB 신탁기금)** 신탁기금(약 3,200만불 既출연)

을 통해 인력개발, 새마을운동 등 관련 사업을 실시

- **(금융지원)**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12년간 아프리카 진출기업에 대해 총 3.4조원 지원(보증 4조원, 보험 2.2조원 별도)
 - * 대출 지원(조원) : ('09) 1.0 → ('10) 1.3 → ('11) 1.3 → ('12.10) 0.8
 - * PF지원(억불): ('10) 8 (이집트 ERC 정유설비 사업) ('12) 3.3 (모로코 Jorf Lasfer 석탄화력발전 사업)
 - * '10-12년간 우리 기업 수출거래(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등)에 전대금융 2,400만불 지원

2. 분야별 경제 협력

- **(에너지·자원)** 모로코, 알제리 등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를 확대하고,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운용*
 - * 제4~5차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11. '12. 10월/장관, 아프리카 산업자원포럼(3차: '11. 1·11월, '12. 6월), 제8차 한-알제리 경험 T/F 개최('11. '12. 5월) 등
- 남아공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 모잠비크 초대형 가스전 발견에 따른 'LNG 도입 연관분야 협력 MOU' 체결('10. 11월) 등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등 협력사업 추진
- **(IT)** 양자·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한-남아공 국제IT협력센터 운영('08. 10 ~ '10. 12)을 통해 기술·인력 교류, 정보화 컨설팅 등을 추진
 - * 양자간 MOU 체결 현황 : 가나('10년), 이집트('10. 6월), 앙골라('10. 6월), 르완다('11. 5월) / 다자 협력채널: 방송통신장관회의 개최('10년 이후)
- 모잠비크(정부행정망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코트디부아르(교육행정시스템 평가 및 타당성조사) 등 컨설팅 지원 및 우리 IT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 추진

- **(건설·인프라)** 리비아·가나 등 10개국*에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주요 발주국 중심으로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리비아, 가나, 탄자니아, 카메룬, 적도기니, DR콩고,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수단

** 가나투자청장(11. 5월), 알제리 국토개발부장관(11. 10월) 및 수자원부장관(12. 11월), 리비아 외교국제협력부장관(12. 6) 등

-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총 4천억원),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확대

- **(녹색성장)** 탄자니아(10년), 알제리(11년), 모잠비크(11년)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환경사업 진출을 지원*

* 알제리 마스터플랜을 통해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복원사업 참여(5억불 규모)

- 매년 1~2회 민-관 합동 환경시장 개척단* 파견 및 아프리카 국가 대상 환경협력위원회**를 통한 사업 발굴 추진

* '12년: 아프리카 2개국(가나, 남아공)과 북아프리카 2개국(알제리, 모로코) 파견

** '12년 현재 알제리, 이집트와 상하수도협력위원회 운영 중

- **(농업)** '한-아프리카 농업기술협력 협의체(KAFACI)'를 운영하고(10년 설립, 18개국 참여),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확대('09 : 1개국 → '12 : 4) 등 농업분야 개발경험 공유를 추진

- DR콩고(6,000ha), 우간다(1,100ha), 마다가스카르(130만ha) 등에서 민간기업 차원의 농장개발 추진 중

* 마다가스카르에서 시범영농 114ha 추진 및 옥수수 50톤 시범 반입('12)

2 평가 및 시사점

【경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ODA의 양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발경험공유와 유·무상 ODA간 연계를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아프리카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ODA 추진 필요

-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채널 강화와 함께, 문화적 측면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

* 아프리카는 한류의 미개척지이며 한국문화원 등 제도적 여건도 미비

- 아프리카 전체 국가(54개국)와의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더딘 상황

【분야별 경제협력】

- 에너지·자원개발, 건설·플랜트 분야의 시장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할 프로젝트 파이낸싱·개발금융·시장개척자금 등 금융 지원이 크게 부족

* '10년 안건에 포함된 10건의 주요 프로젝트 중 금융지원 부족으로 4건이 중단·취소

- IT분야는 사업발굴을 위해 주로 타당성조사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후속사업 발굴이 미흡

- 환경 분야 및 농업 분야는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며, 구체적인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한 민간 차원의 경험 확대 노력 강화 필요

참고 '한-아프리카 협력주간' 성과

- '12. 10. 15~18일 기간 중 “Sharing Today, Shinning Tomorrow” 라는 슬로건 하에 「한-아프리카 협력 주간」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
- KOAFEC(재정부), 산업협력 포럼(지정부), ‘한·아프리카 포럼(외교부) 3개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아프리카와 한국 간 포괄적 협력채널의 기틀 마련
- * 아프리카 50여개국 산업·경제·외교 분야 고위인사 300여명이 참석

【행사별 주요 성과】

- ① **(지정부)** 협력주간 첫 날(10.15일) 열린 제 5차 한·아 산업협력포럼은 모잠비크 등 10개국 에너지·플랜트 관련 장·차관, 기업 CEO 등 300여명 참석, 유망프로젝트 정보를 획득하고 네트워크 구축
- ② **(재정부)** 제4차 한·아 경제협력회의(KOAFEC, 15~17일)는 35개국 장·차관, AfDB 총재 등이 참석, “포용적 성장”에 대한 KDI·AfDB 공동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경협 비전을 담은 「2012 KOAFEC 공동선언문」, 「액션플랜 2013/14」 채택
- 중점협력 분야인 인프라/자원, IT, 인적자원, 농촌개발, 녹색성장, 경제발전경험 공유에 대하여 KOAFEC 신탁기금, EDCF, KSP를 포괄하여 5.9억불 규모의 37개 협력 사업 추진 합의
- ③ **(외교부)** 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10.17일)은 18개국 아프리카 외교 장·차관 및 AU 대표단 약 14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협력, 통상·투자, 평화·안보에서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 아프리카 MDG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확대와, AU 중점사업 협력방안을 모색한 「서울선언 2012」, 「행동계획 2013/15」 채택

Ⅲ.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과제

중장기 비전

① 2020년 한-아프리카 무역 800억불 달성

* 한-아프리카간 무역규모를 '11년 251억불(전체 무역규모 1.1조불 대비 2.3%)에서 '20년 약 800억불로 전체(약 2조불 목표) 대비 4.0% 수준으로 확대 이를 위해 '韓-阿'간 무역규모 연평균 14%(전체 무역규모는 8%) 증가 필요

② '아프리카의 제2의 한국' 발굴

*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한 ODA를 통해 아프리카의 성공적 개발 모델 발굴

추진 전략

① (우리의 강점인 개발경험을 활용) 한정된 자금지원을 감안하여 우리의 강점인 개발경험 등을 적극 활용

② (선택과 집중으로 경협역량 극대화) 경협 유망국가와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

③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신뢰 구축)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형성

추진 과제

① (경제협력 기반 조성) 개발협력, 교류확대, 금융지원, 제도적 기반 등 마련 추진

② (분야별 협력 강화)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녹색성장, 교육과학기술, 농림수산업 등 분야별 협력 강화 추진

참고 「한-아프리카 경제협현 및 향후 발전방안」 추진체계

중장기 비전

- ◆ 2020년 한-아프리카 800억불 달성
- ◆ 아프리카의 “제2의 한국” 발굴

추진전략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경제협력	선택과 집중으로 경험 역량 극대화	민간과 정부가 효과적 역할 분담
-------------------	--------------------	-------------------

추진과제

주요 분야별 협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자원 협력 2. 건설/인프라 협력 3. 녹색성장 협력 4. 교육과학기술 협력 5. 농림수산식품 협력
기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지원(개발협력) 2. 상호교류 확대 및 확산 3. 민간지출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4. 제도적 협력기반 강화

1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1-1. 아프리카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개발협력)

EDCF 및 KSP

- **(EDCF)** 對 아프리카 EDCF 연간 지원규모 확대 ('12년 2억불 → '15년 3억불 수준, 승인기준)를 추진하고, 인프라, 농업,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 중점 지원
- AfDB와의 협조용자('10~'13년중 4억불 규모의 MOU 既체결)를 적극 추진하고, 유망 PPP사업 발굴을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와의 SOC협약체 설치 추진
 - * EDCF는 필리핀, 인니, 베트남에 PPP사업 발굴을 위한 SOC 협약체 既설치
- 중장기적으로 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ing)*을 획기

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

* 독일·프랑스의 개발금융전문기관인 KfW와 AFD는 개발금융 재원을 정부부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체 조달하여 원조차관, 준상업차관, 보증, 출자 등 다양한 개발금융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여 개도국 개발 및 자국기업 진출을 지원

- **(KSP)** 국별 정책컨설팅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을 지속 확대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수요를 고려하여 북아프리카 자원부국과 사하라 이남의 최빈국에 대한 지원 방식을 차별화
 - * 연도별 양자 정책컨설팅 사업(대상국) : ('12) 7개국 → ('15) 10개국
 - * WB·AfDB 공동컨설팅 사업(건수) : ('12) 1건 → ('15) 5건
- 북아프리카는 산업정책 중심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하라 이남은 경제개발계획, 인프라·농업·교육 등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을 지원
- 주제 발굴 → 정책자문 → 자문 결과의 정책 반영 → 평가 및 피드백 등 사업의 순 주기에 걸친 KSP 정책컨설팅을 통해 효과성 제고

KOICA

- 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전염병 퇴치·모자보건, 공공행정(ICT), 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 발전 기반 조성을 지원
 - * 가나, 에티오피아, DR공고, 탄자니아, 우간다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
- 무상 원조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인적자원개발(HRD)을 위해 다년간 연수 및 WFK(전문가·봉사단) 파견을 지속하고, 연수와 전문가 파견 등으로 맺어진 네트워크를 “정기적인 메일링”, “한국의 날 초청행사” 등을 통해 지속·관리

새마을운동

- 르완다 등 새마을 사업 시범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발전 지원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 초청연수(1단계), 시범사업(2단계), 성과평가 후 대규모 원조 프로젝트 지원(3단계) 등 단계적 추진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보건의료

- 수원국의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 의료인력 재교육** 위주로 지원, 민관과 유무상 협력·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 * 가나 건강보험제도 개선 사업 추진(13~16, 10억)
- **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현황 : 9개국 81명(남수단, 에티오피아 등, 07~12년)
- EDCF 자금으로 지원 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인 병원 운영 컨설팅·인력 양성 등을 보건·의료 분야 무상원조로 실시
- * 남수단 이태석 신부 기념 병원 프로젝트 공동수행

AfDB 신탁기금

- AfDB에 설치한 '韓·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13~14년 1,500만불 추가 출연하여 '12년 발표한 액션플랜*(2년 단위)을 뒷받침
- * '12년 KOAFEC을 통해 인프라, IT, 인적자원, 농촌개발, 녹색성장, 경제발전공유사업 등 6대 분야, 총 37개 사업(총 5.9억불 상당)을 발표

1-2. 상호교류 확대 및 연구기능 강화

상호 교류 채널 확대

- ① **(정부간 채널 활성화)** 정부간 협의체*를 지속 확대하고 기존 협의체를 고위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정부간 채널에 민간 참여를 촉진

* 외교부: 이집트, 남수단, 남아공 등 11개/ 재정부: 이집트, 모로코 등 2개/ 교과부: 남아공, 튀니지, 에티 등 3개/ 농식품부: 튀니지 등 1개

- '12년 '한-아프리카 협력주간*'과 같이 정부간 협의체 개최 계기에 비즈니스 미팅 등도 연계하여 협력의 시너지 효과 제고

* 10. 15~10. 18 : 한·아 산업협력포럼(10. 15, 지경부)-KOAPEC 장관급회의(10. 16, 재정부)-한·아 포럼(10. 17, 외교부)

- 기존 G2G 채널을 활용하여 민관사절단 파견 및 전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간 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

* 에너지 협력사절단(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정부·민간 투자설명회 등을 연 1회 또는 연 2회 등으로 정기적으로 추진

- ② **(민간채널 활성화)** 대한상공회의소(케냐, 나이지리아, 등) 전국경제인연합회(모로코, 이집트, 에티오피아), 무역협회(남아공, 알제리)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추가 채널을 구축

* 모잠비크, 가나, 가봉 등 중점 협력국을 추가 국가로 적극 검토

- '한-남아공', '한-알제리' 경험위를 활성화하고, '한-SACU', '한-UMA' 경험위 등 지역 공동체와 추가 협력채널 추진(무역협회)

- ③ **(국제기구와 협력)**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연합(AU)* 등 다자 채널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 아프리카 53개국 정치·경제공동체로 유럽연합(EU)을 목표로 정책공조를 강화

- AfDB 등 국제기구와 정례협의(연1회)를 활성화하고, AU와 국내 유관기관(KOTRA, KOICA, KAFACI 등)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개발협력 및 사업 관련 정보공유 확대

한류 확산 및 한국문화원 설립

-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문

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쌍방향 문화교류의 전진 기지로서 주요 거점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원** 설립 및 교류사업* 확대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문화 교류 추진

** 이탈리아, 영국 등 19개국 23개소 운영 중으로 아프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 문화원(10. 2월), 이집트 문화원(13. 6월), 남아공 문화원(13년말) 설립 예정

*** 문화예술전문가 초청 확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가나, 에티오피아 등)을 통해서도 문화 교류를 확대

- 정부의 한국 드라마 무상배급 실시* 및 민간 차원의 한국-남수단 문화교류(한류 콘텐츠) 협약체결 (10. 17일, 수은, KBS, 남수단 정보방송부) 등을 통해 한류 확산

* '12년 우간다(NTV), 짐바브웨(ZBC)와 계약 완료, 카메룬, 케냐, 보츠와나, 나미비아, 탄자니아 방송국과 계약 협의 중

연구기능 강화

- (연구기관간 협력 강화) KIEP '신흥지역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입은행, KOTRA, 자원개발협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연구회*' 운영 및 자료공유** 확대

* KIEP 신흥지역 연구센터(간사) 중심으로 구성(13.1분기)하여 분기별로 연구회 개최

** KIEP 신흥지역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 연구포탈(EMERIC)에 수은 등 관련 연구기관 자료도 등재 추진

- ('한-아프리카 협력센터' 활성화) 民·官·學*으로 구성된 협력센터('11. 8월)를 통해 문화·무역·투자 등의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아프리카 정책 분석 등도 실시

* 民(아프리카 진출 기업), 官(외교부 및 주요 경제부처), 學(아프리카 전공 교수)

1-3. 민간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혼합신용) 자금의 가용성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MDB 등과 혼합신용(Co-financing) 적극 활용

- 아프리카 중상위소득 국가 정부*가 차주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수출신용과 EDCF, AfDB·WB의 상업차관을 결합한 혼합신용 및 PPP 지원 추진

* 모로코, 나미비아, 남아공, 알제리, 튀니지 등 5개국(수출신용 제공시 'OECD 지속가능대출 가이드라인'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국가)

-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해서는 EDCF, AfDB·WB의 양허성차관, 일본(JICA), 중국(CEXIM) 등과의 협조용자 방식 추진

* (예) 도로사업의 경우, EDCF-JICA가 도로 구간을 나누어 지원 가능

(예) 발전사업의 경우, EDCF-JICA가 기자재 비용 등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 (수출신용 지원확대) 자원·녹색·플랜트·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기관(수은, 무보)의 수출금융·수출보험 등을 확대

- (수출금융) 아프리카 플랜트·인프라 사업* 수주·이행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제작금융, 이행성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이집트 Tahrir 석유화학설비(6억불) 및 카이로 지하철 전동차 수출(3억불), 알제리 Ras Djinet 화력발전(2억불), 가봉 Port Gentili市 정유플랜트(2억불) 등

- (전대라인) 우리 기업의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중소형 수출거래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신규 전대(轉貸)라인 확충*

* '13년 초 '수은-아프리카 수은(Afrexim)과 전대라인(30백만불) 설정, 교역규모가 큰 남아공(50백만불), 모로코(50백만불) 등과 신규 전대라인 설정 추진 등

- (맞춤형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 건설·플

랜트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맞춤형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 및 PF 지원방식을 통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지역 진출 지원

* 사업 관련 금융자문 및 주선, 이행성보증, 제작금융, 직접대출 및 채무보증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별 금융상품 제공

- **(사업발굴 마케팅)** 주요 석유화학 분야 발주처가 소재한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지역 마케팅*(수은) 실시

* 주요 발주처, 현지금융기관, 관련 부처 등을 방문하여 프로젝트 시장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

* 중동·북아프리카 주요 발주처, 주한 MENA 대사관, 국내기업 등이 참여하는 MENA Conference 재개최(13. 4~5월)

- **(무역보험)**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특수시장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아프리카 수출상품 한도 우대 및 Mobile-K Office* 상시운영

* 아프리카 수입자(13개국 이상)에 대해 현지에서 신용조사 및 수입자 지원한도 책정(아프리카 전체 지원한도 US\$278백만불)

- **(금융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수은·무보 등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추진 주체간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협의

* 수출입은행(EDCF, 간사), 무역보험공사, GIF 등 금융지원기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광물자원 공사 등 프로젝트 추진 기관 참여

- **(타당성 조사지원 등 확대)**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시 사업발굴 초기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분야별 타당성 조사 및 시장조사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환경부, 지경부, 방통위, 국토부 등 F/S·시장조사 지원규모 (억원): (11)130 → (12) 184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의 관심을 제고

* 조세조약 발효현황: 남아공,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등 5개국

- 수단('04. 서명), 나이지리아('06. 서명), 가봉('10. 서명), 리비아('09. 가서명), 가나('10. 가서명) 등의 국가는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13년)
- 협상이 진행 중인 케냐,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등과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협상을 지속 추진 ('13년)

- **(투자보장협정)** 중점 협력국 중 협정이未체결된 에티오피아, 가나 등과 협상 체결을 추진하고 인근 국가로 지속 확대

• '한-아프리카 협력센터' 등 통해 아프리카 진출 관련 주요국 동향 등도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적극 참고

* 아프리카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 현황 : (발효) 남아공,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등 12개국, (서명) 탄자니아, DR콩고, 모잠비크 등 7개국

** 협상 중(7개국): 케냐, 에티오피아, 앙골라, 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니제르

- **(MOU체결)** 농림수산, IT 등 아프리카 관심분야 및 인프라, 자원 등 우리 진출 가능분야를 중심으로 MOU 추진 지속

* 인프라 분야 : 적도기니(항만분야), 알제리(수자원분야), 남수단(신수도 건설)

- 경험 우선 전략국(알제리) 등과 민관합동 채널을 구성하여 협력 MOU 체결을 추진

2 주요 분야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2-1. 에너지/자원 협력

- **(G2G 채널 활성화)** 정부간 에너지·자원 협력채

1-4. 경험의 제도적 협력기반 강화

- **(이중과세방지협정)** 남아공, 이집트 등 협정 발효

널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성공사례(Success Story 창출) 추진

* '13년 모잠비크(1차 산업자원 협력위), 남아공(1차 에너지 협력위), 알제리 민관사절단, 기봉(2차 자원협력위), DR공고(제차 자원협력위) 개최 예정

** (예시) 모잠비크 : 가스전 연계 종합 산업발전 협력/알제리 : IT 첨단 산업 진출 거점 조성/에티오피아 : 산업단지 조성 /남수단 : 신생국 협력모델 창출 등

• 협력채널 운영시, 기술전수·개발경험공유 등 협력사업과 에너지·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괄타결(Package Deal) 형태의 협의 추진

■ **(다자 협력 채널 구축 확대)** 우리측 다자채널인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08년 설치, 매년 개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도의 다자간 협력 채널에 적극 참여하여 포괄적인 네트워크 유지
* '범-아프리카 에너지워크'(AIDB 등 주체로 아프리카 에너지장관 참석사절단 파견 예정)

■ **(기존 프로젝트의 연관사업 확대)** 기존에 구축된 진출기반 및 기관·기업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모색

예: 모잠비크 Area4 광구 가스개발(한국가스공사)

- 위치/계약기간: 모잠비크 동쪽해상/탐사8년('07~15), 개발/생산 30년('15~'45)
- 지분구성(%): Eni(70/운영사·이태리), 한국가스공사(10), ENH(10, 모잠비크 국영석유사)
- 추정 매장량 규모 : 62Tcf(약 14억톤)
- 연계사업: 액화플랜트, 배관망, 저장탱크, 항만 확장 및 석유화학 플랜트 등 석유화학 산업 관련 대규모 연계 프로젝트 수요 발생 예상

■ **(인프라-자원 동반진출)** 자원개발의 국내 실수요자 및 SOC기업과 유통업체*간 동반진출(권소사업구성 등)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한전·한수원(우라늄), LG상사·SK 네트워크(유통) 등

2-2. 건설/인프라 협력

■ **(중점 협력국 제도운영)** 既선정한 해외건설 분야 중점 협력국*(12. 3월)에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70%를 우선 배정

* 중점협력국 15개국 중 아프리카지역 4개국 : 남수단,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

** 사업 타당성 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 등을 지원('13년 35억원 예정)

■ **(건설외교 강화)**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인프라 협력 MOU 체결* 등 건설외교 강화

* (예시) 남수단 신수도 인프라 건설 협력 MOU 초안 기 송부('12. 11월)

■ **(협력 방식 다각화)** 진출 대상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는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 교류* 등을 추진하여 상호 신뢰 제고

* (나이지리아) 수자원분야 기술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추진('13년 상반기)

(알제리) 신도시 및 수자원분야 기술이전과 인적자원 교류 추진('13년)

• 인프라 개발 재원이 부족한 국가와는 자원-인프라 패키지*, BO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추진

* 광물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인프라를 건설해 주고 광물자원 확보

■ **(자금지원 강화)** 글로벌인프라펀드*, 해외시장개척자금 등을 통해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지

원 확대

* 정부 400억원, 공기업 1,600억원 및 민간이 2,000억원을 투자하여 1호 펀드(09. 12월), 2호 펀드(10. 7월)를 조성(각 2,000억원 규모)

-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활용하여 신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자본금 투자를 확대
-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타당성 조사* 지원 및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흥 해외건설시장인 아프리카지역의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

* '10년 12억원 → '11년 4억원 → '12년 12억원 → '13년 24억원

** '10년 23억원 → '11년 22억원 → '12년 30억원 → '13년 35억원

2-3. 녹색성장 협력

- **(환경협력 사업 및 분야 확대)** 아프리카 환경산업 협력 프로젝트* 확대 및 폐기물·대기 분야 신규 발굴

* '10~'12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등 13개 협력 사업 추진하였으며, 향후 3년간 20개 내외 협력 사업 발굴 추진

- **(환경 이니셔티브)**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과 환경협력포럼 및 국제개발은행(GCF 포함)을 활용한 협력 파트너십 확대

- 국가별 환경 사업 수요, 소득 수준*을 고려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지원 확대

* 저소득 국가는 상수도 분야 중심, 고소득 국가는 폐기물, 대기 분야로 확대

** 동 사업을 통하여 '12. 6월 알제리 엘하라쉬 생태하천복원 사업 수주(5억불) 모로코(상하수도), 알제리(대기·폐기물)와 동 사업 추진 협의 중

-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행사를 통한 한-아프리카 포괄적 환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확대

* Global Green Hub Korea(매년 상반기 개최, 권역별 환경 포럼 및 비즈니스 미팅)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유망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녹색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

-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산업자원협력위원회(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등 양자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협력수요 적극 발굴

* ①개도국 공무원·민간 전문가 인력양성 ②개도국 수요와 국가 발전 단계에 맞는 녹색기술이전 ③CDM 프로젝트 등 녹색 비즈니스 발굴·설계·모니터링 능력 지원 등

- 투자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 아프리카 녹색시장 진출 관심기업 대상 해외마케팅을 지원

* 발굴된 온실가스감축사업(CDM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이 국내기업과 매칭될 수 있도록 정밀타당성조사비용 지원

- **(에너지기술협력)** 국제기구와 공동 R&D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의 열악한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여 아프리카 국가와 상생협력

* 아프리카 인구 100만명당 전력생산은 39MW로서 다른 지역의 1/10 수준이며, 잦은 정전과 국소 정전으로 인하여 경제성장·국가발전 저해

2-4. 교육과학기술 협력

- **(기본방향)** 초·중등 교육 및 과학기술 ODA 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등교육 및 고등과학기술 협력 확대

- **(교육협력)**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협력수요*에 적극 부응

* 인적자원과 과학기술로 성장을 이룬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급증

- '국제협력 선도대학¹⁾' 사업, 정부초청장학생

1) ('12) 포항공대-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신소재공학과) → ('13) 2~3개 추가예정

(Global Korea Scholarship)²⁾, 'Bear Project'³⁾, '솔라스쿨'(13년 신규)⁴⁾ 등 한국의 교육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확대 추진

※ 아프리카를 포함한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예산 '12년 총 545억원에서 '13년 653억원으로 대폭 확대(19.8% 증액)

- **(과학기술협력)** 남아공, 튀니지, 에티오피아 중심으로 기초과학분야 공동 R&D 지원*, 원자력 세미나 개최** 등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 ('12) 남아공·튀니지·에티오피아·탄자니아·DR콩고 등 20여개과제 지원

** ('11, '12) 남아공과 2차례 개최

- **(협력기반 조성)**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및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확대하고, 다자 협력 채널인 ADEA(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가입 등 추진

* ('94)튀니지, ('04)남아공, ('11)에티오피아

** 현재 남아공·튀니지와 격년 개최

- 아프리카 53개국 이 가입한 교육장관회의체 ADEA에 가입을 추진('14년)하여 아프리카와 포괄적 교육분야 협력채널 구축

* '11. 4월 ADEA이사회에서 2012년 총회 사전행사로 '한국의 날(2, 12)'을 지정하고 한국을 공식초청(타 공여국에는 전례가 없었던 사례)

2-5. 농림수산물 협력

- **(진출 거점)** 농업발전 잠재력,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알제리, 에티오피아, DR콩고,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농림수산물협력 확대

- **(기반 조성)** 농업투자 정보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ODA지원 등을 통한 측면 지원 강화

- 농업투자환경조사 확대 및 정부 용자지원, 농식품 모태펀드, 수은,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투자지원 확대 및 다각화

* 민간기업이 국제금융공사(IFC)와 농지 30만ha개발 MOU 체결 사례 활용

- MOU 체결 등을 통한 정부간 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ODA와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민간 진출 여건 조성

* 농림수산물 MOU체결국 : ('12) 6개국 → ('20) 10

- 기업의 영농기술·법률·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확대

-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의 이해관계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진출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 해외농업개발협회('12. 5월 설립) 중심으로 현지 농장개발 기업*과 국내 실수요 업체간 연계를 강화하여 교역 활성화 추진

* DR콩고 6,000ha, 우간다 1,100ha, 마다가스카르 130만ha 개발 추진중

- 원양관리회사 설립 지원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어업(조업선 규모화, 양식, 가공 등) 진출 확대

- 한-아프리카 농업(KAFACI) 및 수산물(KORAFF) 기술협력 다자간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현안 사항 논의 및 협력 활성화

* KAFACI : '10년 설립, 18개국 참여 / KORAFF : 15개국 200여명 참여

- **(상생협력)** 현지 인력 고용, 국제규범에 맞는 농업투자,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식량안보 및 빈곤퇴치에 실질적 기여

2) ('07~'12) 아프리카 총 380명 수혜, '13년 수혜 인원 확대 예정

3) DR콩고,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보츠와나 등 직업기술교육 전수사업

4) 전기 없이 태양열을 활용하는 이동식 모바일교실(Solar-powered School)

* (예) 에티오피아에서 게이트재단과 농업용수개발 공동협력 사업 추진(11~14년)

IV. 향후 추진계획

- 이상의 「한-아프리카 경협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 한-아프리카 무역 800억달러’ 및 ‘아프리카에 제2의 한국 발굴’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
 -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필요시 대책 내용을 수정·보완
- 아프리카와의 경협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단계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중장기 전략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장애요인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강점인 한류를 활용, 한-아프리카간 문화 교류도 적극 추진할 필요
 - 경협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추진 필요
- 현재 작업 중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3~17)」(13년 상반기)이 완성되면, 금융지원 강화* 등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

* 기 구성된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T/F(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팀장)를 활용하여 금융지원 강화 방안 마련

최근 일본 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 본 자료는 2012년 11월 13일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에서 발표한 「최근 일본 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2. 11. 12(월)에 발표된 일본의 '12년 3/4분기 GDP 증가율(1차 속보치)이 -0.9%(연율 -3.5%)의 저조한 모습을 기록함에 따라 일본 경제의 조기 회복 기대가 약화되고 국내외의 우려가 제고되고 있는바,
- 일본의 최근 경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간략히 정리하였음

공적수요 0.3%p

- **(민간수요)** 민간 소비 -0.5%(연율, -1.8%), 설비투자 -3.2%(-12.1%) 등이 감소했으며 주택투자는 0.9%(3.8%) 증가
- **(공적 수요)** 정부 소비 0.3%(1.4%), 공공투자 4.0%(16.8%) 등 증가
- 대지진 피해지역 복구수요의 영향으로 공공투자는 3분기 연속 증가
- (상품·서비스 수출) 수출이 -5.0%(-18.7%)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수입 감소는 -0.3%(-1.4%)에 그쳐 순수출이 대폭 감소
- 유럽연합, 중국에 대한 수출 악화가 크게 영향을 끼쳤으나 미국, 아시아 지역 수출도 감소

I. 최근 일본 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1 최근 일본 경제 현황

(1) 경제 성장률(11.12일 발표)

- **(GDP 성장률)** 금년 3/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9%(연율 -3.5%)로 '11년 4/4분기 이후 3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 GDP 성장률(전기비, %, 괄호는 연율)

'11년 4/4	→	'12년 1/4	→	'12년 2/4	→	'12년 3/4
-0.3(-1.2)		1.3(5.2)		0.1(0.3)		-0.9(-3.5)

- 수출(전기 대비, -5.0%)과 민간수요(-0.6%)가 크게 위축되어 공적수요(1.1%) 확대에도 불구하고 '11.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빠른 위축세 기록
- * GDP(-0.9%) 기여 비율: 순수출 -0.7%p, 민간수요 -0.4%p,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

지 표	'11년 3분기	'11년 4분기	'12년 1분기	'12년 2분기	'12년 3분기
GDP	2.3	△0.3	1.3	0.1	△0.9
■ 국내 수요	1.5	0.5	1.1	0.5	△0.2
- 민간수요	2.1	0.7	1.0	△0.1	△0.6
- 공적 수요	△0.1	0.1	1.6	0.9	1.1
■ 상품·서비스 순수출					
- 수출	8.8	△4.3	3.3	1.3	△5.0
- 수입	3.6	0.9	2.2	1.8	△0.3

* 출처: 일본 내각부

(2) 부문별 경제 현황('12. 10월 통계)

- **(소비자물가)** 금년 9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하며 4개월(6~9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 소비자 물가(전년 동기 대비, %): 6월 -0.2 → 7월 -0.4 → 8월 -0.4 → 9월 -0.3
- 일본 은행은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0.2%(7월 전망)에서 -0.1%로 하향 수정(10.30일, 경제 및 물가전망 반기보고서)
- **(고용)** 9월 실업률은 4.2%로 8월부터 두 달 연속 금년 최저치를 이어가며 상반기에 비해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
 - 세계경기 둔화, 엔화 강세 영향으로 기업들은 고용에 신중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진복구 재건사업의 영향으로 실업률 소폭 개선
- **(생산)** 금년 9월 기준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4.1% 감소*하며 8월보다(-1.6%) 감소폭이 크게 확대
 - * 수송기계공업(-12.6%), 정밀기계공업(-8.4%), 정보통신기계공업(-7.3%)
- 세계경기 둔화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의 영향

- **(소비)** 9월 기준 전체 상업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40조997억엔)하며 4개월(6~9월) 연속 감소
 - 도매판매가 4.8% 감소(30조382억엔)했으며, 특히 소매판매는 0.4% 증가(10조615억엔)하며 8월(1.7%)에 비해 크게 후퇴

일본 주요 국내경제 지표

경제지표	'09년	'10년	'11년	'12년 1분기	'12년 2분기	'12년 3분기	'12년 8월	'12년 9월
실질GDP(전기비, %)	△5.5	4.4	△0.8	1.3	0.1	△0.9	-	-
광공업생산(전기비, %)	△21.9	16.5	△2.4	0.4	△2.0	△4.2	△1.6	△4.1
소매판매(전기비, %)	△2.3	2.5	△2.4	4.0	△0.5	△2.2	1.7	0.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1.3	△0.7	△0.3	0.3	0.2	△0.4	△0.4	△0.3
실업률(%)	5.1	5.0	4.6	4.5	4.4	4.2	4.2	4.2

* 출처: 일본 재무성, 한국은행

2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경제 대책

- **(일본정부)** 10.26(금) 각의결정에서 7,500억엔(약 10조2,7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경제 대책을 마련
 - * 국가재정 4,226억엔(예비비+고용대책기금)+지자체 부담금 3,274억엔
- **(배경·목적)** 디스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가속화(노다 총리, 니혼게이 지아이신문)
- **(지원분야)** 내년 이후 실시예정인 일본재생전략의 일부를 앞당겨 시행하고, 대지진 피해 조기복구 사업 및 재난·재해 대비 방재 대책 등을 추가
 - 대지진피해로부터 조기복구 및 대규모 재난 대비 방재대책(2,643억엔)
 - 일본재생전략3분야(그린, 생명, 농림어업) 시책의 조기실현(1,051억엔)
 - 기타 해상보안청 순시선 건조(170억엔) 등
- **(효과)** 일본 내각부는 이번 경제대책으로 '12년도

실질GDP 0.1% 상승, 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산

- **(일본은행)** 자산매입기한도를 80조원에서 91조 엔으로 11조엔(약 150조원) 증액하며 9월에 이어 2달 연속(12년 총 4회) 양적완화 조치 단행(10.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
 - **(배경·목적)** 중국과 영토 분쟁, 글로벌 수요의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산업 생산 위축 등으로 경기 부양의 필요성 증대
 - **(증액내용)** 장단기 국채 매입한도 각 5조엔, 위험 자산 매입한도 0.9조엔(기업어음, 사채매입, 부동산투자신탁 등)
 - **(추가 대책)** 무역수지 적자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가경기 부양 및 통화완화 정책의 필요성 증가
 - 금년 하반기 경제 지표 부진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이라는 관측(11.5, 산케이비즈)
 - **(규모)** 최대 2조 7,000억엔(약 36조원)의 경기 부양책으로 예비비 잔액(7,000억엔)과 국채비 잉여금으로 충당
 - **(지원분야)** 일본재생전략분야(환경, 의료, 농림어업)를 조기 실시, 방재 관련 공공사업을 강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화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와 물가상승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 *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공조의사를 표명(10. 30일)

3 향후 전망

- **(경기침체 가능성)** 국내·외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2012년 후반은 경기 후퇴국면으로 진입할 가

능성

- **(국내경제)** 산업생산 및 출하의 감소, 판매(소비)의 침체 등 내수 경기가 악화된 상황
- **(대외경제)** 세계 경제 회복의 지연, 엔화 강세의 지속,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대외 환경
- **(시장·언론 동향)**
 - **(일본 은행)**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7월 제시했던 2.2%보다 크게 낮춘 1.5%로 하향 조정(10.30, 경제 및 물가전망 반기보고서)
 - * 일본 은행 GDP 예측치('12.10): '12년 1.5%, '13년 1.6%
 - **(월스트리트저널)** 일본 경제가 경기침체(Recession)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도(11.6)
 - **(바클레이즈)** 일본 경제는 '12년 4분기 GDP -1.7% 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 1/4분기에 0.2% 성장세를 되찾을 것(11.12)

12년 3/4분기 가계소득 6.3% 증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

- 12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

* 본 자료는 2012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12년 3/4분기 가계소득 6.3% 증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 내용

- ◇ '12.3/4분기 월평균 소득 414.2만원, 지출 325.9만원, 흑자액 88.3만원
- **(소득)** 근로소득(7.8%)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비 6.3% 증가
- **(지출)** 교육, 보건 등의 지출이 안정되며 전년 동기비 2.2% 증가
- ◇ 가계수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선된 가운데, 소득 5분위 배율(5분위/1분위 평균소득)도 개선세 지속
- 고용회복세 지속 등으로 3분기 연속 1분위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
- * 소득증가율(%): (1분위)9.1 (2분위)6.5 (3분위)4.4 (4분위)4.7 (5분위)7.6
- 소득 5분위 배율은 4.98배로 '03년 이후 가장 개선된 모습(3/4분기, 전국 2인 이상)
- * 소득 5분위 배율(배): ('03)5.28 ('05)5.32 ('07)5.52 ('09)5.48 ('10)5.23 ('11)5.19 ('12)4.98

I. 12년 3/4분기 가계소득 · 지출 동향

- **(가계소득)** 월평균 소득은 414.2만원(전년 동기비 6.3% 증가)
-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각각 12분기와 6분기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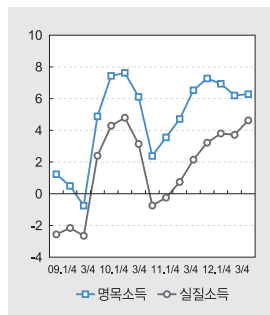
증가하였으며 특히, 실질소득은 물가안정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

* 명목소득(% , 전년 동기비): (11.3/4)6.5 (4/4)7.3 (12.1/4)6.9 (2/4)6.2 (3/4)6.3

* 실질소득(% , 전년 동기비): (11.3/4)2.1 (4/4)3.2 (12.1/4)3.8 (2/4)3.7 (3/4)4.6

- 근로소득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전체 소득증가를 견인

가계소득 증가율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전년 동기비 %)

12.3/4	금액	구성비	증감률
소득	4,141.9	100.0	6.3
경상소득	4,009.0	96.8	5.9
근로소득	2,775.4	67.0	7.8
사업소득	850.0	20.5	0.4
재산소득	20.5	0.5	38.1
이전소득	363.1	8.8	3.8
비경상소득	132.9	3.2	17.7

- **(가계지출)** 월평균 지출은 325.9만원(전년 동기비 2.2% 증가)
- 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246.7만원(전년 동기비 1.0% 증가)
-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통신비(7.7%)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폭염 등으로 에어컨/선풍기 구입이 증가

하면서 가정용품(6.3%), 주거/광열(5.6%) 등의 지출이 증가

- 반면, 교육, 보건 분야 등의 지출은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안정세

- **(교육)** 보육료 지원, 등록금 인하* 등으로 △6.1% 감소

* 5세(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소득 하위 70% → 전계층, '12.1월)

* '12년 등록금 인상률(전년비, %): (국공립대)△5.5 (사립대)△3.9

- **(보건)** 약가 인하('12.4월), 포괄수가제('12.7월) 시행 등으로 의약품비, 입원비 등의 지출이 감소 하면서 △3.5% 감소

*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부담 입원진료비가 평균 20.9% 감소 전망('12.5월 복지부)

-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79.2만원(전년 동기비 6.1% 증가)

- 고용 호조 등으로 경상 조세(12.5%), 연금(8.2%), 사회보험료(7.2%) 지출이 증가

- 금리하락 등으로 이자비용 증가세는 둔화(10.1 → 7.0%)

* 가계대출금리(잔액 기준, %): ('11.3/4)5.86 (4/4)5.82 ('12.1/4) 5.78 (2/4)5.72 (3/4)5.47

- **(가계수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35.0만원(전년 동기비 6.3% 증가)

• 가계 소득증가율이 지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 흑자액은 전년 동기비 24.8% 증가하며 증가폭이 확대('11.3/4 70.8만원 → '12.3/4 88.3만원)

• 흑자율(흑자액 ÷ 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동기비 3.9%p 상승한 26.4%로 '03년 이후 가장 양호한 수준

(단위: 만원, %)

	'08. 3/4	'09. 3/4	'10. 3/4	'11. 3/4	'12. 3/4	
처분가능소득	284.9	282.9	296.6	315.1	335.0	(6.3%)
흑자액	71.0	64.0	65.7	70.8	88.3	(24.8%)
흑자율	24.9	22.6	22.1	22.5	26.4	(3.9%p)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과 증감

* 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가구간이전, 이자비용)

*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흑자율=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I. 소득분위별 동향

- **(분위별 소득)** 고용호조세 지속 등으로 3분기 연속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체 분위의 소득이 증가

* 소득증가율(%), 전년 동기비: (1분위)9.1 (2분위)6.5 (3분위)4.4 (4분위)4.7 (5분위)7.6

- **(분위별 지출)** 소비지출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고소득층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지출증가율(%), 전년 동기비: (1분위)1.7 (2분위)△0.2 (3분위)0.7 (4분위)2.1 (5분위)4.3

- 1분위는 보건(△17.4%), 교육(△11.2%) 등의 지출이 감소
- 5분위는 여행 등 오락/문화(21.8%)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

- 소득 5분위 배율은 4.98배로 '03년 이후 가장 개선된 모습

* 소득 5분위 배율(배, 3/4분기 기준, 전국 2인 이상): (03)5.28 (05)5.32 (07)5.52 (09)5.48 (10)5.23 (11)5.19 (12)4.98

Ⅲ. 평가 및 시사점

① 고용 호조세, 물가 안정 등으로 가계소득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며 가계수지가 전반적으로 개선

- 고용 호조세 지속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며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세가 지속

* 취업자(전년 동기비, 만명): ('11.3/4)36.3 (4/4)47.4 ('12.1/4)46.7 (2/4)43.0 (3/4)50.6

* 근로소득 증가율(%): (전체)7.8 (1분위)8.4 (2분위)9.6 (3분위)3.8 (4분위)8.6 (5분위)8.6

-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실질 소득 확대에 기여

* 물가상승률(전년 동기비, %): ('11.3/4)4.3 (4/4)4.0 ('12.1/4)3.0 (2/4)2.4 (3/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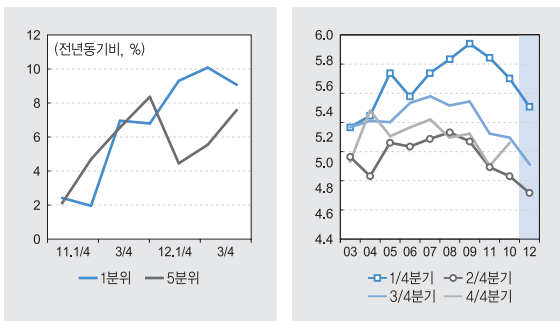
- 흑자율이 '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여력이 높아져 향후 소비확대 가능성 상존

* 흑자율(%, 3/4분기): ('03)22.6 ('05)21.3 ('07)23.6 ('09)22.6 ('10)22.1 ('11)22.5 ('12)26.4

②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1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소득 5분위 배율 개선세가 지속되는 점도 긍정적

* 1분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11.3/4)2.4 (4/4)5.3 ('12.1/4)13.1 (2/4)4.9 (3/4)11.9

1분위와 5분위 소득 증가율 분기별 소득5분위 배율



- ③ 서민가계의 소득과 분배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서민가계의 소득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관세감면 품목 조정

* 본 자료는 2012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에서 발표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관세감면 품목 조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산업지원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관세감면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¹⁾’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²⁾’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³⁾’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입법예고기간: 2012. 11. 19~2012. 12. 14)

- 1)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은 다국적 임상시험의 국내유치를 위해 임상시험용 시험약 및 그 위약에 대하여 관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관세법 제91조 제4호)
- 2)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신규 사업분야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30%)하는 제도(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 3)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50%)하는 제도(조세특법 제118조제1항 제3호)

- 금번 개정안은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국내임상시험 시장투자 확대 및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고,

- 중소기업의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새로이 조정하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관세법 시행규칙〉

- (임상시험용 의약품) 시험약 및 그 위약의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15년말까지 3년 연장
- (공장자동화 물품) 현재 운용중인 66개 품목 중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하여 56개 품목으로 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현재 운용중인 88개 품목 중 열증기압축기, 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전원공급기, 전압변환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여 84개 품목으로 운용

- 그 외 산업지원 목적의 관세감면으로 산업기술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 고속철도건설 등 국가 물류 인프라 확충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가 운용되고 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의 국내유치 확대 및 공장자동화·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참고 1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 조정(안)

- 감면 대상 물품 (56개) '13. 1. 1 시행 예정

구 분	물 품
공장자동화 물품 (56개)	기존품목 (48개) 자동열처리로, 건조기, 냉각기, 항온항습기, 접합기, 연마기, 자동포장기, 도포기, 자동이송장치, 적재기, 골판지랩 조절장치, 오토스프라이서, 절단기, 전분자동제어장치, 인쇄기, 소면기, 조방기, 연조기, 혼타면기, 이물질검출기, 정방기, 연사기, 분사기, 권취기, 블로우 클리너, 직기, 자카드기, 슬러브장치, 사결점제거장치, 마운팅기, 연삭기, 광택기, 라운딩기, 분쇄기, 혼합기, 자동선별기, 성형기, 삽입기, 탈포기, 프레스, 재생기, 연신기, 증착기, 자동저장장치, 고속원면 시험기, 고속사강력 시험기, 넵 또는 단섬유 함유량 분석기, 기어측정기
	신규품목 (8개) 브로우칭머신, 전조기, 필투릴 편칭기, 코팅머신, 롤투롤 라미네이터, 롤투롤 노광기, 전기특성시험기, 블랭크검사설비

참고 2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감면 품목 조정(안)

- 감면 대상 물품 (84개) '13. 1. 1 시행 예정

구 분	물 품
기존품목 (67개)	태양열 (4개) 저철분유리, 유리관, 진공관식 집열기 2중 유리관, 태양열 흡수판
	태양광 (32개) 저철분유리, 성능측정기, 화학중착반응기, 압축기, 전기히터, 슬림로드폴러, 컬럼트레이, 태양전지 실리콘잉곳 절단기,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연마기, 화학중착반응기 전력공급장치, 화학중착반응기 전력선, 자동이송장치, 스캐어그라인더, 실리콘 열충격분쇄기, 잉곳블록 검사장치, 냉동압축기, 도가니, 단열재, 흑연구조물, 다이아몬드 와이어, 무반사 스프레이 코팅기, CIGS박막태양전지 모듈용스크린 프린터, 강화로, 폴리싱머신, MO코팅기, 인스펙션 머신, MO코팅유리 절단기, MO코팅유리 그라인딩 머신, 드릴링머신, 부스바, MO코팅유리, PVB포일
	풍력 (14개) 블레이드, 제동장치, 종속기어장치, 회전베어링, 기어드모터 또는 감속기어장치, 피치컨트롤장치, 냉각장치, 영구자석, 타워베이스 캐비닛, 컨버터 캐비닛, 풍력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슬립링, 급유자동화장치, 블레이드 모니터링시스템
	수소연료 전지 (16개)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전해질막, 전극용촉매, 전도성고분자용액, 카본페이퍼, 개질기, 개질기용촉매, 황화합물 제거용촉매 또는 흡착제, 수소저장장치 또는 수소저장용기, 수소충전기, 스택모듈, 전력변환시스템, 탄소복합체 분리판, 가슴기, 공기가열용 히터, 단전지
폐기물 (1개) 재활용고형연료 전용 보일러	
신규품목 (17개)	태양광 (12개) 회전건조기, 열증기압축기, 유동층반응기 전력 공급장치, 고압유동층 흡착반응기, 폴리실리콘 수집장치, 폴리실리콘 시드공급장치, 폴리실리콘 파우더수집장치,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 실험실용 화학중착반응기, 형광엑스선 측정기, 오븐, 매트릭스 트랜스퍼 시스템
	풍력 (5개)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플랜지, 해상풍력발전기용 메인프레임, 해상풍력발전기용 허브, 해상풍력발전기용 볼트 및 너트

공정과세 구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 지방세 3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본 자료는 2012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지방세운영과에서 발표한 「공정과세 구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세분화**했다.

* 가산세 :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현행)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 → (변경)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 40%

-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 예)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징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 ②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단축(2년 → 1년 이상)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체납액 100만원 이상 → 30만원 이상)했다.
- ③ 이 외에도 국세에 준해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 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 지방세법 개정안도 과세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정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 ① 현재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조례로 세율을 가감 조정(탄력세율)할 수 있어, 리스자동차 등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 세율인하 경쟁이 과다하므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 ②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50명 이하)이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 공제액=(신고 월 종업원 수-직전 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월 적용급여액

- ③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주택면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 이하)은 삭제하고, 취득세 비과세대상 기준을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규정해 과세형평성을 도모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2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감면 필요성 및 경제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를 담았다.

①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한다.

-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 25%~100% 감면)을 2015년말까지 연장하고,
-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 주택유상거래 관련 세율(12. 9. 24~12. 31) : 9억원 이하·1주택 4% → 1%(75% 감면), 9억~12억원 또는 다주택 4% → 2%(50% 감면), 12억원 초과 4% → 3%(25% 감면)

②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을 2년 연장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限),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유지한다.

③ 한편, 국가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2011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선례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연장*한다.

* (조정) 나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 감면(취득세 100%→75%) 등(연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④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했다.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12. 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한국은 외국자본 현금인출기 금융위기 때마다 충격 반복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토빈세란 단기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자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통해 투기성 외국자본, 즉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통화 가치가 급등락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토빈세가 1974년 처음 제시된 이래 실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토빈세가 세계 금융거래 중심지에서 동시에 도입되지 않으면 거래비용의 상대적 증가로 거래가 다른 거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빈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가 토빈세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벨기에는 토빈세 입법을 완료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가 도입할 때까지 법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이는 유로존 국가들이 같은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브라질은 2008년 이후 급격한 자본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유입되는 외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브라질의 헤알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치로 거래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지 않아 가능했다. 급격한 자본유입을 예방하는 효과가 이로 인한 거래의 대규모 이탈 우려보다 크기 때문에 과감히 시행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를 비롯한 금융거래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그러나 국

제금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영국과 미국은 국내 금융산업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규모 은행 도산을 경험한 이들 국가는 당시 일련의 핵심적인 금융 규제를 입법화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제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영국과 미국이 금융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 금융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부의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1986년 영국의 빅뱅은 이러한 규제완화 움직임의 백미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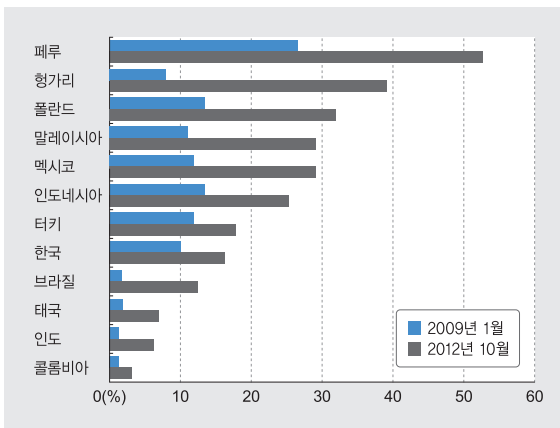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글로벌 환경 아래에서 금융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나, 규제완화에 따른 위험관리와 감독 부실이 2008년의 금융위기로 발전하게 됐다. 미국의 Dodd-Frank법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지만 아직 국제금융에서는 규모나 수준이 변방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동등한 경쟁기회의 보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지만 이런 환경을 투자처로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대규모 외국자본이며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바 있다. 해외 언론 등이 우리 금융시장을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 나 '세계의 현금인출기' 라고 비꼬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최근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넘쳐나는 전 세계 단기 자본이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로 몰려들고 있는데, 한국도 그중 하나다. 이런 자본이 외부충격에 의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 이에 대비한 방어장치는 충분한가? 현재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선물환 포지션 한도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소위 거시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3중 세트 제도를 국내에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 규제는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외화자입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국내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직접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토빈세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환율변동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도 시장 참여자로서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중앙은행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추세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가격조건에서의 개입이 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장개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외환 소요비용을 생각하면 토빈세를 통한 안정화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투기자본에 전가하고 어렵게 축적한 외환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채에서 외국인인 차지하는 비중



자료: HSBC

토빈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단기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급격한 외국 투자의 감소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토빈세는 여러 나라가 국제적 공조를 통해 동시에 도입해야 거래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선 한국 원화는 브라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토빈세를 도입한다고 원화거래가 다른 나라로 이전될 위험은 없다.

그리고 외국투자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 채택하고 있는 2단계 토빈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단계 영세율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벨기에의 경우 평시에 낮은 세율, 비상시 높은 세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평시에 영세율, 비상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평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자 감소 우려를 불식시키되,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세금 부과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비상시의 자본통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자본자유화에 역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의 3중 세트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리 이런 제도적 틀을 만들어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며 대형 금융기관(SIF)이 지배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에 있는 만큼 시장에 맡기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토빈세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논의함에 있어 특정 산업이나 특정 그룹의 이해타산에 얽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을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부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현실적인 보완 방안을 찾는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 2012-11-17〉

상위 1% 기업, 법인세 86% 부담

조세연구원 “세율 인상 부적절”
“실효세율은 세계 99위” 반론도

국내 상위 1% 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체 법인세의 86%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6만 614개 법인 중 상위 1%인 4,606개사가 낸 세금(총부담세액)은 32조 7,02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기업의 총부담세액(37조 9,619억원)의 86.1%에 이른다. 총부담세액이란 산출 세액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을 뺀 기업의 실질 부담금이다. 상위 1% 대기업은 지난해 평균 71억원의 세금을 냈다. 상위 1~2% 구간에 있는 4,606개사가 평균 3억 5,000만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다. 적자 등으로 지난해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은 법인은 21만 2,895개(46.2%)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한국 대기업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있다. 박승록 착한자본주의연구원 대표는 29일 낸 보고서에서 “2010년 한국 상장사의 실효세율은 17.6%”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5%)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48개국 중 99위”라고 말했다. 그는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대기업에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위 1%는 다른 세금도 많이 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모두 5,722명. 총 10조 6,591억원을 상속받아 이 중 1조 5,545억원(결정세액)을 냈다. 이 중 상위 1%인 57명이 낸 세금은 5,042억원(32.4%)이었다. 근로소득세도 비슷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분 소득세를 낸 근로자 중 상위 10%(92만 4,000명)가 전체 소득세의 68%(10조 6,144억원)를 부담했다.

(중앙일보, 2012-10-30)

조세연구원 “부가세율 올리자” …부가세 인상 논의 재점화 가능성

서민 소비 생필품 면세 많아…“역진세 아니다”
늘어나는 세입 복지에 사용…소득 재분배 효과

학자들이 간간이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부가세 인상 논의가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은 부가세의 역진적 성격을 우려해 서였다. 이런 이유로 1977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35년간 부가세율 10%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조세연구원의 이번 보고서가 눈길을 끄는 것은 부가세율 인상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부가세율 인상 효과를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살펴봤기 때문.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부가세 인상안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소득재분배 효과에 긍정적”

성명재 연구위원은 2010년 가계동향 조사자료를 활용, 소득계층별 부가세 실효세부담률을 조사했다.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가 3.6%였으며 3분위 3.6%, 5분위 4.0%, 7분위 3.7%, 9분위 3.5% 등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부가세가 역진세라면 고소득층일수록 실효세부담률이 크게 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쌀, 연탄, 버스로 등)의 경우 면세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게 성 연구위원의 지적. 반면 사치품의 경우는 대부분 과세대상에 올라있다. 따라서 부가세율을 올려도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부가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입을 교육이나 보육 등 복지분야에 지출하면 오히려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 선진국들의

부가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도 복지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5%)뿐이다. 호주가 한국과 같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20%), 스웨덴(25%), 덴마크(25%), 벨기에(21%), 네덜란드(19%) 등은 20% 안팎의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 물가상승 가능성 등은 부담

하지만 부가세 인상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세수는 2010년 49조 1,000억원을 기록, 연간 전체 국세세입(지방세 제외)의 27.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부가세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들어오는 세입도 늘겠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부가세를 올릴 경우 실제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할지도 미지수다. 사치품 등의 소비가 줄어들 경우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최근 '부가세 인상 검토'를 언급했다가 한발 물러선 것도 물가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 역시 이런 측면을 인정하고 부가세 인상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연구위원은 “부가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부가세를 역진세로 오해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기간의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세 주세 담배세 등 다른 세목에서의 증세 여력이 소진되면 부가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2012-10-28)

청·장년 농업인 국민연금 '외면'

맞춤형 노후보장 정책지원 시급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개별 농업인의 경제사정에 맞게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래수요층으로 아직 고령에 진입하지 않은 청·장년층 농업인일수록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소영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9일 내놓은 '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재정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태조사에서 청·장년층 농·어업인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조사에서도 60세 이하 농업인 중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중이 59.8%에 불과해 저조한 가입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국가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우선 노후를 대비할 만한 당장의 경제적인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50대의 경우는 경지 면적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 가입률도 높아진다.

이에 대해 임 부연구위원은 “40대 농가일수록 공적연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농업투자를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은퇴 시점이 가까운 50대 경영주는 노후소득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 가입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최고 50% 수준의 보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미가입 문제가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업인들이 실제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 과제”라며 정부 지원의 기준선

(79만원)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에게 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현행 지원율(50%)도 고수하되 79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또 “자산 보유 수준이 높은 농업인의 경우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고, 자산이 적은 농업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별 농업인의 경제 사정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2012-10-19)

【테마진단】 2단계 토빈세 도입해야 한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우리 채권시장에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체 시장 잔액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나 있다. 금액으로는 약 800억달러 수준이다. 특히 국채 인기가 높아 전체 발행 잔액 중 16%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국채에 투자하려면 환율 리스크를 져야 하는 데도 말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달러를 급하게 구하려고 우리 정부가 환율 리스크까지 감내해야 하는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이런 변화는 최근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일제히 상향 조정되면서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반갑기만 한 현상일까. 모든 경제 현상이 좋고 나쁨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듯이 외국인 투자 유입에도 걱정해야 할 대목이 있다. 우선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달러가 밀려들어 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벌써 지난 7월 이래 4%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다. 미국의 제3차 양적완화가 시작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유입된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2009년 위기 당시 이를 경험한 바 있다. 그 당시 우리 경제는 비교적 건실한 기초체력을 다지고 있었는데도 외국인 투자가 대거 빠져나감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줄어들며 환율이 급상승하는 위기상황을 겪었다. 당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는 약 400억달러다. 이 정도를 가지고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는 채권시장에만도 두 배가 된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는 물론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위기 타개를 이유로 발권력을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괜찮은 국가들의 통화는 대부분 몸살을 앓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자국 통화가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자금이 몰려들자 이미 작년 9월부터 환율방어선을 쳐놓고 외환시장에 무제한 개입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3차 양적완화가 발표되자마자 똑같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한 것이 이미 여러 차례지만 이번에는 환율 방어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 간 금융거래 비용을 정책적으로 높여줌으로써 국경 간 자본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해보자는 토빈세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브라질은 이미 토빈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독일 프랑스 등 11개 EU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선물환 규제와 함께 거시건전성부담금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외부 충격에 의한 급작스런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래 파생상품에 한정돼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현물환 거래까지 대상으로 하는 토빈

세를 전격 도입하면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해 두 단계 토빈세를 제안 해본다.

즉 현재 일부 외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평시에는 낮은 세율, 위기시에는 높은 세율 방식을 변형해 평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다 위기시에만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평시에 낮은 세율을 영의 세율로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평시에는 토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본자유화의 역행적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위기 발생시 자본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확보해둔다는 의미가 있다. 유비무환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매일경제, 2012-10-18〉

재정포럼

2012년 11월호 통권 제197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산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2년 11월 15일 발행 / 제16권 제11호(통권 제19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 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 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